

실업과 범죄와의 연관성 연구

《研究陣》

연구위원	: 오영근 (한양대 교수)
	오경식 (강릉대 교수)
연구지도위원	: 이형국 (연세대 법과대학장)
연구실장	: 임영규 (총경)
연구관	: 이돈일 (경감)

목 차

제 1 장 서 론	241
제 2 장 실업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	242
제 1 절 실업과 범죄에 관한 이론의 전개과정	242
제 2 절 실업과 범죄에 관한 선행연구의 개관	244
제 3 절 선행연구결과들에 대한 평가	260
제 3 장 범죄유형별 실업과 범죄와의 관계	265
제 1 절 서 론	265
제 2 절 지난 10년간 실업률과 총범죄발생 검거현황 비교분석	67
제 3 절 지난 10년간 실업률과 주요범죄발생의 비교분석	268
제 4 절 IMF체제 전·후 실업과 주요범죄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278
제 5 절 IMF이후 9개월과 이전 연도의 동기간 중 총범죄 발생의 비교분석	284
제 6 절 IMF 이후 9개월간과 이전 연도의 동기간주요범죄의 발생건수 비교	285
제 7 절 주요범죄자 범행시 연령분포현황	287
제 8 절 주요범죄자 범행시 전과별현황	296
제 9 절 주요피의자 범행시 생활환경별 현황	303
제 10 절 주요피의자 교육정도별 현황	306
제 4 장 IMF로 인한 실업과 관련된 범죄유형	313
제 1 절 총 설	313
제 2 절 IMF사태로 발생하는 범죄유형	314
제 3 절 노숙자범죄	317
제 5 장 실업관련 범죄방지대책	324
제 1 절 서 론	324

제 2 절	기존 경찰활동의 효율화	325
제 3 절	민간인 및 자원봉사자의 활용방안	329
제 6 장	요약 및 결론	334
참고문헌	337

표 목 차

(표 1) Merton의 개인별 적응양식표	251
[표 1] 실업률과 총범죄 발생검거 현황(1988-1997)	268
[표 2] 실업률과 주요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1988-1997)	269
[표 3] 실업률과 강도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1988-1997)	271
[표 4] 실업률과 절도범죄 발생검거 현황(1988-1997)	272
[표 5] 실업률과 폭력범죄발생 검거현황(1988-1997)	273
[표 6] 실업률과 사기범죄발생 검거현황(1988-1997)	274
[표 7] 실업률과 횡령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1988-1997)	275
[표 8] 실업률과 배임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1988-1997)	276
[표 9] 실업률과 부정수표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1988-1997)	277
[표 10] IMF전후 실업률과 총범죄발생 검거 현황(평균)	278
[표 11] IMF전후 9개월간의 실업률과 주요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279
[표 12] IMF전후 실업률과 강도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280
[표 13] IMF전후 9개월간 실업률과 절도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280
[표 14] IMF전후 9개월간 실업률과 폭력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281
[표 15] IMF전후 9개월간의 실업률과 사기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281
[표 16] IMF전후 9개월간의 실업률과 횡령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282
[표 17] IMF전후 실업률과 배임범죄 발생검거 현황	282
[표 18] IMF전후 실업률과 부정수표범죄 발생검거 현황	283
[표 19] IMF이후 9개월간 및 이전 연도의 같은 기간의 총범죄 발생현황	284
[표 20] IMF 이후 9개월과 이전 3개 연도 동기간 주요범죄 발생건수	286
[표 21] 강도 범죄자 범행시 연령분포대별 현황	287
[표 22] 절도 범죄자 범행시 연령분포대별 현황	289
[표 23] 폭력 범죄자 범행시 연령분포대별 현황	290
[표 24] 사기범죄자 범행시 연령분포대별 현황	292
[표 25] 횡령범죄자 범행시 연령분포대별 현황	293

[표 26] 배임범죄자 범행시 연령분포대별 현황	294
[표 27] 부정수표 범죄자 범행시 연령분포대별 현황.....	295
[표 28] 강도 피의자 범행시 전과별 현황.....	296
[표 29] 절도 피의자 범행시 전과별 현황.....	297
[표 30] 폭력 피의자 범행시 전과별 현황	298
[표 31] 사기 피의자 범행시 전과별 현황.....	299
[표 32] 횡령 피의자 범행시 전과별 현황.....	300
[표 33] 배임 피의자 범행시 전과별 현황.....	301
[표 3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의자 범행시 전과별 현황.....	302
[표 35-1] 주요피의자 범행시 생활환경별 현황	304
[표 35-2] 주요피의자 범행시 생활환경별 현황	305
[표 36] 강도피의자 교육정도별 현황.....	306
[표 37] 절도피의자 교육정도별 현황.....	307
[표 38] 폭력피의자 교육정도별 현황.....	308
[표 39] 사기피의자 교육정도별 현황.....	309
[표 40] 횡령피의자 교육정도별 현황.....	310
[표 41] 배임피의자 교육정도별 현황.....	311
[표 42]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피의자 교육정도별 현황	312
[표 43] 전국의 노숙자현황(1998.3.31 현재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318
[표 44] (1998.3.30 - 1998. 6.18. 사랑의 복지재단, 출신지역별 통계자료)	318
[표 45] (1998.3.30 - 1998. 6.18. 사랑의 복지재단, 연령별 통계자료)	319
[표 46] (1998.3.30 - 1998. 6.18. 사랑의 복지재단, 직업별 통계자료)	319

제 1 장 서 론

1997년 11월 IMF 구제금융신청前의 우리나라 경제는 외형적으로는 경제규모의 빠른 확대에 의한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으며, 내부적으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과 같은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화 내지 공업화의 진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쳐 급격하고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즉 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도시규모의 확대, 주거 및 식생활의 개선, 교육시설의 확충 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과소비현상, 부동산투기, 황금만능주의, 범죄의 증가, 환경오염의 증가, 바람직한 가치관의 상실과 윤리기준의 혼동 등과 같은 현대사회의 병리현상이 확산되는 부정적인 측면의 변화도 있었다.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사회전반에 미친 부정적인 변화로 인해 사회를 구성하는 각 부문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사회전반의 부정적인 변화는 범죄의 질적, 양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쳐 범죄발생의 증가, 범죄의 광역화, 기동화 및 흉포화, 저연령화 등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 11월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와 IMF사태는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 중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의 예로서 기업 및 개인사업체들의 부도사태와 이로 인한 실직 및 수요감소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실업상태에 빠져 있는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1998년 4월 현재 실업자의 수는 이미 4백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

일응 생각하여 볼 때, 실업상태에서는 생활을 영위할 소득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범죄행동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높게 되며 또한 실업기간에는 직

1) 1998년 총 경제활동인구 2,127만명 중 취업자가 1,989만명으로 실업자는 137만명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383만명이나 전반적인 수요감소로 활동을 중단한 뒤 취업시도를 하지 않고 있는 개인사업자, 취업하지 않고 있는 명예퇴직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질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 고용의 질이 낮은 서비스산업의 단순 노동직 취업자, 대학졸업자 중 구직난으로 취업을 포기한 대학원 진학자들은 실질적인 실업상태라고 할 수 있다(동아일보, 1998년 4월 29일자 참조).

장 등 사회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자기절제를 잃기 쉽다. 이러한 점에서 실업은 범죄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전제가 사실이라면 IMF체제가 지속되는 한 실업과 범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업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 글은 실업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업으로 인한 범죄대책을 마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실업이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미친다면 어떤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실업과 범죄에 대한 선행 이론적, 실증적 연구결과들에 대한 문헌을 분석하고, 이어 IMF사태 이후의 우리 나라의 범죄동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IMF로 인한 실업이 어떤 종류의 범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내고 이러한 범죄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기로 한다.

제 2 장 실업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

제 1 절 실업과 범죄에 관한 이론의 전개과정

범죄행위나 그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크게 나눈다면, 개인의 특성이나 소질에 중점을 두는 이론과 사회적 환경에 중점을 두는 이론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이론들 중 가장 오래되고 활발한 것은 경제적 조건이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난이 범죄의 주요 발생원인이라고 한다면, 빈민이 더 많은 지역이나 시대에는 범죄도 더 많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범죄율의 차이가 그러한 추론대로 나타나는지를 알기 위해 불경기와 호경기를 비교하기도 하고, 같은 나라 안에서 부유한 지역과 빈민지역을 비교하기도 하였다. 그 뒤에 나온 다른 연구들은 범죄율과 실업률간에 어떠한 규칙적인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범죄가 경제적 불평등 즉 부유함과 이웃하여 존재하는 가난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18세기 초 프랑스에서 전국의 범죄에 대한 통계조사가 행해지고 그 결과가 공표되자, Guerry와 Quetelet가 이러한 통계를 분석함으로써 범죄와 빈곤의 관계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였다. 두 사람은 빈민지역에는 빈민이 더 많으니 범죄도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프랑스의 부유한 지역과 빈민지역을 비교해

보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가정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Guerry는 프랑스의 가장 부유한 지역에서 폭력범죄는 적었지만 재산범죄는 오히려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뜻밖의 결과에 대해 그는 범행기회(opportunity)로 인해 재산범죄율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즉, 부유한 지역에는 가난한 지역 보다 훔칠만한 물건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범행기회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재산범죄의 발생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Quetelet도 비슷한 범죄양상을 발견하였다. 다만 그는 범행기회가 범죄 발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더 나아가 부유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극심한 빈부격차에 주목하였다. 즉, 빈부격차가 큰 지역에서는 빈민들이 가진 자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되고 이것이 범죄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빈민지역에서는 누구나가 다 가난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가 덜 생겨났고 범죄도 덜 발생하였다는 것이다²⁾.

이와 같이 실업률을 한 사회의 경제적 조건 또는 경기순환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아 범죄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³⁾. 이 중 실업은 모든 경제적 조건 가운데에서도 범죄에 직·간접의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특히 경제적 위기상태 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⁴⁾. 그러나 실업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실업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실업이 많아지면 범죄가 증가하고 실업이 감소하면 범죄도 감소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실업이 빈곤을 유발하고 나아가 빈곤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전제에 입각해 있다⁵⁾. 실업과 범죄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도 모두 이러한 전제들이 맞는 것인가를 검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실업과 범죄를 자세히 연구한 그 동안의 연구들과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2) George B. Vold, Thomas J. Bernard and Jeffrey B. Snipes, *Theoretical Criminology*, 4th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제3장.

3) 이러한 논의의 역사를 약술한 책으로는 Lynn McDonald, *The Sociology of Law and Order*, London: Faber and Faber, 1976.

4) Sthephan Hurwitz and Karl O. Christiansen, *Criminology*,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3, 153면.

5) Vold/Bernard/Snipes, 앞의 책, 111면.

로 살펴 본 연구들의 결론 중에는 위와 같은 인식을 뒷받침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부정하는 것도 있다. 즉, 어떤 연구에서는 범죄와 실업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다. 어떤 연구에서는 빈곤과 범죄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그러한 상관관계를 부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들 중 몇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 2 절 실업과 범죄에 관한 선행연구의 개관

1. 실증적 연구결과들

실업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실업과 소년비행의 관계를 다룬 것과 실업과 성인범죄의 관계를 다룬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소년비행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Glaser와 Rice는 소년비행과 실업은 반비례(혹은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한다. 즉 실업률이 낮으면 소년비행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높으면 소년비행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에 대한 이유를 실업상태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⁶⁾

이에 대해 Singell과 Fleischer는 실업률과 범죄통계를 분석하여, 소년비행과 실업은 정비례의 관계에 있고, 실업률이 1% 증가하면 소년비행이 약 0.15% 정도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⁷⁾.

6) Daniel Glaser and Kent Rice, "Crime, Age, and Employ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4(Oct. 1959), 679 - 686면. 이들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연구로서, Jack P. Gibbs, "Crime, Unemployment and Status Integration",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6 No. 1(Jan. 1966), 49-58면;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통계상의 조작이 있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Marcia Guttentag, "The Relationship of Unemployment to Crime and Delinquency", *Journal of Social Issues*, Vol.24 No.1(Jan 1968), 105-114면.

7) Larry D. Singell, "An Examination of The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Juvenile Delinquency",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Vol.26 No.4 (1965), 377-386면; Belton M. Fleischer, "The Effect of Unemployment on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1(Dec. 1963), 543-555면. 이와 관련된 Fleischer의 다른 연구들로서 "The Effect of Income on Delinquency", *The American*

한편 Ehrlich은 실업이 14세에서 24세의 도시남성의 범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⁸⁾. Danser와 Laub는 공식경찰통계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조사를 통하여 연구한 이후 성인실업과 소년범죄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여 Glaser와 Rice의 연구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또한 비행과 소년실업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고 이것은 어떤 연령이나 성별, 인종에도 모두 타당하다고 하였다⁹⁾. 이에 대해 Calvin은 흑인청년들에 있어서 실업과 범죄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범죄와 실업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하였거나 해석을 잘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¹⁰⁾

실업과 성인범죄의 관계에 대해서도 서로 상반되는 결론이 제시되고 있다.

Winslow는 1893년부터 1926년 매사추세츠주의 실업률과 각종 범위반행위로 인해 기소된 숫자를 비교하였다. 당시 실업률이 평균보다 높을 때에는 부랑이나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재산범죄(단순절도, 위조, 장물, 방화 등) 및 폭력을 수반한 재산범죄(무장강도, 범죄목적의 주거침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명정범죄도 실업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실업률이 매우 높았던 연도들에서는 폭력범죄도 평균이상이라고 하였다¹¹⁾. Nagel은 50개주를 분석하여 범죄율과 실업률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¹²⁾. Brenner도 미국의 1940년 부터 1973년까지의 전국적인 범죄와 실업통계를 조사한 결과 실업률이 1% 증가하면 살인범죄가 5.7% 증가한다

Economic Review, March 1966, 118-137면 및 The Economics of Delinquency, Chicago: Quadrangle Books, 1966 등이 있다. Harold L. Votey, Jr., and Llad Phillips, "The Control of Criminal Activity: An Economic Analysis", in Daniel Glaser, ed., Handbook of Criminology, Chicago: Rand McNally, 1974, 1065-1069면도 같은 견해이다.

- 8) Isaac Ehrlich, "Participation in Illegitimate Activitie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May-June 1973, 521-564면.
- 9) Kenneth R. Danser and John H. Laub, Juvenile Criminal Behavior and Its Relation to Economic Conditions, Albany, N.Y.: Criminal Justice Research Center, 1981.
- 10) Allen D. Calvin, "Unemployment among Black Youths, Demographics and Crime", Crime and Delinquency, Vol. 27 No.2(April 1977), 234-244면.
- 11) Winslow,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and Crime Fluctuation as Shown by Massachusetts Statistics (Report on the causes of crime), Washington D.C., National Commission on Law Observance and Enforcement, 1931.
- 12) William G. Nagel, "A Statement on Behalf of a Moratorium on Prison Construction", Crime and Delinquency, Vol. 23 No.2(April 1977), 154-172면.

고 결론을 내렸다¹³⁾. Berk 등은 석방된 재소자들에 대한 실업구제 프로그램을 연구한 후에 적어도 전과자들에게는 실업과 빈곤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¹⁴⁾.

이에 대해 다른 많은 학자들은 범죄와 실업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거나, 관계가 있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정도의 관계가 있을 뿐이라고 한다¹⁵⁾.

새로운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연구들에서도 결론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Freeman은 실업과 범죄에 관한 18개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살펴본 이후, 실업과 범죄와의 관계는 근소한 것(moderate link)에 불과하다고 한다. 노동시장과 범죄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관계의 정도(magnitude)나 강도(strength)는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미묘하고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¹⁶⁾ 이에 대해 Chiricos는 범죄와 실업에 관한 63개의 연구를 검토한 이후 실업과 범죄와는 밀접하고 현저하게 정비례의 관계에 있고, 이러한 관계는 특히 재산범죄와 1970년대 이후의 범죄발생에서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¹⁷⁾. 나아가 그는 대규모집단(예를 들어 한 국가)에서 보다는 소규모집단(예를 들어 한 마을)을 조사하면 범죄와 실업 간에 정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발견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
- 13) Harvey Brenner, *Estimating the Social Costs of National Economic Polic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 14) Richard A. Be가, Kenneth J. Lenihan, and Peter H. Rossi, "Crime and Poverty: Some Experimental Evidence from Ex-Offender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45(Oct. 1980), 766-786면 및 Money, Work and Crime: Experimental Evidence, New York: Academic Press, 1980.
- 15) 예를 들어 Sharon K. Long and Ann D. Witte, "Current Economic Trends: Implication for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Kevin Wright, ed.,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a Declining Economy*, Cambridge: Oelgeschlager, Gunn and Hain, 1981, 69-143면; D. Jacobs, "Inequality and Economic Crime", *Sociology and Sociological Research*, Vol.66(Oct. 1981), 12-28면; Alan Booth, David R. Johnson, and Harvey Choldin, "Correlates of City Crime Rates: Victimization Survey Versus Official Statistics", *Social Problems*, Vol.25(1977), 187-197면; Paul E. Spector, "Population Density and Unemployment", *Criminology*, Vol.12 No.4(1975), 399-401면.
- 16) Richard B. Freeman, "Crime and Unemployment", James Q. Wilson, ed., *Crime and Public Policy*, San Francisco: ICS Press, 1983, 89-90면.
- 17) Theodore G. Chiricos, "Rates of Crime and Unemployment: An Analysis of Aggregate Research Evidence", *Social Problems* 34(2), 1987. 4., 187 - 211면.

소규모집단은 동질적(homogeneous)인데 비해, 대규모집단에서는 전체적인 경제조건들이 특정한 지역의 빈곤이나 결핍의 정도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¹⁸⁾. 이러한 Chiricos의 주장에 대해, Land 등은 경제적 결핍에 관한 몇가지 변수를 통제하면 실업과 살인 간에는 반비례관계에 있고¹⁹⁾, 실업과 강도 간에도 정비례관계 보다는 반비례관계에 있고, 실업과 강간 및 폭행과는 정비례관계에 있지만 별로 중요한 정도는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²⁰⁾. 그리하여 이들은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1960년부터 1980년 까지의 기간 동안 실업과 범죄는 약간 반비례관계(a weak negative relationship)에 있다고 주장하였다²¹⁾. 즉, 실업률이 높아지면 범죄는 감소하지만 그 정도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소규모집단과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실업과 범죄와 정비례관계에 있다고 하는 Chiricos의 견해에 동의하였다²²⁾.

호주의 경우에도 1989년에 비해 1991년의 실업률이 현저히 높아졌고 이를 계기로 실업과 범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었다. 이 기간 동안 호주 New South Wales주의 범죄동향을 살펴보면, 자동차절도죄의 발생건수가 7.8% 감소하고, 범죄목적 주거침입죄(burglary)의 발생건수도 9.3%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동안 강도죄의 발생건수는 29%, 방화죄(arson)의 발생건수는 92%가 증가하였다. 또한 폭행죄는 13%, 상점절도는 20%, 재물손괴죄가 22%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설명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급속한 이자율의 상승은 자동차, 자동차부품과 같은 소비상품과 비디오촬영기와 같은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였고, 이에 따른 장물시장의 위축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켰

18) Kenneth C. Land, Patricia L. McCall, and Lawrence E. Cohen, "Structural Covariates of Homicide Rates: Are There Any Invariances Across Time and Spa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5(1990), 922-963면.

19) 위의 논문.

20) Patricia L. McCall, Kenneth C. Land, and Lawrence E. Cohen, "Violent Criminal Behavior: Is There a General and Continuing Influence of the South?", *Social Science Research*, Vol.21 No.3(1992), 286-310면.

21) Kenneth C. Land, David Cantor, and Stephen T. Russell, "Unemployment and Crime Rate Fluctuations in the Post-World War II United States", in John Hagan and Ruth D. Peterson, eds., *Crime and Inequal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의 제3장, 309면.

22) 위의 논문, 56-57면.

고 따라서 자동차절도 및 범죄목적의 주거침입죄의 발생건수가 감소하였다. 한편 강도나 방화와 같이 현금을 획득할 수 있는 범죄의 발생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²³⁾. 그러나 이러한 설명방법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볼 때, 실업과 총범죄의 증감 여부와 직접 관련이 있다거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다만 실업이 일정한 범죄인 혹은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업이 범죄의 감소요인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범죄의 증가요인인 경우에는 어떤 범죄를 증가시키고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업과 범죄와의 관계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은 실업이 어떤 범죄를 증가시키고, 어떤 사람들에게 범죄유발요인이 되는가를 규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2. 범죄동기화이론과 범죄기획이론

이상 실증적 연구들과 그 결론을 살펴보았지만 시각을 달리하여 살펴보면,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그 입장에 따라 실업과 범죄의 관계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과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같은 현상을 앞에 놓고서 연구자의 가정이나 입장에 따라 그 현상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Guerry와 Quetlet의 예에서 보듯이, 두 사람은 모두 빈민지역 보다는 부자지역에서 범죄율이 높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Guerry는 부자지역에는 범죄기회가 많다는 것을 중시하였고, Quetlet는 빈부격차에 의해 빈민들이 부자들에 대해 갖는 적대감을 중시하였다.

이와 같이 실업과 범죄에 대한 관계에 접근하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는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범죄자의 개인적 범죄동기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서, 한 사회속에서 실업률의 증가가 개인의 범죄동기화에 어떻게 작용되는가를

23) Don Weatherburn, "Economic Adversity and Crime", Trends and Issue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 No. 40, August, 1992, 노성호(역), "경제적 고통과 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9권 2호(1998년 여름호), 228-229면 및 238면.

24) 기타 실업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을 소개하고, 이러한 방법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상계논문, 230면 이하.

규명하려고 한다. 이를 범죄동기화이론이라고 한다. 범죄동기화이론은 실업률의 증가는 잠재적으로 동기화된 범죄자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하면 범죄율도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범죄행위에 대한 감시와 적절한 범죄대상의 존재라는 측면에서 범죄발생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면 범죄에 대한 감시가 증가하고 적절한 범죄대상이 감소함으로 인하여 범죄율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론이다. 이를 범죄기회이론이라고 한다.

(1) 범죄동기화이론

범죄동기화이론이란 사람이란 일정한 상호관계 혹은 사회적 조건에 놓이게 되면 어떤 지속적인 퍼스널리티 혹은 가치의 측면을 보이게 되는데, 이로 인해 어떤 사람들이 범죄 혹은 일탈행위를 일으킨다는 이론이다.²⁵⁾ 동기화이론에는 긴장이론, 통제이론, 경제적 선택이론과 맑스주의이론을 포함시킬 수 있다.²⁶⁾

가) 긴장이론(Strain Theory)²⁷⁾

긴장이론은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를 범하게 하는 사회적으로 생성되는 압력이나 힘(socially generated pressure or forces)이 있다고 한다. 이것을 긴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긴장은 사회에 공평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범죄율이 높은 집단 사이에 특히 심하다고 한다.

긴장이란 높은 수준의 성공에 도달하려는 욕구의 좌절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²⁸⁾. 긴장이론은 욕구와 현실의 격차로 인해 나타나는 긴장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한 긴장은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 합법적 기회 혹은 제도적 수단이 차단된 사람에게 가장 높고 따라서 성공에 도달하기 위한 합법적 기회가 차단될 때 범죄발생율도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실업은 합법적 기회가 차단된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

25) Briar Scott & Irving Piliavin, "Delinquency, Situational Inducement & Commitment to Conformity", *Social Problem*, Vol. 13, 1965, 33-45면 참조.

26) David Cantor & Kenneth C. Land, "Unemployment and Crime Rates in the Post-World War II, United States :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Vol.50, 1985, 318면.

27) 긴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Geroge B. Vold and Thomas J. Bernard, *Theoretical Criminology*,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제11장 참조.

28) Ruth Rosner Kornhauser, *Social Sources of Delinquency : An Appraisal of Analytic Model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147면.

다. 따라서 실업률의 증가는 사회구성원에게 긴장을 유발하고 따라서 범죄발생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²⁹⁾ 즉 긴장이론은 실업과 범죄는 正의 관계(혹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난다고 한다.

긴장이론에는 Merton의 아노미(anomie)이론, Cloward & Ohlin의 차별적 기회구조(differential opportunity theory)이론 그리고 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delinquent subculture theory)이 포함될 수 있다³⁰⁾. 이들 이론들은 모두 비슷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중 Merton의 아노미이론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³¹⁾.

Merton은, 어떤 사회의 문화는 노력해서 도달할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를 한정해서 규정짓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논의를 시작한다.³²⁾ 그러나 모든 사람이 문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사이에 긴장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 즉 사회의 문화가 부의 축적이라는 목표의 성취를 강조하고, 이러한 목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회구조는 이러한 집단내의 개인들 중 일부만이 제도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사회내의 문화와 사회구조와의 모순을 Merton은 아노미라고 정의한다.³³⁾ 개인들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에 의존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anomie 문제에 반응할 수 있다. Merton은 이러한 선택들을 [표 1]과 같이 동조, 혁신, 의례, 퇴보 그리고 반동으로 표현한다.

29) Terence P. Thornberry & R.L.Christenson, "Unemployment & Criminal Involvement : An Investigation of Reciprocal Causal Structure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49, 1984, 400면 참조.

30) 이동원, "실업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 - 가해자와 피해자 관점의 통합을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제6호.

31) 나머지 이론에서 실업과 범죄의 관계에 대해서는 위의 논문, 210면 참조.

32) Thomas K. Merto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Glenco: The Free Press, 1968, 187면.

33) 위의 책, 216면.

(표 1) Merton의 개인별 적응양식표

적응양식	문화 목표	제도화된 수단
I. 동조	+	+
II. 혁신	+	-
III. 의례	-	+
IV. 퇴보	-	-
V. 반동	±	±

* + 는 “승인”을, - 는 “거부”을, 그리고 ± 는 “기존가치의 거부와 새로운 가치에 복종”을 의미한다.

이 중 혁신형의 사람들은 부의 획득이라는 문화목표에 충실하면서도 그들은 제도화된 수단을 통해서 이것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그들은 부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알아낸다고 한다. 즉, 사업가들은 사기와 허위진술로써 다른 형태의 화이트 칼라 범죄를 고안하거나 그들의 소득세에 부정을 저지를 것이다. 노동자들은 체계적으로 직장에서 절도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도박, 매춘, 마약같은 불법적인 사업을 발전시키거나 절도나 강도를 할 것이다. 각 경우에 개인은 문화목표에 따라 범행을 계속하지만 부정한 수단을 통하여 문화목표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Merton의 아노미이론에 의하면 실업은 제도화된 수단의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범죄의 유발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나) 통제이론³⁴⁾

범죄학의 다른 이론들이 생물학적이건, 심리적이건, 사회적이건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어떤 힘들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통제이론은 이와는 다른 입장을 취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려는 것은 인간본성의 한 부분이므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가만 놔두게 되면 자연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어떤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는가가 아니라 왜 어떤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라고 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통제이론에서는 개인을 제약하고 통제하는 힘에 대해 초점을 맞추으로써 해답을 제시한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힘이 파괴되거나 약화되는 경우 범죄나 혹은 통제받지 않는 일탈행위들의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34)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Vold and Bernard, 앞의 책, 제13장 참조.

그들을 범죄로 몰아가는 어떤 힘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제하고 제약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제이론적 관점은 광범성을 띠고 있으며,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등 각 부문에서 매우 다양한 이론들로 제시되고 있다.³⁵⁾

초기의 통제이론가들로 Reiss, Toby, Nye 등의 학자를 들 수 있다. Albert J. Reiss는 1951년에 발표한 한 논문에서 소년범의 보호관찰 취소여부를 예측하려는 의도로 통제적 관점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검증하였다.³⁶⁾ 즉 그는 11세에서 17세 사이의 백인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100명의 공식법원기록을 검토하여 심리적으로 자아나 초자아적 통제가 약한 것으로 진단된 소년의 경우와 정신과 의사로부터 사회내 집중치료나 시설내 치료가 처방된 소년의 경우에 주로 보호관찰이 취소된다고 하였다. Reiss는 이러한 진단과 처방은 소년의 “개인통제” - 즉 규범 및 규칙을 위반하려는 욕구를 억제하는 능력 - 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내려진다고 하였다. 아울러 그는 자주 학교에 결석하는 소년이나 학교로부터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소년의 경우에도 보호관찰취소의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점도 첨가하였다. Reiss에 의하면 이러한 요소들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제도의 통제에 대해 소년이 수용하거나 순응하는지를 평가하는 척도라고 한다.³⁷⁾

Jackson Toby는 1957년의 논문에서 “순응의 이득(stake in conformity)”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는데, 이것은 소년이 법을 어길 때 잃게 되는 이득을 의미한다.³⁸⁾ Toby는

35) 예를 들어 자동적 신경체계의 기능에 관한 Eysenck의 생물학적 이론(이에 대해서는 Vold, Bernard and Jeffrey, 앞의 책, 제6장 참조) 처벌이 인간에 본질적으로 내재한 범죄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조건을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이라는 점에서 통제이론적 관점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Aichhorn의 심리학적 이론도(같은 책, 제7장 참조) 대부분의 비행은 억제되지 않은 이드의 힘이 부적절한 초자아에 의해 풀려날 때 행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동 이론은 비행발생의 원인을 이드에 내재된 충동적 힘에서가 아니라 초자아에 내재된 통제적 힘의 결핍에서 찾는 것이다. 나아가 아노미이론이라는 Durkheim의 사회학적 이론도 무한한 인간욕망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규제가 무너지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무한한 인간욕망이라는 범죄충동적 힘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데, 사회적 규제라는 통제력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이것이 곧 범죄발생의 차이로 연결된다고 설명하는 바, 이런 의미에서 동 이론도 통제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6) Albert J. Reiss, “Delinquency as the Failure of Personal and Social Control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6:196-207, April 1951.

37) 위의 논문, 206면. 이러한 Reiss의 견해에 대한 비판으로 Vold, Bernard and Jeffrey, 앞의 책, 202면.

모든 소년에게는 법을 어기려는 유혹이 있지만 그러한 유혹에 굴복하였을 때 잃게 될 순응의 이득은 소년마다 다르다고 주장한다. 즉, 학교에서 잘 생활하는 소년은 법을 어김으로써 당장 처벌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까지 손상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그들은 순응의 이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학교에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소년은 이미 미래의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법을 어김으로써 잃을 것라고는 당장의 처벌 뿐이다. 즉, 순응의 이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아울러 Toby는 순응의 이득을 적게 갖는 소년들이 모여 있게 되면 그곳에서는 비행에 대한 동료들간의 지지가 자극이 되어 개별적으로 기대되는 범죄발생률의 합보다 더 많은 범죄가 발생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Toby의 논문이 발표된 다음 해에 F. Ivan Nye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통제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가족이라고 하는 연구결과를 출간하였다.³⁸⁾ 그는 주장하기를, 대부분의 비행행위는 사회통제가 불충분했던 결과이고, 비행행위를 적극적으로 야기하는 요인은 별로 많지 않다고 한다.⁴⁰⁾ 여기서 의미하는 사회통제는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규제와 처벌 등의 직접적 통제, 양심에 의한 내적 통제, 부모 내지 다른 준법적인 사람들로 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간접적 통제, 그리고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합법적 수단의 사용 가능성 등을 모두 포함한다.⁴¹⁾ 그리고 특히 Nye는 마지막 유형의 사회통제와 관련하여 “만약 개인의 모든 필요가 충분히, 지체없이, 그리고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충족될 수 있다면 범위반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최소한의 내부, 간접, 그리고 직접적 통제만으로도 순응을 받아내기에 충분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Nye는 자기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싱턴주의 3개 마을에서 9학년에서 12학년 사이의 780명의 소년,소녀를 조사하였다⁴²⁾ 그 결과 Nye는 대상소년의 1/4 가량을 “비행이 심한” 집단으로, 나머지를 “비행이 덜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⁴³⁾ Nye는 “비행이

38) Jackson Toby, “Social Disorganization and Stake in Conformity : Complementary Factors in the Predatory Behavior of Hoodlums,” *Journal of Criminal Law, Criminology and Police Science* 48:12-17, May-June 1957. 이와 비슷한 개념이 후에 Briar와 Piliavin의 논문에서도 나타난다. Scott Briar and Irving Piliavin, “Delinquency, Situational Inducements, and Commitment to Conformity,” *Social Problems*, Summer 1965, pp.35-45.

39) F. Ivan Nye,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t Behavior*, John Wiley, New York, 1958.

40) 앞의 책, 4면.

41) 앞의 책, 5-8면.

심한” 집단의 소년들은 용돈을 많이 받고, 자기부모를 싫어하고, 부모에 대해 우울하고, 신경질적이며, 좀처럼 즐거워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하며 상황이 잘못되었을 때 소년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 아울러 어머니가 밖에서 일한다든가 부모로부터 거부당한 소년들도 쉽사리 “비행이 심한” 집단에 속하게 된다고 한다. 반대로 “비행이 덜한” 집단의 소년들은 그 가족이 교회를 규칙적으로 나가고,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았으며, 주로 시골출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은 주로 맏이거나 독자였으며, 부모의 훈육방법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여가를 부모와 함께 즐기며, 부모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부모가 주는 돈에 충분히 만족하며, 이성교제나 종교문제에 대하여도 부모로부터 정보와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⁴⁴⁾.

이후 Matza는 비행소년은 일반소년과 비교하여 기본적으로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동 요소들이 그들로 하여금 비행을 저지르도록 압박한다고 하는 전통적인 비행이론들을 반박하고,⁴⁵⁾ ‘표류(drift)’라는 개념으로 비행을 설명하였다.⁴⁶⁾ 그는 사회의 통제가 느슨해질 때 표류가 형성되며, 이 상황에서는 우연적인 영향력에 자유롭게 반응하여 준법행위를 하거나 범죄행위를 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비행자를 여건, 즉 사회통제가 느슨하게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밝히려 하게 된다. 그리하여 Matza는 전통적 이론에서 지적된 비행자, 즉 ‘비행적 가치를 수용한’ 비행자나 ‘본질적 요소에 의해 강제된’ 비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비행소년들은 앞의 양 경우가 아닌 ‘표류자(drifter)’라고 주장하였다.

가장 통제이론다운 이론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⁴⁷⁾ Travis Hirshi는 개인이 속한 집단이 약화될수록 그 개인은 집단에 덜 의존하게 되고 나아가 자기 자신에만 의존하

42) 이 조사에는 비행측정의 변수로 의도된 7개의 문항을 포함하여 가족생활에 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질문이 행해졌는데, 특히 문제된 7개의 문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학교 빠지기, 면전에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한 경험, 2\$ 미만 물건의 부당한 취득, 맥주·포도주·기타 술을 사거나 마신 경험(집에서 마신 경우도 포함), 공공재산이나 사유재산을 의도적으로 손괴하거나 파괴했던 일, 이성과의 성관계 등이었다. 위의 논문, 13-14면.

43) Ibid., pp. 15-19와 Nye and James F. Short, Jr., “Scaling Delinquent Behavi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2:26-31 (June 1957)를 참조하라.

44) Nye의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로서, Vold, Bernard and Jeffrey, 앞의 책, 204 - 205면.

45) David Matza, *Delinquency and Drift*, John Wiley, New York, 1964, pp.1-27.

46) Matza, op. cit., pp.27-30.

47) 이러한 평가로 Vold, Bernard and Jeffrey, 앞의 책, 207면.

여 자신이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발견한 규칙 이외의 어떠한 규칙도 의식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범죄를 범하기 쉽게 되고 따라서 개인이 사회와의 결속이 약화되거나 붕괴되었을 때 범죄가 발생된다고 한다⁴⁸⁾ Hirshi는 가족, 학교, 동료(peers) 등과 같은 사회집단과의 유대가 강할수록 범죄나 비행은 덜 저지른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개인의 사회에 대한 유대를 애착(Attachment), 헌신(Commitment), 참여(Involvement) 그리고 신념(Belief)이라는 네가지 차원으로 보고 이러한 사회적 유대(bond)가 강할수록 범죄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⁴⁹⁾ 그에 의하면, 애착이란 개인이 일정한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affection)이나 민감성(sensitivity)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유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경우 그들의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애착이 없는 경우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게 된다. 따라서 애착이 강한 사람은 타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애착은 가치나 규범을 내면화하는 데에 기본요소라고 한다. 헌신(commitment)이란 개인 전통사회에 대해 투자한 것(investment)과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때 치뤄야 할 위험(risk)을 말한다. 참여란 전통사회의 활동에 참여(involvement)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게으른 손은 악마의 활동하는 장소”(idle hands are the devil's workshop)이고, 바쁘게 되면 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라고 하는 일반적 관념에 기초한 것이다. 신념은 사회적 규범의 도덕적 타당성에 대하여 한 개인이 그것을 승인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맛짜(Matza)는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전통적 도덕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이를 중화(neutralization)하여 죄책감없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이에 대해 Hirshi는 사람들에 따라 그들이 지켜야 한다고 느끼는 사회의 규칙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한다⁵⁰⁾.

실업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통제이론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실업으로 인격적 불안정과 불안 및 긴장이 증대되고 도덕성이 감소되며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야기되는데, 이는 유대의 네가지 차원 중 신념의 약화를 가져온다. 또한 실업

48) Travis Hirschi, "Causes of Delinquency", Be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16면.

49) T.Hirschi, 앞의논문, 16면.

50) Vold and Bernard, 앞의 책, 241-242면.

에 따른 경제적 압박은 개인과 가정의 적응에 영향을 미쳐서 가정의 역할과 기능이 위태롭게 되고 따라서 가정의 통합과 응집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애착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헌신의 경우, 전통사회에 투자한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줄어든다. 즉 개인은 전통사회의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투자를 위태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범죄행동을 피한다고 한다. 따라서 전통사회의 활동이 중단된 실업자의 입장에서 범죄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은 전통사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참여라는 사회적 유대의 한 차원과도 관계가 있다. 즉 전통사회의 활동의 주된 형태인 고용상황은 그만큼 범죄행위에 참여할 시간을 줄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통사회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실업자는 범죄활동에 참여할 시간과 에너지가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⁵¹⁾

따라서 통제이론에 의하면 실업을 범죄를 유발시킬 가능성을 지닌다. 즉 실업과 범죄와의 관계는 正의 관계라는 것이다.

다) 합리적 선택이론⁵²⁾

합리적 선택이론은 실업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문제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실업률과 범죄율의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 이론은 인간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용을 얻으려고 하는 합리적, 경제적 존재라고 파악하는 고전학과 내지 신 고전학파의 인간상에 기초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취업자들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범죄로 얻게 되는 효용에 비해 치루어야 할 비용이 많아지게 된다. 그러나 실업자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도 치루어야 할 비용이 취업자에 비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실업은 범죄를 유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⁵³⁾ 따라서 합리적 선택이론의 입장에서도 실업과 범죄는 正의 관계에 있다.

라) 맑스주의 이론

Marx의 사상을 이어받은 비판범죄학자들은 범죄를 자본주의 모순의 필연적 산물로 파악한다. 이를 실업 및 범죄와 관련시켜 보면, 자본주의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실업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것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맑스는 그의 공산당 선언문과 자본론에서 대다수의 사회문제는 경쟁적이고 매정한

51) T.P. Thornberry & R.L.Christenson, 앞의 논문, 400면.

52) 이동원, 앞의 논문, 212-213면 참조.

53) T.P. Thornberry & R.L. Christenson, 앞의 논문, 401면 참조.

자본주의 속성의 산물이라고 하고 범죄, 매춘 그리고 도덕적 악행은 자본주의 체제가 가지는 소수의 생산수단의 독점 그리고 부의 분배문제 등에 따른 다수 시민의 경제적 불안정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맑스의 범죄에 대한 입장을 Bonger가 계승하여 범죄자의 정신적 상태는 경제적 압박 혹은 경제적 하락의 산물이며 또한 계급분열의 산물이라는 명제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자본주의사회의 경제적 매카니즘은 인간을 보다 이기적으로 만들고 이러한 이기적 성향의 증대는 인간의 사회적 본능의 발전을 막는다고 하였다.⁵⁴⁾

또한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경쟁적 형태의 사회경제적 상호작용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회적 자원의 실질적인 불평등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권은 보호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구성원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불안정과 재화를 획득하려는 경쟁적 욕구 및 이기적 성향에 의해서 많은 개인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⁵⁵⁾

따라서 보상과 처벌체계를 통하여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하지만 보상과 처벌이 종종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한다.⁵⁶⁾

이러한 입장은 비판범죄학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Richard Quinney는 맑스적 사고에 입각한 소위 비판범죄학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⁵⁷⁾

첫째, 미국사회는 발달된 자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둘째, 국가는 우월한 경제계급 즉 자본주의적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다.

셋째, 형법은 기존의 사회·경제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배계급의 수단이다.

넷째,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범죄통제는 국내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하에 지배계급

54) Leon Radzinowicz, "Economic Pressures", in L.Radzinowicz & M.E. Wolfgang(ed.), Crime and Justice,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71, 423면 참조.

55) David Gordon, "Capitalism, Class and Crime in America", The Economics of Crime, Ralph Andreado & John Siegfried, ed., Scenkman Publishing Company, 1980, 100면.

56) Leon Radzinowicz, 앞의 책, 423면참조.

57) Richard Quinney, ed., Criminal Justice in Americca : A Critical Understanding, Boston: Little Brown, 1974, 24면.

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엘리트들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기구와 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섯째, 발달된 자본주의의 모순 - 존재와 본질 간의 모순 - 은 필요한 어떠한 수단 특히 법률제도의 강압과 폭력을 통해서 피지배계급이 억압된 상태 하에 있을 것을 요구한다.

여섯째, 자본주의 사회가 붕괴되고 사회주의원리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의 창조만이 범죄문제의 해결책이다.

맑스주의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자본주의 사회의 자체모순에서 찾고 있으므로 실업이 경제적 불안정을 가져주므로 실업과 범죄와의 관계는 正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2) 범죄기회이론

범죄기회이론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연구 즉 범죄대상에 대한 연구에서 그 뿌리를 찾으며 어떤 대상이 범죄사건에 연루되는가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이론으로 범죄사건에 연루될 대상을 줄임으로써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⁵⁸⁾. Vold 등은 이러한 이론들을 상황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때의 '상황'(situation)이란 행위를 할 당시의 가까운 주변환경(the immediate setting in which behavior occurs)을 의미하고, '상황적 분석'(situational analysis)이란 행위와 상황 사이의 규칙적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 이론은 주의의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기회만 주어진다면 범죄를 범하려 한다고 전제하므로 범죄를 범하게 되는 동기(motivation)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범죄를 범하려고 동기화된(motivated) 사람이 범죄를 범할 기회를 갖게되는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 설명한다. 따라서 이 이론을 범죄기회이론(opportunity theories)이라고 한다⁵⁹⁾. 이론도 합리적 선택이론과 같이 범죄인들이 자신들의 결정과정에서 합리적이라는 전제에 입각해 있다⁶⁰⁾. 즉 범죄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목표에 접근하는 것의 용이성 여부(the ease of access to the target), 목격되거나 체포될 가능성(likelihood of being observed or caught), 예상되는 수익(the expected reward) 등을 모두 고려한다는 것이다.

58) 이동원, 앞의 논문, 215면 이하. Vold, Bernard and Jeffrey, 앞의 책, 153면 이하.

59) Vold, Bernard and Jeffrey, 앞의 책, 153면.

60) Christopher Birkbeck and Gary LaFree, "The Situational Analysis of Crime and Devianc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9(1993), 113-137면.

범죄기회이론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으나 다음에서는 Cohen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⁶¹⁾.

Cohen의 주장은 범죄피해의 위험은 잠재적으로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감시자의 부재속에서 나타나며 그러한 위험은 잠재적인 범죄자와 피해대상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초래하는 생활스타일과 일상활동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한 위험을 설명하기 위하여 네가지의 중개역할을 하는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즉 노출(Exposure), 감시(Guardianship), 근접성(Proximity), 대상의 유인성(Target attractiveness)등이 그것이다.

노출은 어떤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잠재적인 범죄자에서 범죄대상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물리적 가시성 혹은 접근성의 정도를 말한다.

감시란 사람이나 여타 장치 혹은 설비의 효과로 인하여 범죄발생을 방지하는 효과이다.

근접성이란 잠재적인 범죄대상이 존재하는 곳과 잠재적인 범죄자와의 물리적 거리를 말한다.

대상의 유인성이란 범죄에 대항하기 위한 범죄대상의 활동여부 내지는 속성과 잠재적인 범죄자가 범죄대상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물리적 혹은 상징적 욕구에 부합되는 정도를 말한다.

이상의 네가지 요인들과 범죄피해화의 가능성간의 연결을 위한 제가지 가정을 열거하고 있다.

첫째 다른 조건이 동등하다면 노출의 증가는 범죄피해화의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다.

둘째 다른 조건이 동등하다면 잠재적인 범죄자는 잘 감시된 것보다는 덜 감시된 잠재적 범죄대상을 더 선호한다. 따라서 감시가 크면 클수록 범죄피해화의 위험은 줄어든다.

셋째 다른 조건이 동등하다면 잠재적 범죄대상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의 근접성이 크면 클수록 범죄피해화의 위험은 커진다.

넷째 다른 조건이 동등하다면 잠재적 범죄대상의 유인성이 크면 클수록 범죄피해화의 위험은 커진다.

대부분의 범죄행위는 세가지 최소한의 요소인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범죄대상, 감시의 부재를 필요로 한다. 즉 적절한 범죄대상과 감시의 부재가 이루어질 때에는 잠재적

61) 이하는 이동원, 앞의 논문, 215면 이하에서 주로 재인용하였음.

범죄자부분의 변화 즉 개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범하도록 유도하는 어떤 구조적 조건의 증가가 없더라도 범죄율은 증가한다고 한다. 심지어 적절한 대상부분에 변동이 없더라도 일상생활의 변화로 인한 감시정도의 변화는 범죄가 일어날 기회를 더 많이 만들 것이라고 한다.⁶²⁾ 따라서 일상생활을 중시하는데 일상생활은 첫째 가정에서 둘째 직장에서 셋째 가정과 직장 이외의 다른 곳에서 이루어 지는데 가정이나 일차집단내에서 혹은 그 근처에서 일상활동이 수행될 때는 감시의 효과가 향상되기 때문에 범죄피해화의 위험은 줄어들 것이라고 하며 한 사회내에서 사람과 재화의 순환 및 유통의 정도와 비례해서 범죄율은 변동할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일상생활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가정내에서 혹은 가정근처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보다는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범지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⁶³⁾

범죄기회이론의 입장에 의하면 실업률의 증가는 범죄기회를 감소시키고 따라서 범죄율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의 두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실업률이 높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작업활동에서 배제되고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레저활동도 가정내에서 혹은 가정근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 자신과 자신의 재산은 범죄피해화의 위험이 줄어든다고 한다. 이는 단지 실직된 사람 뿐만 아니라 실직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체사회의 경제적 압박의 증가로 인하여 외부활동의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다.

둘째 경기순환과 동시에 일어나는 변동의 한 지표로서의 고도의 실업률은 고용된 사람이나 실직된 사람 모두에게 생산과 소비활동의 감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 소비활동의 감소는 한 사회내에서 재화와 사람의 순환 및 유통의 감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범죄의 대상은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기회이론의 입장에서는 실업과 범죄와의 관계는 負의 관계로 본다.

제 3 절 선행연구결과들에 대한 평가

범죄동기화이론은 범죄자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범죄기회이론은 범죄대상의 입장만을

62) L.E. Cohen & M. Felson,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44, 1979, 588-599면 참조.

63) L.E. Cohen & M. Felson, 앞의 논문, 593-594면 참조.

고려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업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두 이론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이론의 입장만으로 실업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하여 일관된 설명을 할 수 없다. 즉 범죄란 범죄자와 범죄대상간의 상호접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의 존재만으로는 범죄가 발생하지도 않고 설명될 수도 없다.

또한 범죄동기화이론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범죄에 미치는 실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없으며, 범죄기회이론은 범죄에 대한 실업의 기회효과를 평가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리고 시간적 문제점으로서 기회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실업률의 변화는 거의 동시에 범죄대상의 증가 또는 감소가 일어나고 감시효과도 동일한 반면에 동기화효과는 기회효과에 비하여 시간적으로 지체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직자들은 정부 또는 다른 단체 등에서 일정기간 경제적 혜택을 받기 때문에 실업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압박이 사람들로 하여금 즉각 범죄를 범하도록 하는 동기에 이르지 않는 때문이다. 따라서 기회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데 비하여 동기화효과는 1년 후에 나타난다고 한다.⁶⁴⁾

결론적으로 범죄동기화이론과 범죄기회이론만으로 실업과 범죄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특히 양이론은 범죄유형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범죄유형에 따른 속성을 무시하였다는 결함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범죄유형에 따른 구분에 의해 양이론의 효과이론도 합리적 선택이론과 같이 범죄인들이 자신들의 결정과정에서 합리적이라는 전제에 입각해 있다.⁶⁵⁾

실증적 연구결과들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즉, 실증적 연구들의 결론들이 서로 일관성이 없고 모순을 나타내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해석상의 문제점 때문이다.

첫번째 문제는 실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실업률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만을 계산에 넣는다. 그리고 이는 지난 주에 실제로 하나 이상의 직업에 지원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은 사람들은 공식 실업률통계에서 빠지

64) David Cantor & Kenneth C.Land, 앞의 논문, 322면 참조 그러나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혜택이 없는 경우에는 동기화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도 있다.

65) Christopher Birkbeck and Gary LaFree, “The Situational Analysis of Crime and Devianc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9(1993), 113-137면.

게 된다.⁶⁶⁾ 게다가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조건하에서의 매우 힘든 작업에 “불완전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들은 스스로의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계없이 취업자로 계산된다.⁶⁷⁾ 이런 이유로 가난과 실업은 순수하게 인간의 경험에 속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의 수집은 쉽지가 않다.

두번째 문제점은 경제적 조건과 범죄의 관계에 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두가지의 상반된 이론적 가정이 있다는 것이다. 첫번째 가정은 그 관계가 반비례적이라는 것이다; 즉 경제적 조건이 좋을 때에는 범죄율이 낮고, 경제적 조건이 나쁠 때에는 범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가정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그러한 가정을 반박하였으며, 그 결과 양자의 관계가 비례적이라는 두번째의 이론적 가정이 등장하였다. 두번째 가정은 범죄성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범죄성이 다른 경제활동과 같은 방향으로 증감한다고 본다. 두번째 가정이 옳다면 범죄는 경제적 조건이 좋을 때에 증가하여 절정에 이르고, 경제적 조건이 나빠짐에 따라 감소해야 한다.

예를 들어 Gurr은 도시의 범죄문제를 연구하여 ‘빈곤 뿐만 아니라’ 부유함도 절도와 對人犯罪를 포함하는 범죄 일반의 발생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19세기에 런던, 스톡홀름, 그리고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는 불경기에 절도와 폭행이 모두 증가하였고 경제적 조건이 회복되었을 때에 감소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는 경제적 곤란은 범죄율에 대해 증감 어느 방향으로든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총생산량(富)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 일반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시대에 따라 별개의 인과과정이 작용할 수 있다는 Gurr의 생각은 이 두가지 해석이 모두 타당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⁶⁸⁾

66) Elliott Curry, *Confronting Crime*, Pantheon, New York, 1985, 제 4장은 “실업”보다 “노동시장참여”가 범죄와 관련성이 더 높은 듯 하다고 주장한다. “노동시장참여(labour market participation)”는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수를 측정하는데, 노동시장은 고용된 사람들과 고용되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한다. 이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떨어져나간 사람들과 잘 대비된다. 노동시장 탈락자들은 통계상 실업자로 계산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보다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더 높다.

67) 실업자수 계산법의 몇가지 문제점에 관해서는 Gwynn Nettler, *Explaining Crime*, 3rd. ed., McGraw-Hill, New York, 1984, 127-29면 참조.

세 번째 문제점은 경제적 변화가 범죄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를 정하는 것과 관련되어 제기된다. 범죄율 변화는 경제적 조건변화와 동시에 발생한다고 가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범죄율이 영향을 받기까지 약간의 “시차”가 있다고 가정해야 하는가? 어떤 연구들은 시차를 달리 고려하게 되면 경제적 조건과 범죄성의 관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⁶⁸⁾ 따라서 상이한 시차를 두고 자료를 선택하기만 해도 동일한 연구가 두가지 상반되는 이론적 가정을 뒷받침하는데 두루 인용될 수 있다.

Cantor와 Land는 이 두가지 이론적 가정이 모두 타당하지만 각기 다른 시점에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⁷⁰⁾ 한편으로 그들은 실업이 범행동기를 증가시킨다는 일반적이고 폭넓은 지지를 받는 견해에 동의한다. 따라서 높은 실업률은 필시 높은 범죄율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동기부여 효과(motivation effect)”는 반드시 상당기간 “지체된다”고 한다. 개인저축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 그리고 실업보상같은 정부의 프로그램때문에 사람들은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야만 실업의 효과를 제대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경제적 활동이 범행기회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에도 동의한다. 실업률이 높을 때에는 전반적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범행기회가 감소하기 때문에 범죄율도 낮아지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회 효과(opportunity effect)”는 즉시 나타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경제적 활동이 위축될 때 범행기회는 그와 동시에 감소된다. 따라서 기회의 감소가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에는 아무런 “시차”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Cantor와 Land는 1946년부터 1982년까지 미국의 실업률과 지표범죄(index crimes)의 통계를 이용하여⁷¹⁾ 강도, 절도 등 재산관련범죄에 관해 스스로 예견한 정비례 및 반비

68) Gurr, Rogues, Rebels, and Reformers, 179면.

69) 일례로 Dorothy Swaine Thomas, *Social Aspects of the Business Cycle*,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25, 143면 참조(이 논점은 본 저서의 구판에서 그 입증자료와 함께 더욱 상세히 논의되었다): George B. Vold, *Theoretical Crimin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58, 177-81면; 그리고 작고한 Vold를 이어 Thomas J. Bernard가 개정한 제 2판 (1979), 176-78면 참조.

70) David Cantor and Kenneth C. Land, “Unemployment and Crime Rates in the post-World War II United State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 317-23 (1985).

71) Cantor and Land, 같은 책(이 통계분석은 이후 1990년 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반복.확대

례관계를 찾아냈다. 즉 그들은 위의 각 범죄에서 즉각적인 기회효과와 시차가 있는 동기부여효과 모두를 발견하였던 것이다. 실업률이 높아질 때 중침입, 강도, 절도는 당장에는 감소하였지만 다음 해에는 증가하였다. 이 두가지 상반된 추세의 종합적 영향은 반비례적이어서 실업이 증가하면 그 범죄들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지만 감소폭은 별로 크지 않았다. 살인과 자동차절도에서는 즉각적이고 반비례적인 기회효과만 나타났다 — 즉, 이 범죄들은 실업이 증가할 때 함께 감소하였지만 이듬해에도 증가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강간 및 폭행은 실업과 아무 관계도 없어 보였다.

실증적 연구의 네번째 해석상 문제점은 ‘범죄와 실업의 정비례 관계가 대도시지역이나 국가와 같은 큰 집단보다 구역(neighborhood)이나 지역사회같은 작은 집단에서 더 잘 나타난다’는 Chiricos의 결론에 관한 것이다. 문제는 경제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집단의 크기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어느 구역의 경제적 조건은 그 구역의 범죄에 강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한 나라의 경제적 조건은 그 국가의 범죄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실업과 범죄의 관계에 관한 연구의 다섯번째 해석상 문제점은 다음의 묘사에서 잘 드러난다. 범죄율이 높은 지역사회는 대개 범죄를 야기함직한 온갖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 가난, 실업, 높은 이혼율과 결손가정, 높은 인구밀도, 황폐한 주거환경, 변변치 못한 교육기관 기타 사회적 서비스, 잦은 이사와 인구이동, 소수 인종과 소수민족의 집중 등. 이러한 요소들 중 어떤 것 또는 모두가 범죄를 야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함께 존재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떤 요소들이 실제로 범죄를 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요소들이 어쩌다 거기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범죄를 야기하지 않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 문제는 “복합적요소의 공존성(multicollinearity)”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원인요소들이 서로 고도의 상호관련성을 가지는 것이다.⁷²⁾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계기법을 조금만 바꾸더라도

되었다): in Land, Cantor, and Russell, 앞의 책; Chris Hale and Dima Sabbagh (“Unemployment and Crime”)와 Cantor and Land (“Exploring Possible Temporal Relationships of Unemployment and Crime: A Comment on Hale and Sabbagh”) 사이의 의견교환이 실린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8(4): 400-425 (1991) 참조.

72) Robert J. Sampson and Janet L. Lauritsen, “Violent Victimization and Offending,” in Albert J. Reiss, Jr., and Jeffrey A. Roth, eds.,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Violence—Social Influences*, vol. 3,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 1994, 66면; Land et al., 1990.

도 어떤 요소가 인과적 영향을 미쳤고 어떤 요소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려내는데 있어 상반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 때문에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일관성없고 상반된 결과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실업이 전체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실업의 어느 특정 범죄의 증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려도 무방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선행연구결과들의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IMF 이후 우리 나라의 실업과 범죄의 관계에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기로 한다.

제 3 장 범죄유형별 실업과 범죄와의 관계 - 연도별 실업률과 주요범죄를 중심으로 -

제 1 절 서 론

실업과 범죄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은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시간별 분석방법(time series analysis)이다. 이 방법은 시간별로 범죄율을 실업률 및 관련 노동시장 지수와 비교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기지수가 범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고 따라서 전반적으로 취업전망이 나아진다면 범죄율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대체적인 답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변수의 '공존성'(collinearity)의 문제이다. 이것은 다른 변수들이 일정하고 하나의 변수만이 변화해야 그 변수의 효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대체로 많은 변수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같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시간별 분석방법의 다른 문제점으로 해석상의 문제점도 들 수 있다. 경기변화가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사실은 실업이 범죄율보다는 시간차(timing)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도를 결심한 사람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경기가 나쁠 때에 범행을 하지만, 경기가 나쁘지 않더라도 그는 결국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 경우 경기가 나쁜 것이 강도의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역적 비교분석방법(cross-sectional analysis)이다. 이는 각 지역의 범죄율

과 노동시장의 조건을 비교하여 실업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내는 것이다. 이 방법은 시간적 분석방법에 비해 변수의 공존성 문제를 갖지 않고 따라서 실업과 범죄의 궁극적 관계를 좀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그 추론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 즉, 각 지역은 그 지역만의 독특한 성격에 따라 범죄율과 노동시장의 조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상관관계가 왜곡되거나 은폐될 수가 있다. 또한 범죄인들의 이동으로 인해 실업과 범죄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세 번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이다. 개인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를 분석하는 것은 실제로 결정을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인종, 성별, 연령, 교육정도 등과 같이 개인에 대한 자료가 고정적인 경우에는 범죄율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유동적인 변수나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실업자가 취업자들에 비해 범죄율이 높다고 할 경우 이를 두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를 해석할 수 있다. 즉, 실업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즉 다른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는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지에 대한 인과관계의 설명이 어렵다.

네 번째는 정부가 범죄인의 취업기회를 변화시켜서 실제로 시험을 해 보는 방법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시행된 적이 있다⁷³⁾. 석방되는 범죄인들의 일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보수를 주는 직업을 제공해 주고 나머지 범죄인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직업을 제공받은 범죄인들의 재범율이 낮다면 실업과 범죄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실험에서는 직업을 오랫동안 보장해 준 것이 아니라 석방 후 몇 달 동안 직업과 수입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직업은 실제 노동시장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

간단히 말해서, 실업과 범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에서 나오는 결론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된다. 그

73) Freeman, 앞의 논문, 103-106면.

러나 어느 방법들을 택하더라도 실업과 범죄의 대강의 관계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주로 시간별 분석방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IMF로 인한 실업과 범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범죄는 그 유형에 따라 발생원인과 성격에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IMF에 들어서서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 예측되므로, 실업과 총범죄와의 관계 및 실업과 강도, 절도, 폭력, 사기, 횡령, 배임, 부정수표범죄 등 실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범죄의 관계를 공식통계를 분석하여 규명하여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988년에서 1997년까지의 실업률과 범죄발생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지난 10년간 실업률과 총범죄발생 검거현황 비교분석

[표 1]은 지난 10년간 우리 나라의 실업률과 총범죄발생 검거현황에 대한 내용이다.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실업률이 2.0%에서 2.8%이므로 실업률이 그리 높지 않고 실업률의 변동폭도 그리 크지 않다. 한편 범죄율은 1988년에서 1997년까지 점진적으로 범죄발생이 증대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1]에 의하면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의 10년간 총범죄는 1988년 기준으로 약 61% 증가하여 연평균 약 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실업률이 높았던 해의 범죄증가율과 실업률이 낮았던 해의 범죄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실업률이 2.8%와 2.6%로 높았던 1993년과 1997년 및 1989년의 범죄증가율은 각각 7.7%, 8.2%, 9.4%로서 10년간의 평균증가율 5.5% 보다 모두 높다. 이에 비해 실업률이 2.0%로 낮았던 해인 1995년과 1996년도의 범죄증가율은 각각 1.5%와 6.8%로서 1995년의 경우에는 연평균증가율 보다 낮았지만 1996년에는 연평균증가율 보다 높다. 실업률이 두 번째로 낮았던 해인 1991년의 경우에는 범죄증가율이 3.3%로서 평균증가율 보다 낮다. 이를 토대로 대체로 실업률이 높은 해에는 범죄증가율이 높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대로 실업률의 영향이 반드시 그 해에 나타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다음 해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면, 위와 같은 결론을 선불리 내릴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실업률이 낮았던 1995년도와 1996년도의 영향이 각각 다음해인 1996년도와 1997년도의 범죄증가율로 나타난다고 가정한다면 두 해의 범죄증가율은 각각 6.8%와 8.2%로 평균증가율 5.5% 보다 높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으면 범죄율도 낮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대로 “복합적요소의 공존성(multicollinearity)” 때문에 다른 사회 요인들이 고정

되어 있지 않고 많이 변화였으므로 이 역시 실업이 범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표 1]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용 실업률이 낮은 해에 범죄증가율이 낮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있으나, 이로부터 실업이 범죄발생을 증가시킨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표 1] 실업률⁷⁴⁾과 총범죄 발생검거 현황(1988-1997)

구분 연도	경제활동인구 (15세이상:천명)	취업 (천명)	실업자 (천명)	실업률 (%)	범죄발생 (증감률%)	검 거 (검거율%)	검거인원
1988	17,305	16,869	435	2.5	954,128	847,628(88.8)	983,184
1989	18,023	17,560	463	2.6	1,043,901(+9.4)	917,970(87.9)	1,045,022
1990	18,539	18,085	454	2.4	1,147,752(+10.0)	1,049,005(91.4)	1,146,745
1991	19,048	18,612	436	2.3	1,185,648(+3.3)	1,090,413(92.0)	1,303,807
1992	19,426	18,961	465	2.4	1,210,786(+2.1)	1,107,818(91.5)	1,302,228
1993	19,803	19,253	550	2.8	1,304,349(+7.7)	1,248,010(95.7)	1,500,707
1994	20,326	19,837	489	2.4	1,309,326(+0.4)	1,184,208(90.4)	1,463,186
1995	20,797	20,377	419	2.0	1,329,674(+1.6)	1,202,059(90.4)	1,476,151
1996	21,188	20,764	425	2.0	1,419,811(+6.8)	1,287,260(90.7)	1,572,497
1997	21,604	21,048	556	2.6	1,536,652(+8.2)	1,398,384(91.0)	1,693,080

제 3 절 지난 10년간 실업률과 주요범죄발생의 비교분석

1. 총설

[표 2]는 우리 나라 1988년에서 1997년까지의 실업률과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실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강도, 절도, 폭력, 사기, 횡령, 배임, 부정수표범죄(이하 '주요범죄'라고 한다) 등의 총범죄발생 및 검거현황에 대한 것이다. 이 표에서

74) 본 논문에서 사용된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은 통계청 고용동향에 의한 것임.

실업과 이들 범죄발생과의 관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의 10년간 이들 주요범죄는 약 55% 증가하여 연평균 약 5.1% 증가하였다. 이 중 실업률이 2.0%로 가장 낮았던 1995년, 1996년의 주요범죄 증가율은 각각 10.6%, 4.4%이고, 2.3%로 낮은 편에 속한 1991년도의 주요범죄증가율은 -1.5%로서 10년간의 평균증가율 5.1%와 비교하여 볼 때 실업률이 낮으면 범죄율도 낮아진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기는 곤란하다. 한편 실업률이 2.8%로 높았던 1993년의 범죄증가율은 9.0%, 로 평균증가율 5.1% 보다 높으나, 실업률이 2.6%로 높은 편이었던 1989년과 1997년의 범죄증가율은 각각 0.02%와 -0.8%로 10년간의 평균증가율 5.1% 보다 현저히 낮다.

[표 2] 실업률과 주요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1988-1997)

구분 연도	경제활동 인구 (15세이 상: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자 (천명)	실업률 (%)	범죄발생 (증감률%)	검 거 (검거율%)	검거인원
1988	17,305	16,869	435	2.5	365,158	289,920(79.4)	393,593
1989	18,023	17,560	463	2.6	365,245(+0.02)	271,801(74.4)	380,627
1990	18,539	18,085	454	2.4	373,021(+2.3)	294,936(79.1)	389,962
1991	19,048	18,612	436	2.3	367,320(-1.5)	293,026(79.8)	421,750
1992	19,426	18,961	465	2.4	389,380(+6.0)	313,725(80.6)	428,684
1993	19,803	19,253	550	2.8	424,478(+9.0)	380,437(89.6)	521,711
1994	20,326	19,837	489	2.4	493,591(+16.3)	397,917(80.6)	563,695
1995	20,797	20,377	419	2.0	546,013(+10.6)	437,555(80.1)	606,248
1996	21,188	20,764	425	2.0	570,345(+4.4)	473,802(83.1)	653,109
1997	21,604	21,048	556	2.6	566,052(-0.8)	458,696(81.0)	657,453

따라서 [표 2]를 통해서는 실업률과 주요범죄와의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고, 결국 10년간의 전체 주요범죄의 증가는 실업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2. 10년간의 실업률과 강도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 분석

[표 3]은 1988년에서 1997년까지의 실업률과 강도범죄발생 검거현황에 대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강도범죄는 1988년을 기준으로 17.4% 증가하였고 이는 연평균 약 1.9%씩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일단 10년동안 실업률의 변동폭이 거의 없었는데도 강도범죄가 지난 10년간 17.4% 증가하였다는 것은 실업 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 강도범죄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개 연도별로 분석할 경우, 실업률이 2.8%로 가장 높았던 1993년도의 경우 강도범죄 증가율은 19.9%이고, 2.6%로 다음으로 높았던 1989년과 1997년의 강도범죄 증가율은 각각 16.9%와 20.4%로서 평균증가율 보다 현저하게 높다. 한편 실업률이 2.0%로 가장 낮았던 1995년 및 1996년의 강도범죄 증가율은 각각 -19.8%와 -0.1%이고, 다음으로 낮았던 1991년도의 강도범죄 증가율은 -30.9%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서 실업률이 높았던 해에는 강도범죄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낮았던 해에는 강도범죄가 감소한다고 일단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여기에서 이것이 실업률이 증가하면 곧 강도범죄가 증가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까지도 의미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1989년도와 1990년도의 경우 실업률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강도범죄는 증가하였고, 1993년도와 1994년도의 경우 전년도 보다 실업률이 0.4%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강도범죄는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실업률이 전년도 보다 0.1% 높아진 1989년의 경우 강도범죄는 16.9% 증가하였고, 전년도 보다 0.4% 높아진 1993년에는 강도범죄가 전년대비 19.9%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보다 0.6% 높아진 1997년에는 강도범죄가 전년대비 20.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통계를 분석하여 볼 때, 일단 실업률이 높은 해에는 강도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실업과 강도범죄와는 어느 정도 정(正)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IMF로 인해 실업이 증가하게 되면 강도범죄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표 3] 실업률과 강도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 (1988-1997)

연도	구분 경제활동 인구 (15세이상: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자 (천명)	실업률 (%)	범죄발생 (증감률%)	검 거 (검거율%)	검거인원
1988	17,305	16,869	435	2.5	3,765	3,537(93.9)	4,471
1989	18,023	17,560	463	2.6	4,403(+16.9)	3,536(80.3)	4,845
1990	18,539	18,085	454	2.4	4,760(+8.1)	4,308(90.5)	5,658
1991	19,048	18,612	436	2.3	3,289(-30.9)	3,192(97.1)	4,360
1992	19,426	18,961	465	2.4	3,112(-5.4)	3,432(110.3)	4,246
1993	19,803	19,253	550	2.8	3,730(+19.9)	4,254(114.0)	6,083
1994	20,326	19,837	489	2.4	4,580(+22.8)	4,631(101.1)	7,054
1995	20,797	20,377	419	2.0	3,674(-19.8)	3,537(96.3)	5,326
1996	21,188	20,764	425	2.0	3,670(-0.1)	3,364(91.7)	5,098
1997	21,604	21,048	556	2.6	4,420(+20.4)	4,027(91.1)	6,394

3. 10년간의 실업률과 절도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 분석

[표 4]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의 실업률과 절도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절도범죄는 실업률의 변동에 민감하게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업률이 지난 10년간 2.0%에서 2.8%로 변동률이 낮으므로 일단 실업률이 절도범죄의 변화에 크게 반응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절도범죄는 그 기간 동안 1988년을 기준으로 약 12% 감소하여 연평균 0.7%씩 감소하였다. 이 중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해인 1993년에 절도범죄 발생율은 21%가 감소하였고, 실업률이 다음으로 높았던 1989년과 1997년에는 절도범죄 증가율이 각각 7.3%와 18.3%를 보였다. 한편 실업률이 가장 낮은 해인 1995년과 1996년도의 경우 절도범죄 증가율은 각각 4.1%와 12%의 증가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낮은 해인 1991년의 경우 8.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것으로서는 실업률이 높은 해에 절도범죄 증가율이 높아진다고거나 실업률이 낮은 해에 절도범죄 증가율이 낮아진다고 말할 수

는 없다.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전년도에 비해 실업률이 0.1% 높아진 1989년과 1992년의 절도범죄 증가율은 각각 7.3%와 -10.9%이고, 전년도에 비해 실업률이 0.4% 높아진 1993년의 경우 절도범죄 증가율은 -21%이고, 전년도에 비해 0.6% 높아진 1997년의 경우 절도범죄 증가율은 18.3%이다. 한편 전년도에 비해 실업률이 0.2% 낮아진 1990년도의 경우 절도범죄 증가율은 -5.7%이고, 전년도에 비해 실업률이 0.1% 낮아진 1991년도의 경우 증가율은 -8.5%이고, 전년도에 비해 실업률이 0.4% 낮아진 1994년과 1995년의 증가율은 각각 -2.1%와 4.1%이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전년도 보다 실업률이 낮아지는 해에는 대체로 절도범죄가 감소한다고 할 수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실업률이 높아지는 해라고 해서 절도범죄가 증가한다고 할 수는 없다.

[표 4] 실업률과 절도범죄 발생검거 현황(1988-1997)

연도	구분 경제활동 인구 (15세이상: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자 (천명)	실업률 (%)	범죄발생 (증감률%)	검 거 (검거율%)	검거인원
1988	17,305	16,869	435	2.5	94,395	49,809(52.8)	49,692
1989	18,023	17,560	463	2.6	101,243(+7.3)	37,300(36.8)	42,772
1990	18,539	18,085	454	2.4	95,427(-5.7)	41,196(43.2)	41,360
1991	19,048	18,612	436	2.3	87,358(-8.5)	39,311(45.0)	42,131
1992	19,426	18,961	465	2.4	77,861(-10.9)	46,974(60.3)	43,431
1993	19,803	19,253	550	2.8	61,526(-21.0)	47,604(77.4)	51,598
1994	20,326	19,837	489	2.4	60,255(-2.1)	45,126(74.9)	53,371
1995	20,797	20,377	419	2.0	62,710(+4.1)	39,914(63.6)	52,020
1996	21,188	20,764	425	2.0	70,238(+12.0)	38,912(55.4)	52,030
1997	21,604	21,048	556	2.6	83,063(+18.3)	41,427(49.9)	56,290

4. 10년간의 실업률과 폭력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분석

[표 5]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폭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난 10년간 폭력범죄는 1988년 기준으로 약 20.4% 증가하였고 이는 연평균 2.1%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이 중 실업률이 가장 높은 1993년도의 폭력범죄 증가율은 10.0%이고, 다음으로 높았던 1989년과 1997년의 폭력범죄 증가율은 각각 2.6%와 3.0%이다. 한편 실업률이 가장 낮았던 1995년과 1996년의 폭력범죄 증가율은 각각 -3.4%와 4.5%이다. 실업률이 다음으로 낮았던 1991년도의 폭력범죄 증가율은 -2.8%이다. 또한 10년동안 폭력범죄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해인 1993년도는 실업률이 가장 높았고, 폭력범죄의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해인 1992년도의 실업률은 2.4%로서 중간 정도의 실업률은 보였지만 폭력범죄의 증가율이 두 번째로 낮았던 1995년도의 실업률은 10년 중 가장 낮았던 2.0%이다. 또한 실업률이 각각 0.4%와 0.6%로 높아졌던 1993년도와 1997년도의 폭력범죄 증가율은 각각 10%와 3%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대체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해에는 폭력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실업이 증가하면 폭력범죄가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표 5] 실업률과 폭력범죄발생 검거현황(1988-1997)

연도	구분 경제활동 인 구 (15세이상: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자 (천명)	실업률 (%)	범죄발생 (증감률%)	검 거 (검거율%)	검거인원
1988	17,305	16,869	435	2.5	166,725	159,847(95.9)	257,903
1989	18,023	17,560	463	2.6	171,030(+2.6)	160,787(94.0)	260,166
1990	18,539	18,085	454	2.4	176,829(+3.4)	174,164(98.5)	266,906
1991	19,048	18,612	436	2.3	171,817(-2.8)	165,916(96.6)	282,753
1992	19,426	18,961	465	2.4	165,556(-3.6)	161,236(97.4)	271,957
1993	19,803	19,253	550	2.8	182,041(+10.0)	190,681(104.7)	317,343
1994	20,326	19,837	489	2.4	193,047(+6.0)	190,030(98.4)	332,747
1995	20,797	20,377	419	2.0	186,490(-3.4)	181,910(97.5)	325,064
1996	21,188	20,764	425	2.0	194,891(+4.5)	189,110(97.0)	336,094
1997	21,604	21,048	556	2.6	200,675(+3.0)	192,456(96.0)	350,021

5. 10년간의 실업률과 사기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 분석

[표 6] 은 지난 10년간의 실업률과 사기범죄의 발생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실업률은 증감하지만 사기범죄의 발생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난 10년간 사기범죄는 1988년에 비해 288% 증가하여 연평균 17.5% 증가하였다.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해인 1993년도의 사기범죄 증가율은 34.5%이고, 다음으로 높았던 1989년과 1997년의 사기범죄 증가율은 각각 -7.9%와 -7.5%으로 실업률이 높지만 사기범죄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한편 실업률이 가장 낮았던 1995년도와 1996년도의 사기범죄 증가율은 각각 29.6%와 17.5%이고, 두 번째로 낮았던 1991년도의 증가율은 19.6%로서, 실업률이 낮았던 해에 사기범죄의 증가율은 평균증가율 보다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기범죄 증가율이 41%로 가장 높았던 1992년도의 실업률은 2.4%로 중간수준이고, 사기범죄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1989년도의 실업률은 2.6%로서 높은 편이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실업률이 증가하면 오히려 사기범죄의 증가율이 오히려 둔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6] 실업률과 사기범죄발생 검거현황(1988-1997)

구분 연도	경제활동 인구 (15세이상: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자 (천명)	실업률 (%)	범죄발생 (증감률%)	검거 (검거율%)	검거인원
1988	17,305	16,869	435	2.5	45,607	37,499(82.2)	43,360
1989	18,023	17,560	463	2.6	42,003(-7.9)	35,736(85.1)	39,752
1990	18,539	18,085	454	2.4	44,035(+4.8)	37,742(85.7)	40,867
1991	19,048	18,612	436	2.3	52,681(+19.6)	45,020(85.5)	52,135
1992	19,426	18,961	465	2.4	74,280(+41.0)	57,175(77.0)	65,351
1993	19,803	19,253	550	2.8	99,882(+34.5)	81,607(81.7)	93,127
1994	20,326	19,837	489	2.4	125,669(+25.8)	88,819(70.7)	102,498
1995	20,797	20,377	419	2.0	162,891(+29.6)	124,729(76.6)	140,330
1996	21,188	20,764	425	2.0	191,451(+17.5)	157,098(82.1)	177,653
1997	21,604	21,048	556	2.6	177,072(-7.5)	146,132(82.5)	171,367

6. 10년간의 실업률과 횡령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 분석

[표 7]은 지난 10년간 실업률과 횡령범죄의 발생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률은 2.0%에서 2.8% 사이에서 변화하였지만 횡령범죄의 발생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8년을 기준으로 횡령범죄는 10년동안 약 34% 증가하였고 이는 연평균 약 4.2%씩 증가한 것이다.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1993년도의 횡령범죄 증가율은 11.9%이고, 두 번째로 높았던 1989년과 1997년의 횡령범죄 증가율은 각각 -12.9%와 1.9%이다. 이것은 연평균 증가율은 밑도는 것이다. 한편 실업률이 가장 낮았던 해인 1995년과 1996년의 횡령범죄 증가율은 각각 6.9%와 1.8%이고 두 번째로 낮았던 1991년도의 증가율은 2.5%로서 연평균 증가율 보다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다.

횡령범죄의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1989년도의 실업률은 2.6%로서 높은 쪽에 속하고 있고, 횡령범죄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1992년도의 실업률은 2.4%로서 중간수준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실업률의 증감이 횡령범죄의 증감에 어떤 규칙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표 7] 실업률과 횡령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1988-1997)

연도	구분 경제활동인구 (15세이상: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자 (천명)	실업률 (%)	범죄발생 (증감률%)	검 거 (검거율%)	검거인원
1988	17,305	16,869	435	2.5	16,175	14,062(86.9)	14,855
1989	18,023	17,560	463	2.6	14,088(-12.9)	13,096(93.0)	13,555
1990	18,539	18,085	454	2.4	13,627(-3.3)	12,977(95.2)	13,231
1991	19,048	18,612	436	2.3	13,964(+2.5)	13,925(99.7)	15,346
1992	19,426	18,961	465	2.4	17,299(+23.9)	15,651(90.5)	17,005
1993	19,803	19,253	550	2.8	19,359(+11.9)	18,737(96.8)	20,547
1994	20,326	19,837	489	2.4	20,268(+4.7)	18,053(89.1)	19,715
1995	20,797	20,377	419	2.0	21,660(+6.9)	20,176(93.1)	22,080
1996	21,188	20,764	425	2.0	22,054(+1.8)	21,348(96.8)	23,544
1997	21,604	21,048	556	2.6	21,637(+1.9)	20,171(93.2)	22,601

7. 10년간의 실업률과 배임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분석

[표 8]은 지난 10년간의 실업률과 배임범죄의 발생추이를 보여준다.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 기간 동안 실업률도 증감을 거듭하였고, 배임범죄의 발생도 증감을 거듭하였으므로 양자간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표 8]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배임범죄는 1988년을 기준으로 약 11% 증가하였고 이는 연평균 약 1%씩 증가한 것이다. 10년간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1993년도의 배임범죄 증가율은 19.8%이고, 다음으로 높았던 1989년도 및 1997년도의 배임범죄 증가율은 각각 -13.1% 및 -5.1%이다. 한편 실업률이 가장 낮았던 1995년도 및 1996년도의 배임범죄 증가율은 각각 -4.0% 및 7.2%이다. 실업률이 두 번째로 낮았던 1991년도의 배임범죄 증가율은 -1.5%이다. 10년 중 배임범죄 증가율 19.8%로 가장 높았던 해인 1993년도의 실업률은 10년 중 가장 높았던 2.8%였으나 배임범죄 증가율이 -13.1%로 가장 낮았던 해인 1989년의 실업률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2.6%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실업률과 배임범죄의 발생간에 어떤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표 8] 실업률과 배임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1988-1997)

구분 연도	경제활동 인구 (15세이상: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자 (천명)	실업률 (%)	범죄발생 (증감률%)	검 거 (검거율%)	검거인원
1988	17,305	16,869	435	2.5	3,667	3,663(99.9)	4,520
1989	18,023	17,560	463	2.6	3,186(-13.1)	3,206(100.6)	4,198
1990	18,539	18,085	454	2.4	2,956(-7.2)	3,106(105.5)	3,870
1991	19,048	18,612	436	2.3	2,911(-1.5)	3,043(104.5)	4,146
1992	19,426	18,961	465	2.4	3,421(+17.5)	3,320(97.0)	4,445
1993	19,803	19,253	550	2.8	4,099(+19.8)	4,124(100.6)	5,501
1994	20,326	19,837	489	2.4	4,167(+1.7)	3,886(93.2)	5,059
1995	20,797	20,377	419	2.0	4,001(-4.0)	3,896(97.4)	4,929
1996	21,188	20,764	425	2.0	4,290(+7.2)	4,162(97.0)	5,383
1997	21,604	21,048	556	2.6	4,071(-5.1)	4,055(99.6)	5,281

8. 10년간의 실업률과 부정수표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분석

[표 9]는 지난 10년간의 실업률과 부정수표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부정수표범죄는 경기변동과 가장 밀접한 범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에서 2.8%의 수준에서 증감을 거듭하였고, 부정수표범죄 증가율 역시 증감을 거듭하고 있다.

부정수표범죄는 지난 10년간 1988년을 기준으로 할 때 113.5% 증가하여, 연평균 약 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1993년도의 부정수표범죄 증가율은 12.5%이고, 두 번째로 높았던 1989년 및 1997년의 증가율은 각각 -16.7% 및 -10.3%로서 1993년도는 평균증가율 보다 높았지만 1989년과 1997년도는 실업률이 높는데 비해 부정수표범죄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한편 실업률이 가장 낮았던 1995년도 및 1996년도의 부정수표범죄 증가율은 각각 22.1%와 -19.9%이고, 두 번째로 실업률이 낮았던 1991년도의 증가율은 -0.2%였다. 부정수표범죄의 증가율이 59%로 가장 높았던 해인 1994년도의 실업률은 중간수준인 2.4%였고, 증가율이 -19.9%였던 1996년도의 실업률은 가장 낮은 수준은 2.0%였다.

위의 모든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실업률과 부정수표범죄의 발생을 사이에 어떤 규칙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표 9] 실업률과 부정수표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1988-1997)

연도	구분 경제활동 인구 (15세이상: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자 (천명)	실업률 (%)	범죄발생 (증감률%)	검 거 (검거율%)	검거인원
1988	17,305	16,869	435	2.5	35,181	21,053(61.1)	18,792
1989	18,023	17,560	463	2.6	29,292(-16.7)	18,140(61.9)	15,339
1990	18,539	18,085	454	2.4	35,387(+20.8)	21,443(60.6)	18,070
1991	19,048	18,612	436	2.3	35,300(-0.2)	22,619(64.1)	20,879
1992	19,426	18,961	465	2.4	47,851(+35.5)	25,937(54.2)	22,249
1993	19,803	19,253	550	2.8	53,841(+12.5)	33,430(62.1)	27,512
1994	20,326	19,837	489	2.4	85,605(+59.0)	47,372(55.3)	43,251
1995	20,797	20,377	419	2.0	104,587(+22.1)	63,393(60.6)	56,499
1996	21,188	20,764	425	2.0	83,751(-19.9)	59,808(71.4)	53,307
1997	21,604	21,048	556	2.6	75,114(-10.3)	50,428(67.1)	45,499

제 4 절 IMF체제 전·후 실업과 주요범죄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앞 절에서 지난 10년간의 실업률과 범죄발생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실업률과 총범죄 혹은 주요범죄의 발생률사이에 어떤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IMF체제가 시작된 1997년 12월부터 1998년 8월까지의 9개월 기간의 총범죄 및 주요범죄의 발생동향을 분석하여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알아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IMF체제 이전 9개월 간의 총범죄 및 주요범죄 발생동향과 체제 이후 9개월 간의 총범죄 및 주요범죄 발생동향을 비교하기로 한다. 이러한 비교방법은 계절적 요인에 의한 범죄발생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어서 IMF체제와 같은 계절을 낀 다른 연도의 9개월간과 IMF체제 이후의 9개월간의 총범죄 및 주요범죄의 발생동향을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행한 후 IMF체제 이후의 발생된 범죄의 특성들을 찾아보기로 한다.

1. IMF전·후의 실업률과 총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 비교

IMF구제금융 前시기인 1997년 3월부터 11월(9개월간)과 이후 시기인 1997년 12월부터 1998년 8월 현재까지(9개월간)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현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 10]에 의하면 IMF체제 이전 9개월 동안의 실업률은 2.5%인데 비해 IMF체제 이후 9개월 동안의 실업률은 6.2%로서 IMF체제로 인해 실업률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IMF체제 이후 9개월간의 총범죄의 증가율은 4.2%로서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범죄증가율 5.5%에 비해 특별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적어도 IMF체제 이후 9개월간 실업률의 증가함에 따라 총범죄가 증가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표 10] IMF전후 실업률과 총범죄발생 검거 현황(평균)

구분 연도	경제활동 인구 (15세이상: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자 (천명)	실업률 (%)	총범죄발생 (증감률%)	검 거 (검거율%)	검거 인원
97. 3 - 11	21,781	21,247	534	2.5	1,190,596	1,080,179(90.7)	1,286,399
97.12-98.8	21,344	20,023	1,328	6.2	1,241,334(+4.2)	1,128,227(90.9)	1,304,189

2. IMF전·후 실업률과 주요범죄⁷⁵⁾발생 검거현황 비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의 급증으로 인해 총범죄가 증가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실업의 급증이 주요범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IMF구제금융 前시기인 1997년 3월에서 11월까지 9개월과 이후시기인 1997년 12월부터 1998년 8월 현재까지 9개월간의 주요범죄의 발생동향을 비교하여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IMF전후 9개월간의 실업률과 주요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비교

[표 11]은 IMF구제금융신청 전 9개월과 신청이후 9개월간의 실업과 주요범죄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IMF 이전 9개월간의 실업률은 2.5%였으나 이후 9개월 간의 실업률은 6.2%로 급증하였다. 이에 비해 주요범죄는 IMF체제 이전 431,935건에서 IMF이후 482,743건으로 약 11.7%가 상승하였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주요범죄의 연평균 증가율 5.1%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것이다. 아직 이러한 급증현상이 실업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르지만 향후 이들 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표 11] IMF전후 9개월간의 실업률과 주요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구분 연도	경제활동 인구 (15세이상: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자 (천명)	실업률 (%)	주요범죄 발생 (증감률%)	검 거 (검거율%)	검거 인원
97. 3 - 11	21,781	21,247	534	2.5	431,935	348,823(80.7)	501,006
97.12-98.8	21,344	20,023	1,328	6.2	482,743(+11.7)	397,601(82.3)	551,268

(2) IMF전후 9개월간의 실업률과 강도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비교

[표 12]에 의하면, IMF전 9개월간 실업률이 2.5%였으나 IMF이후 9개월간 실업률은 6.2%가 되었다. IMF체제 이후 9개월간 강도범죄는 4,137건으로 IMF체제 이전 9개월간의 3,406건에 비해 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강도범죄 증가율 1.9%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IMF체제 이후 9개월간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가 강도범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한 것이라 해석할 여지를 충분히 남기고 있고, IMF체제 하에서 실업에 의한 강도범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을 보여주고 있다.

[표 12] IMF전후 실업률과 강도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구분 연도	경제활동 인구 (15세이상: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자 (천명)	실업률 (%)	강도범죄 발생 (증감률%)	검거 (검거율%)	검거 인원
97. 3 - 11	21,781	21,247	534	2.5	3,406	3,133(92.0)	4,878
97.12-98.8	21,344	20,023	1,328	6.2	4,137(+21.4)	3,899(94.2)	6,167

(3) IMF전후 9개월간의 실업률과 절도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표 13]은 IMF체제 이전 9개월동안의 실업률이 2.5%였으나 IMF이후 9개월동안에는 6.2%로 증가되었고, 절도범죄의 발생건수는 IMF체제 이전 9개월간 65,216건에서 IMF체제 이후 9개월간 71,055건으로 8.9%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절도범죄가 8.9% 증가하였다는 것은 지난 10년간 절도범죄가 연평균 0.7%씩 감소한 것과 커다란 대조를 이룬다. IMF체제 전후 9개월간 다른 사회, 경제적 조건에 비해 실업률의 증가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IMF체제 이후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절도범죄 특히 생계형 절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3] IMF전후 9개월간 실업률과 절도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구분 연도	경제활동 인구 (15세이상: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자 (천명)	실업률 (%)	절도범죄 발생 (증감률%)	검거 (검거율%)	검거 인원
97. 3 - 11	21,781	21,247	534	2.5	65,216	33,463(51.3)	45,444
97.12-98.8	21,344	20,023	1,328	6.2	71,055(+8.9)	39,684(55.8)	51,844

(4) IMF전후 9개월간의 실업률과 폭력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 비교

[표 14]에 의하면 IMF이전 9개월간의 실업률이 2.5%에서 IMF체제 이후 9개월간의 실업률이 6.2%로 대폭 증가하였다. 폭력범죄는 IMF체제 이전 9개월 동안에는 155,508건 발생하였으나 IMF체제 이후 9개월 간에는 157,952건이 발생하여 이전 보다 1.6%가 증가하였다.

폭력범죄가 1.6% 증가하였다는 것은 이전 10년간 폭력범죄의 연평균 증가율 2.19%에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경기침체와 실업의 증가는 폭력범죄를 증가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감소시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게 한다. 아니면 적어도 실업이 증가한다고 하여 폭력범죄가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폭력범죄는 경제적 목적보다는 순간적인 상황적 요인이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업률의 상승에 따른 폭력범죄발생건수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표 14] IMF전후 9개월간 실업률과 폭력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구분 연도	경제활동 인 구 (15세이상: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자 (천명)	실업률 (%)	폭력범죄 발생 (증감률%)	검 거 (검거율%)	검거 인원
97. 3 - 11	21,781	21,247	534	2.5	155,508	148,493(95.5)	269,748
97.12-98.8	21,344	20,023	1,328	6.2	157,952(+1.6)	151,953(96.2)	270,140

(5) IMF전후 9개월간의 실업률과 사기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 비교

[표 15]는 IMF전후 9개월간의 실업률과 사기범죄 발생률을 보여주고 있다. IMF전후 9개월간 실업률은 2.5%에서 6.2%로 증가되었고, 사기범죄는 IMF체제 이전 9개월간은 131,894건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9개월간은 154,438건이 발생하여 IMF체제 이후 9개월간 이전에 비해 사기범죄 발생건수가 17.1% 증가하였다. 이것은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사기범죄 증가율 17.5%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적어도 최근까지는 실업률의 증가가 사기범죄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표 15] IMF전후 9개월간의 실업률과 사기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구분 연도	경제활동 인 구 (15세이 상: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자 (천명)	실업률 (%)	사기범죄 발생 (증감률%)	검 거 (검거율%)	검거 인원
97. 3 - 11	21,781	21,247	534	2.5	155,508	148,493(95.5)	269,748
97.12-98.8	21,344	20,023	1,328	6.2	157,952(+1.6)	151,953(96.2)	270,140

(6) IMF전후 실업률과 횡령범죄 발생검거 현황 비교

[표 16]에 의하면 IMF전 9개월 동안 실업률은 2.5%에서 IMF체제 이후 9개월간 실업률이 6.2%로 급증하였다. 또한 횡령범죄의 발생건수는 IMF체제 이전 9개월간 16,269건에서 IMF체제 이후 9개월간 20,516건으로 26.1%가 증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년간 횡령범죄의 연평균 증가율이 4.2%였다는 것과 비교할 때 IMF체제 이후 9개월간 26.1%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IMF체제 이후 횡령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횡령범죄의 증가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업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되거나 실직을 당하게 될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기업의 자금 등을 횡령하는 경우 등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6] IMF전후 9개월간의 실업률과 횡령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

구분 연도	경제활동 인구 (15세이상: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자 (천명)	실업률 (%)	횡령범죄 발생 (증감률%)	검 거 (검거율%)	검거 인원
97. 3 - 11	21,781	21,247	534	2.5	16,269	15,125(92.9)	16,978
97.12-98.8	21,344	20,023	1,328	6.2	20,516(+26.1)	18,057(88.0)	19,456

(7) IMF전후 9개월간의 실업률과 배임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 비교

[표 17]은 IMF전후 9개월 동안의 실업률과 배임범죄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IMF전 9개월 동안 2.5%의 실업률, 범죄발생건수는 3,095건임에 비하여 IMF이후 9개월 동안 실업률이 6.2%로 증가되었으며 범죄발생건수는 3,757건으로 21.4%증가되었으며 검거율은 前기간이 99.6%인데 비해 이후 기간은 95.1%로 감소되었으나 검거인원은 증가되었다.

[표 17] IMF전후 실업률과 배임범죄 발생검거 현황

구분 연도	경제활동 인구 (15세이상: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자 (천명)	실업률 (%)	배임범죄 발생 (증감률%)	검 거 (검거율%)	검거 인원
97. 3 - 11	21,781	21,247	534	2.5	3,095	3,083(99.6)	4,001
97.12-98.8	21,344	20,023	1,328	6.2	3,757(+21.4)	3,573(95.1)	4,632

(8) IMF전후 9개월간의 실업률과 부정수표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비교

[표 18]은 IMF전후 9개월의 실업률과 부정수표범죄 발생검거 현황에 대한 내용이다. IMF前 9개월간의 실업률은 2.5%였으나 IMF 이후 9개월간의 실업률은 6.2%로 급증하였다. IMF 이전 9개월 간의 부정수표범죄 발생건수는 56,547건에서 IMF 이후 9개월간의 부정수표범죄 발생건수는 70,999건으로 25.4%증가되었다.

이러한 증가율은 지난 10년간 부정수표범죄의 연평균 증가율 약 9% 보다 현저히 높은 것이다. 이는 IMF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게 됨에 따라 수표를 결제하지 못하는 일이 빈발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표 18] IMF전후 실업률과 부정수표범죄 발생검거 현황

구분 연도	경제활동 인구 (15세이상: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자 (천명)	실업률 (%)	부정수표 범죄발생 (증감률%)	검 거 (검거율%)	검거 인원
97. 3 - 11	21,781	21,247	534	2.5	56,547	38,321(67.8)	34,331
97.12-98.8	21,344	20,023	1,328	6.2	70,888(+25.4)	53,069(74.9)	47,801

(9)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대로 지난 10년간의 실업률과 범죄율에 관한 통계분석 결과 실업과 범죄의 관계에 관한 어떤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IMF전후 9개월간의 범죄발생을 비교한 결과 강도는 21.4%증가, 절도는 8.9%증가, 폭력범죄는 1.6%증가, 사기는 17.1%증가, 횡령은 26.1%증가, 배임은 21.4%증가, 부정수표단속범죄는 25.4%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발생의 증가현상은 폭력범죄를 제외하면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범죄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실업의 영향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지만, 실업이 이러한 현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중 부정수표범죄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정수표범죄는 은행과 연관되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은행이 신규여신을 규제하게 되면 수표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 도산할 기업이 상당 정도 정리되면 수표부도현상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도, 강도, 횡령, 배임 등의 범죄는 반드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 이 중 횡령, 배임죄는 비교적 화이트칼라 범죄의 성격을 띤 것이어서 반드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우나, 생계를 위한 절도, 강도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면 이들이 생계를 위해 절도, 강도 등의 죄를 범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의 호황기에는 유흥비마련을 위한 절도, 강도 등이 빈발하지만, 경제불황기에는 실업자들이 생계를 위해 절도, 강도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5 절 IMF이후 9개월과 이전 연도의 동기간 중 총범죄 발생의 비교 분석

앞 절에서는 IMF 전후의 9개월간을 비교하였다. 그러나 IMF 전후의 9개월은 계절을 달리 하므로 계절에 따른 범죄발생의 차이가 범죄증가율로 나타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계절적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1997년 12월부터 1998년 8월까지의 9개월 간의 범죄동향과 1996년 12월에서 1997년 8월, 1995년 12월에서 1996년 8월, 1994년 12월에서 1995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범죄동향을 비교분석하기로 한다.

[표 19] IMF이후 9개월간 및 이전 연도의 같은 기간의 총범죄 발생현황

년도별	죄종별	총범죄발생건수	증감비율
94.12월 - 95.8월(9개월간)		980,731	
95.12월 - 96.8월(9개월간)		1,041,429	6.2%
96.12월 - 97.8월(9개월간)		1,128,166	8.3%
97.12월 - 98.8월(9개월간)		1,241,334	10.0%

[표 19]에 의하면 95년 12월에서 96년 8월까지의 9개월 동안 총범죄의 발생건수는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6.2%가 증가하였다. 96년 12월부터 97년 8월까지의 9개월 동안은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총범죄의 발생건수가 8.3% 증가하였다. 이것은 앞의 [표 1]에 나타난 1996년도 및 1997년도의 범죄증가율 각각 6.8% 및 8.2%와 비슷한 수치이다.

그런데 IMF 이후 9개월간의 범죄증가율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0.0%로서 이전에 비해 높은 편이다. 아직 98년도의 범죄통계가 나올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1998년도의 범죄증가율은 전년도 보다 10%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표 1]에 나타난 최근 10년간의 범죄증가율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표 1]에 의하면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범죄증가율 5%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올해의 범죄증가율이 10%내외라고 한다면 올해의 범죄증가율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 연평균 범죄증가율이 10%에 근접한 경우는 1989년도와 1990년도이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비교적 낮은 범죄증가율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IMF체제 하에서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1996년도의 범죄증가율이 6.8%이고, 1997년도의 범죄증가율이 8.2%로서 상향추세에 있으므로 이러한 경향이 올해에까지 이어져 올해 범죄증가율이 10%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증가현상이 반드시 IMF체제의 영향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는 반론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1996년도 이후 현재까지 우리 나라의 경제가 침체하고 있고 실업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경제위기와 실업의 증가로 인해 범죄가 증가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소한도 IMF체제에 의한 경제위기와 실업증가가 우리 나라의 범죄발생에 감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 6 절 IMF 이후 9개월간과 이전 연도의 동기간주요범죄의 발생건수 비교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MF체제 이후 총범죄의 증가율이 이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강도, 절도, 폭력, 사기, 횡령, 배임, 부정수표범죄 등의 발생은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0]은 1997년 12월에서 1998년 8월까지 IMF체제 이후 9개월간의 주요범죄 동향과 전 3개연도의 같은 기간 동안의 주요범죄의 발생현황을 비교하여 놓은 것이다.

[표 20] IMF 이후 9개월과 이전 3개 연도 동기간 주요범죄 발생건수

년도별 죄종별	중요범죄발생건수							
	소계	강도	절도	폭력	사기	횡령	배임	부정수표
94.12월~95. 8월 (9개월간)	396,189	2,882	44,441	135,555	115,158	15,807	2,940	79,406
95.12월~96. 8월 (9개월간)	427,115 (7.8%)	2,700 (-6.3%)	51,166 (15.1%)	144,095 (6.3%)	141,539 (22.9%)	16,612 (5.1%)	3,158 (7.4%)	67,845 (-14.6%)
96.12월~97. 8월 (9개월간)	424,082 (-0.7%)	3,374 (25%)	60,641 (18.5%)	147,669 (2.5%)	136,162 (-3.8%)	16,268 (-2.1%)	3,024 (-4.2%)	56,944 (-16.1%)
97.12월~98. 8월 (9개월간)	482,743 (13.8%)	4,137 (22.6%)	71,055 (17.2%)	157,952 (6.9%)	154,438 (13.4%)	20,516 (26.1%)	3,757 (24.2%)	70,888 (24.5%)

* ()안의 숫자는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의미.

[표 20]에 의하면, IMF체제 이후인 1997년 12월에서 1998년 8월까지 9개월동안 이전 연도의 동기간에 비해 주요범죄의 총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995년 12월부터 1996년 8월까지의 9개월동안은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주요범죄가 증가율이 7.8%에 그쳤고, 1996년 12월부터 1997년 8월까지의 9개월 동안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주요범죄의 총수가 오히려 -0.7% 감소하였다. 그러나 IMF체제 이후 9개월간은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주요범죄의 발생건수가 13.8%로 대폭 증가하였다.

범죄종류별로 보면 강도의 경우 22.6%, 절도의 경우 17.2%, 폭력의 경우 6.9%, 사기의 경우 13.4%, 횡령의 경우 26.1%, 배임의 경우 24.2%, 부정수표범죄의 경우 24.5%가 증가되었다. 폭력범죄의 증가율이 낮는데 비해 강도, 절도, 횡령, 부정수표범죄 등의 증가가 눈에 띈다. 즉 강도의 경우 1995년 12월부터 1996년 8월까지의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건수가 6.3%로 감소하였는데 경기침체와 실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1996년 12월부터 1997년 8월까지의 9개월간과 IMF체제 이후 9개월간은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그 발생건수가 각각 25% 및 22.6%씩 급증하였다. 절도죄의 경우에도 양기간 동안 각각 18.5%와 17.2%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횡령죄의 발생건수도 1995년 12월부터 1996년 8월까지의 9개월 동안은 5.1%의 증가하다고, 1996년 12월부터 1997년 8월까지의 9개월 동안은 오히려 2.1% 감소하였다. 그러나 IMF체제 이후 9개월간은 전

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26.1%나 급증하였다. 배임죄의 발생건수도 1995년 12월부터 1996년 8월까지의 9개월 동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7.4% 증가하였고, 1996년 12월부터 1997년 8월까지의 9개월 동안은 오히려 4.2%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다가, IMF체제가 본격화된 이후 9개월 동안에는 24.2%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수표범죄의 경우에는 이전 연도의 9개월 동안은 계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오다가 IMF체제가 시작된 이후에는 24.5%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사기범죄의 경우도 IMF체제 이후 9개월간 전년도에 비해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IMF체제 이후 급증한 범죄 중에서 부정수표범죄의 경우 실업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경기침체에 의한 기업의 도산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강도, 절도, 횡령, 배임죄 등은 경기침체와 아울러 실업 내지는 실업의 위험성이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 경우 이러한 범죄들은 이욕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생계를 목적으로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많다.

다음 절에서는 IMF체제가 시작된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주요범죄들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장래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에 기초를 삼고자 한다.

제 7 절 주요범죄자 범행시 연령분포현황

1. 강도범죄자 연령분포현황

[표 21] 강도 범죄자 범행시 연령분포대별 현황

연령별 년도별	계	14세 미만	14~ 20세	21~ 30세	31~ 40세	41~ 50세	51~ 60세	60세 이상	미상
'97.12월 ~'98. 8월 (9개월)	6,167 (100)	9 (0.1)	3,366 (54.6)	1,906 (31.0)	660 (10.7)	162 (2.6)	44 (0.7)	7 (0.1)	13 (0.2)
'97. 3월 ~11월 (9개월)	4,878 (100)	9 (0.2)	2,811 (57.6)	1,408 (28.9)	471 (9.6)	130 (2.7)	31 (0.6)	8 (0.1)	10 (0.2)
'94.12월 ~'95. 8월 (9개월)	4,193 (100)	16 (0.4)	2,577 (61.5)	1,100 (26.2)	373 (8.9)	92 (2.2)	26 (0.6)	3 (0.07)	6 (0.1)
'96.12월 ~'98. 8월 (9개월)	3,755 (100)	6 (0.16)	2,125 (56.6)	1,159 (30.8)	363 (9.7)	82 (2.2)	15 (0.4)	2 (0.05)	3 (0.08)
'95.12월 ~'96. 8월 (9개월)	4,768 (100)	12 (0.2)	2,789 (58.5)	1,393 (29.2)	428 (9.0)	105 (2.2)	23 (0.5)	13 (0.3)	5 (0.1)

[표 21]은 IMF체제 전후 9개월 동안과 전 3개년도의 IMF체제와 같은 기간 동안의 강도범죄자의 연령을 비교한 것이다.

IMF체제 이후에 발생한 강도범죄자의 연령을 보면, 14세에서 20세까지가 5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1세부터 30세까지가 31.0%로서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이전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런데 IMF체제 이후에는 강도범죄자의 연령이 약간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즉, 1994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 1995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 1996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 및 IMF체제 이전 9개월 동안 강도죄를 범한 자 중 14세에서 20세 사이의 범죄자의 비율은 각각 61.5%, 56.6%, 58.5% 및 57.6%였으나 IMF체제 이후 9개월 동안 이들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4.6%로 낮아졌다. 반면에 1994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 1995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 1996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 및 IMF체제 이전 9개월 동안 강도죄를 범한 자 중 21세에서 30세 사이의 범죄자의 비율은 각각 26.2%, 30.8%, 29.2% 및 28.9%였으나 IMF체제 이후 9개월 동안 이들 연령대의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1.0%로 높아졌다. 또한 1994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 1995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 1996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 및 IMF체제 이전 9개월 동안 강도죄를 범한 자 중 31세에서 40세 사이의 범죄자의 비율은 각각 8.9%, 9.7%, 9.0% 및 9.6%였으나 IMF체제 이후 9개월 동안 이들 연령대의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0.7%로 높아졌다. 강도범죄자 중 41세에서 50세의 연령이 차지하는 비율도 IMF체제 전후 9개월 동안은 각각 2.7% 및 2.6%로서 그 이전의 2.2% 보다 조금씩 높아졌다.

이와 같이 IMF체제 이후 강도범죄자의 연령비율이 높아진 것은 - 위와 같은 통계결과가 반드시 유의미한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 강도범죄에서도 생계형범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왜냐하면 저연령층의 강도범죄자들은 주로 용돈이나 유희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범하는데 비해, 높은 연령층의 강도범죄자의 경우 유희비마련 보다는 생계비마련을 위해 범행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2. 절도범죄자 연령분포현황

[표 22]는 IMF체제 전후 9개월 간과 전 3개년도의 IMF체제와 같은 기간 동안의 절도범죄자의 연령을 비교한 것이다.

IMF체제 이후에 발생한 절도범죄자의 연령을 보면, 14세에서 20세까지가 58.0%로

은 각각 20.5%, 18.6%, 16.7% 및 16.4% 였고, IMF체제 이후 9개월 동안 이들 연령대의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8.3%로 이전과 그 비율이 비슷하다. 그러나 1994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 1995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 1996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 및 IMF체제 이전 9개월 동안 강도죄를 범한 자 중 31세에서 40세 사이의 범죄자의 비율은 각각 12.6%, 12.2%, 11.4% 및 11.4% 였으나 IMF체제 이후 9개월 동안 이들 연령대의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3.0%로 높아졌다. 절도범죄자 중 41세에서 50세의 연령이 차지하는 비율도 IMF체제 이후 9개월 동안은 6.5%로서 그 이전의 5.1%에서 5.5% 보다 약 1% 정도나 높아졌다. 51세에서 60세의 범죄자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그 이전에 비해 약간 높아졌음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IMF체제 이후 절도범죄자의 30대 이후의 연령비율이 높아진 것은 - 반드시 유의미한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 절도범죄에서도 생계형범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저연령층의 절도범죄자들 역시 주로 용돈이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범하는데 비해, 높은 연령층의 절도범죄자의 경우 유흥비 마련 보다는 생계비마련을 위해 범행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3. 폭력범죄자의 연령분포 현황

[표 23] 폭력 범죄자 범행시 연령분포대별 현황

연령별 년도별	계	14세 미만	14~ 20세	21~ 30세	31~ 40세	41~ 50세	51~ 60세	60세 이상	미상
'97.12월 ~'98. 8월 (9개월)	270,140 (100)	223 (0.08)	42,411 (15.7)	72,905 (27.0)	84,156 (31.1)	49,486 (18.3)	16,281 (6.0)	4,318 (1.6)	360 (0.13)
'97. 3월 ~11월 (9개월)	269,748 (100)	298 (0.1)	51,059 (18.9)	74,056 (27.5)	80,955 (30.0)	44,163 (16.4)	14,901 (5.5)	4,014 (1.5)	302 (0.1)
'94.12월 ~'95. 8월 (9개월)	236,355 (100)	276 (0.1)	36,312 (15.3)	76,108 (32.2)	74,874 (31.7)	32,852 (13.9)	12,660 (5.4)	3,075 (1.3)	198 (0.08)
'96.12월 ~'98. 8월 (9개월)	248,238 (31.5)	(100) 37,425	329 (15.1)	(0.1) 13,325	40,980 (5.4)	(16.5) 3,360	74,287 (1.3)	(30.0) 236	78,296 (0.1)
'95.12월 ~'96. 8월 (9개월)	254,915 (30.5)	(100) 40,887	285 (16.0)	(0.1) 13,843	46,577 (5.4)	(18.3) 3,611	71,618 (1.4)	(28.1) 267	77,827 (0.1)

[표 23]는 IMF체제 이후 전후 9개월 간과 전 3개년도의 IMF체제와 같은 기간 동안의 폭력범죄자의 연령을 비교한 것이다.

IMF체제 이후에 발생한 폭력범죄자의 연령을 보면, 31세에서 40세까지가 3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1세부터 30세까지가 27.0%로서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41세에서 50세 사이가 18.3%로 세 번째 순위이다. 이것은 이전의 기간들과 별 차이가 없다.

[표 23]에 의하면 IMF체제 이후 폭력범죄자 중 41세 이상자의 비율이 높아진 것이 눈에 띈다. 즉, 1994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 1995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 1996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 및 IMF체제 이전 9개월 동안 폭력범죄를 범한 자 중 41세에서 50세 사이의 범죄자의 비율은 각각 13.9%, 15.1%, 16.0% 및 16.4%였으나 IMF체제 이후 9개월 동안 이들 연령층의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8.3%로 이전 보다 높아졌다. 한편 1994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 1995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 1996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 및 IMF체제 이전 9개월 동안 절도범죄를 범한 자 중 51세에서 60세 사이의 범죄자의 비율은 각각 5.4%, 5.4%, 5.4% 및 5.5%였으나, IMF체제 이후 9개월 동안 이들 연령대의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0%로 이전 보다 높아졌다. 60세 이상의 범죄자의 비율도 IMF체제 전후 9개월 동안은 각각 1.5% 및 1.6%로서 그 이전의 1.3% 내지 1.4%에 비해 조금씩 높아졌다. 이에 비해 14세에서 20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전에 비해 약간 낮아졌다.

이와 같이 IMF체제 이후 폭력범죄자 중 40대 이후의 연령비율이 높아진 것은 이들이 경제위기와 실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계층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4. 사기범죄자 연령분포현황

[표 24]는 IMF체제 이후 전후 9개월 간과 전 3개년도의 IMF체제와 같은 기간 동안의 사기범죄자의 연령을 비교한 것이다.

[표 24]에 의하면, IMF체제 이후 9개월 동안의 사기범죄자의 경우 31세에서 40세까지의 연령의 비율이 38.6%, 41세에서 50세까지의 비율이 27.6%, 21세에서 30세까지의 비율이 18.9%의 순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 즉 IMF전과 후의 사기범죄연령 분포대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원래 젊은 계층은 폭력범죄를, 장년계층은 사기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경향이 있고, 경제위기와 실업으로 인해 젊은 계층 보다는 장년계층의 타격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표 24] 사기범죄자 범행시 연령분포대별 현황

연령별 년도별	계	14세 미만	14~ 20세	21~ 30세	31~ 40세	41~ 50세	51~ 60세	60세 이상	미상
'97.12월 ~'98. 8월 (9개월)	151,228 (100)	36 (0.02)	2,513 (1.7)	28,662 (18.9)	58,379 (38.6)	41,770 (27.6)	15,445 (10.2)	4,158 (2.7)	265 (0.2)
'97. 3월 ~11월 (9개월)	125,626 (100)	35 (0.02)	1,937 (1.5)	24,432 (19.4)	49,627 (39.5)	33,578 (26.7)	12,482 (9.9)	3,342 (2.7)	193 (0.15)
'94.12월 ~'95. 8월 (9개월)	96,629 (100)	55 (0.05)	1,226 (1.3)	21,099 (21.8)	39,693 (41.1)	22,899 (23.7)	9,197 (9.5)	2,379 (2.5)	81 (0.08)
'95.12월 ~'96. 8월 (9개월)	120,874 (100)	68 (0.05)	1,514 (1.3)	25,782 (21.3)	49,166 (40.7)	29,824 (24.7)	11,546 (9.5)	2,852 (2.3)	122 (0.1)
'96.12월 ~'97. 8월 (9개월)	125,275 (100)	38 (0.03)	1,763 (1.4)	24,136 (19.3)	49,388 (39.4)	33,540 (26.8)	12,816 (10.2)	3,375 (2.7)	219 (0.1)

5. 횡령범죄자의 연령분포현황

[표 25]는 IMF체제 이후 전후 9개월 간과 전 3개년도의 IMF체제와 같은 기간 동안의 횡령범죄자의 연령을 비교한 것이다.

[표 25]에 의해 IMF체제 이후에 발생한 횡령범죄자의 연령을 보면, 31세에서 40세까지가 4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41세부터 50세까지가 25.7%로서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1세에서 30세 사이가 18.2%로 세 번째 순위이다. 이러한 연령순서는 이전의 기간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IMF체제 이후에는 횡령범죄자의 연령도 약간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즉, 1994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 1995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 1996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 및 IMF체제 이전 9개월 동안 횡령죄를 범한 자 중 21세에서 30세 사이의 범죄자의 비율은 각각 20.5%, 21.3%, 19.4% 및 19.9%였으나 IMF체제 이후 9개월 동안 이들 연령층의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8.2%로 이전 보다 약간 낮아졌다. 한편 1994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 1995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 1996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 및 IMF체제 이전 9개월 동안 횡령죄를 범한 자 중 41세에서 50세 사이의 범죄자의 비율

은 각각 22.4%, 24.7%, 24.4% 및 24.5%였으나, IMF체제 이후 9개월 동안 이들 연령대의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5.7%로 이전 보다 그 비율이 약간 높아졌다. 이에 비해 14에서 20세 사이의 비율은 이전에 비해 약간 낮아졌다.

이와 같이 IMF체제 이후 횡령범죄자의 41세에서 50세 사이의 연령비율이 높아진 것은 이들 계층이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 및 실업의 위험성을 가장 민감하게 받고 있는 계층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표 25] 횡령범죄자 범행시 연령분포대별 현황

연령별 년도별	계	14세 미만	14~ 20세	21~ 30세	31~ 40세	41~ 50세	51~ 60세	60세 이상	미상
'97.12월 ~'98. 8월 (9개월)	19,456 (100)	5 (0.02)	632 (3.2)	3,538 (18.2)	7,775 (40.0)	5,002 (25.7)	1,870 (9.6)	614 (3.2)	20 (0.1)
'97. 3월 ~11월 (9개월)	16,978 (100)	11 (0.06)	815 (4.8)	3,385 (19.9)	6,513 (38.3)	4,156 (24.5)	1,557 (9.2)	512 (3.0)	29 (0.2)
'94.12월 ~'95. 8월 (9개월)	15,855 (100)	13 (0.08)	732 (4.6)	3,256 (20.5)	6,337 (39.9)	3,556 (22.4)	1,444 (9.1)	504 (3.2)	13 (0.08)
'96.12월 ~'98. 8월 (9개월)	120,874 (100)	68 (0.05)	1,514 (1.2)	25,782 (21.3)	49,166 (40.7)	29,824 (24.7)	11,546 (9.5)	2,852 (2.4)	122 (0.1)
'95.12월 ~'96. 8월 (9개월)	16,544 (100)	13 (0.08)	705 (4.3)	3,212 (19.4)	6,426 (38.8)	4,308 (24.4)	1,597 (9.7)	531 (3.2)	22 (0.1)

6. 배임범죄자의 연령분포현황

[표 26] 배임범죄자 범행시 연령분포대별 현황

연령별 년도별	계	14세 미만	14~ 20세	21~ 30세	31~ 40세	41~ 50세	51~ 60세	60세 이상	미상
'97.12월 ~'98. 8월 (9개월)	4,632 (100)	1 (0.02)	5 (0.1)	341 (7.4)	1,526 (32.9)	1,562 (33.7)	856 (18.5)	333 (7.2)	8 (0.2)
'97. 3월 ~11월 (9개월)	4,001 (100)	·	11 (0.3)	318 (7.9)	1,229 (30.7)	1,347 (33.7)	778 (19.4)	310 (7.7)	8 (0.2)
'94.12월 ~'95. 8월 (9개월)	3,580 (100)	1 (0.03)	8 (0.2)	279 (7.8)	1,204 (33.6)	1,123 (31.4)	717 (20.0)	246 (6.9)	2 (0.05)
'96.12월 ~'98. 8월 (9개월)	16,851 (100)	16 (0.1)	672 (4.0)	3,328 (19.7)	6,848 (40.6)	3,901 (23.1)	1,574 (9.3)	500 (3.0)	2 (0.01)
'95.12월 ~'96. 8월 (9개월)	3,847 (100)		8 (0.2)	289 (7.5)	1,179 (30.6)	1,325 (34.4)	748 (19.4)	289 (7.5)	9 (0.2)

[표 26]은 IMF체제 전후 9개월 간과 전 3개년도의 IMF체제와 같은 기간 동안의 배임범죄자의 연령을 비교한 것이다.

[표 26]에 의하면, IMF체제 이후에 발생한 배임범죄자의 연령은 41세에서 50세까지가 3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31세부터 40세까지가 32.9%로서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51세에서 60세 사이가 18.5%로 세 번째 순위이다. 이러한 순위는 이전의 기간들과 마찬가지로이다. 배임범죄의 성격상 원래 중장년층에서 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위기나 실업의 영향으로 범죄연령층의 비율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7. 부정수표 범죄자 연령분포현황

[표 27] 부정수표 범죄자 범행시 연령분포대별 현황

연령별 년도별	계	14세	14~	21~	31~	41~	51~	60세	미상
		미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이상	
'97.12월 ~'98. 8월 (9개월)	47,801 (100)	12 (0.02)	25 (0.05)	1,661 (3.4)	19,241 (40.2)	18,599 (38.9)	6,554 (13.7)	1616 (3.4)	93 (0.2)
'97. 3월 ~11월 (9개월)	34,331 (100)	23 (0.06)	16 (0.04)	1,555 (4.5)	14,496 (42.2)	12,863 (37.5)	4,341 (12.6)	978 (2.8)	59 (0.2)
'94.12월 ~'95. 8월 (9개월)	40,728 (100)	16 (0.04)	13 (0.03)	3,025 (7.4)	19,822 (48.6)	12,440 (30.5)	4,470 (11.0)	908 (2.2)	34 (0.08)
'96.12월 ~'98. 8월 (9개월)	3,904 (100)	1 (0.02)	10 (0.1)	301 (7.7)	1,225 (31.4)	1,273 (32.6)	791 (20.3)	296 (7.6)	7 (0.2)
'95.12월 ~'96. 8월 (9개월)	32,814 (100)	19 (0.05)	20 (0.06)	1,539 (4.7)	14,169 (43.2)	11,958 (36.4)	4,131 (12.6)	926 (2.8)	52 (0.2)

[표 27]은 IMF체제 전후 9개월 간과 전 3개년도의 IMF체제와 같은 기간 동안의 부정수표범죄자의 연령을 비교한 것이다.

[표 27]에 의하면, IMF체제 이후에 발생한 부정수표범죄자의 연령은 31세에서 40세까지가 4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41세부터 50세까지가 38.9%로서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51세에서 60세 사이가 13.7%로 세 번째 순위이다. 이러한 순위는 이전의 기간들과 마찬가지로이다.

21세에서 30세까지의 비율이 이전의 4.5%에서 7.7%까지에서 3.4%까지로 줄어들었지만, 이것은 이들 연령층의 범죄자의 총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31세 이상의 연

령층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수표범죄는 경제위기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범죄인데, 수표를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이 대부분 30대 이상이고, 그 이하의 연령층이 사용하는 비율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수표범죄는 그 성격상 원래 중장년층에서 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계층이 경제위기나 실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이 [표 27]에도 나타나고 있다.

제 8 절 주요범죄자 범행시 전과별현황

1. 강도피의자 전과별현황

[표 28] 강도 피의자 범행시 전과별 현황

구 분		년도별	97.12월~98. 8월	97. 3월~11월	94.12월~95. 8월	95.12월~96. 8월	96.12월~97. 8월
			(9개월)	(9개월)	(9개월)	(9개월)	(9개월)
강 도	소 계		6,167 (100)	4,878 (100)	4,193 (100)	3,755 (100)	4,768 (100)
	전과무		2,738 (44.4)	2,310 (47.3)	2,378 (56.7)	1,830 (48.7)	2,273 (47.7)
	1~2범		1,785 (28.9)	1,330 (27.3)	1,066 (25.4)	1,025 (27.3)	1,315 (27.6)
	3~4범		843 (13.7)	610 (12.5)	385 (9.2)	444 (11.8)	593 (12.4)
	5범이상		801 (13.0)	628 (12.9)	364 (8.7)	456 (12.1)	587 (12.3)

[표 28]은 IMF체제 전후 9개월 동안과 전 3개년도의 IMF체제와 같은 기간 동안의 강도피의자의 전과별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IMF체제 이후에 발생된 강도피의자의 전과별 현황은 IMF이전과 비교하여 전과기록이 없는 경우가 47.3%에서 44.4%로 감소되었으나, 전과 1-2범의 경우 27.3%에서 28.9%로 증가되었으며, 전과 3-4범의 경우 12.5%에서 13.7%로 증가되었고, 전과 5범이상인 경우는 12.9%에서 13.0%로 증가되었다.

초범인 경우 1997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44.4%)을 기준으로 동기간 3년 즉 1994년도 동기간(56.7%), 1995년도 동기간(48.7%), 1996년도 동기간(47.7%)을 비교하면 전과

가 없는 비율이 년도별로 순차적으로 감소되는 비율을 보이다가 IMF이후 9개월 동안에는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과 1-2범인 경우 1997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28.9%)을 기준으로 동기간 3년 즉 1994년도 동기간(25.4%), 1995년도 동기간(27.3%), 1996년도 동기간(27.6%)을 비교하면 점점 증가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과 3-4범인 경우 1997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13.7%)을 기준으로 동기간 3년 즉 1994년도 동기간(9.2%), 1995년도 동기간(11.8%), 1996년도 동기간(12.4%)을 비교하면 점점 증가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과 5범 이상인 경우 1997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13.0%)을 기준으로 동기간 3년 즉 1994년도 동기간(8.7%), 1995년도 동기간(12.1%), 1996년도 동기간(12.3%)을 비교하면 점점 증가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2. 절도피의자 전과별현황

[표 29] 절도 피의자 범행시 전과별 현황

구 분		년도별	97.12월~98. 8월	97. 3월~11월	94.12월~95. 8월	95.12월~96. 8월	96.12월~97. 8월
			(9개월)	(9개월)	(9개월)	(9개월)	(9개월)
절 도	소 계		51,84 (100)	45,444 (100)	38,614 (100)	37,514 (100)	41,2684 (100)
	전과무		28,297 (54.6)	27,053 (59.5)	24,888 (64.5)	22,849 (60.9)	24,889 (60.3)
	1~2범		12,987 (25.1)	10,565 (23.2)	8,311 (21.5)	8,694 (23.2)	9,326 (22.6)
	3~4범		5,186 (9.9)	3,911 (8.6)	2,762 (7.2)	3,085 (8.2)	3,525 (8.5)
	5범이상		5,374 (10.4)	3,915 (8.6)	2,653 (6.8)	2,886 (7.7)	3,528 (8.5)

[표29]는 IMF체제 전후 9개월 동안과 전3개년도의 IMF체제와 같은 기간 동안의 절도피의자의 연령을 비교한 것이다.

절도피의자의 경우 초범의 비율이 높다. IMF전후 초범의 경우 범죄발생량은 27,053건에서 28,297건으로 증가되었으나 전체 절도범죄에서 초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59.5%

에서 54.6%로 감소되었다. 전과1-2범의 경우 23.2%에서 25.1%로, 3-4범의 경우 8.6%에서 9.9%로 5범 이상인 경우 8.6%에서10.4%로 증가되었다.

동기간 비교에서는 1994년 동기간에 초범의 경우 64.5%, 1995년 동기간은 60.9%, 1996년 동기간은 60.3%이나 1997년 동기간은 54.9%로 감소되었으나 절도범죄 발생량은 IMF이후 증가되었다.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는 전과 1-2범의 경우 21.5%, 23.2%, 22.6%, 25.1%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과 3-4범의 경우 7.2%, 8.2%, 8.5%, 9.9%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과 5범 이상의 경우 6.8%, 7.7%, 8.5%, 10.4%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폭력피의자 전과별 현황

[표 30] 폭력 피의자 범행시 전과별 현황

구 분		년도별	97.12월~98. 8월	97. 3월~11월	94.12월~95. 8월	95.12월~96. 8월	96.12월~97. 8월
		(9개월)	(9개월)	(9개월)	(9개월)	(9개월)	
폭 력	소 계	270,140 (100)	269,748 (100)	236,355 (100)	248,238 (100)	254,915 (100)	
	전과무	117,467 (43.5)	127,422 (47.2)	123,973 (52.5)	122,266 (49.2)	122,081 (47.9)	
	1~2범	74,960 (27.7)	72,182 (26.8)	63,047 (26.7)	67,754 (27.3)	68,167 (26.7)	
	3~4범	34,860 (12.9)	32,153 (11.9)	24,402 (10.3)	28,032 (11.3)	29,959 (11.8)	
	5범이상	42,853 (15.9)	37,991 (14.1)	24,933 (10.5)	30,186 (12.2)	34,708 (13.6)	

[표 30]은 IMF체제 전후 9개월 동안과 전 3개년도의 IMF체제와 동일한 기간동안의 폭력피의자의 전과를 비교한 것이다. 초범의 경우 IMF전후 9개월 동안에는 47.2%에서 43.5%로 감소되었으나, 1-2범의 경우 26.8%에서 27.7%로 증가되었으며, 3-4범의 경우도 11.9%에서 12.9%로 증가되었으며, 5범 이상인 경우도 14.1%에서 15.9%로 증가되었다. 따라서 IMF전후를 비교하면 초범의 경우 전체 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는 오히려 증가되어 IMF로 인한 실업이나 경제상황의 악화로 전과기록이 있는 자가 폭력에 가담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동기간 비교에서도 IMF이전에는 초범의 경우 52.5%(1994년 동기간), 49.2%(1995년 동기간), 47.9%(1996년 동기간), 43.5%(1997년 동기간)으로 감소되었다. 전과 1-2범의 경우 26.7%(1994년 동기간), 27.3%(1995년 동기간), 26.7%(1996년 동기간), 27.7%(1997년 동기간)로 증가되었다. 전과 5범 이상인 경우에는 10.5%(1994년 동기간), 12.2%(1995년 동기간), 13.6%(1996년 동기간), 15.9%(1997년 동기간)로 계속 증가하였다.

4. 사기피의자 전과현황

[표 31] 사기 피의자 범행시 전과별 현황

구 분		년도별		97. 3월~11월	94.12월~95. 8월	95.12월~96. 8월	96.12월~97. 8월
		97.12월~98. 8월	(9개월)	(9개월)	(9개월)	(9개월)	(9개월)
사	소 계	151,228 (100)	125,626 (100)	96,629 (100)	120,874 (100)	125,275 (100)	
	전과무	54,431 (36.0)	46,348 (36.9)	41,851 (43.3)	49,319 (40.8)	47,379 (37.8)	
	1~2범	44,597 (29.5)	36,267 (28.9)	26,916 (27.9)	34,742 (28.7)	36,047 (28.8)	
기	3~4범	23,300 (15.4)	19,477 (15.5)	12,933 (13.4)	17,259 (14.3)	19,025 (15.2)	
	5범이상	28,900 (19.1)	23,534 (18.7)	14,929 (15.4)	19,554 (16.2)	22,824 (18.2)	

[표 31]은 IMF체제 전후 9개월 동안과 전 3개년도의 IMF체제와 동일한 기간동안의 사기피의자의 전과를 비교한 것이다. 초범의 경우 IMF전 36.9%에서 IMF 이후 36.0%로 감소되었으나 전체 범죄량은 증가되었다. 전과 1-2범의 경우 28.9%에서 29.5%로 증가되었으며, 전과 3-4범인 경우 15.6%에서 16.2%로 증가되었으며, 전과 5범 이상인 경우 15.8%에서 17.1%로 증가되었다.

동기간(12월에서 다음해 8월) 비교에서 초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사기범죄와 비교하여 1994년도 43.3%, 1995년도 40.8%, 1996년도 37.8%이나 IMF이후 동기간은 전체 사기범죄 발생량은 증대되었으나 초범의 비율은 36.0%로 오히려 감소되었다. 전과 1-2범의 경우 1994년도 27.9%, 1995년도 28.7%, 1996년도 28.8%, IMF이후 동기간 29.5%

로 증가되었다. 전과 3-4범의 경우 1994년도 13.4%, 1995년도 14.3%, 1996년도 15.2%, IMF이후 동기간 15.4%로 증가되었다. 전과 5범 이상의 경우 1994년도 15.4%, 1995년도 16.2%, 1996년도 18.2%, IMF이후 동기간 19.1%로 증가되었다.

5. 횡령피의자 전과현황

[표 32] 횡령 피의자 범행시 전과별 현황

구 분		년도별	97.12월~98. 8월	97. 3월~11월	94.12월~95. 8월	95.12월~96. 8월	96.12월~97. 8월
		(9개월)	(9개월)	(9개월)	(9개월)	(9개월)	
횡 령	소 계	19,456 (100)	16,978 (100)	15,855 (100)	16,851 (100)	16,544 (100)	
	전과무	6,934 (35.6)	6,451 (38.0)	6,972 (44.0)	6,775 (40.2)	6,369 (38.5)	
	1~2범	6,046 (31.1)	5,205 (30.6)	4,650 (29.3)	5,143 (30.5)	5,037 (30.4)	
	3~4범	3,143 (16.2)	2,646 (15.6)	2,095 (13.2)	2,455 (14.6)	2,502 (15.1)	
	5범이상	3,333 (17.1)	2,676 (15.8)	2,138 (13.5)	2,478 (14.7)	2,636 (16.0)	

[표 32]는 IMF체제 전후 9개월 동안과 전 3개년도의 IMF체제와 같은 기간 동안의 횡령피의자의 전과별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IMF체제 이후에 발생된 횡령피의자의 전과별 현황은 IMF이전과 비교하여 전과기록이 없는 경우가 전체횡령범죄 중에서 38.0%에서 35.6%로 감소되었으나 범죄발생량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과1-2범의 경우 30.6%에서 31.1%로 증가되었으며, 전과3-4범의 경우 15.6%에서 16.2%로 증대되었고, 전과5범 이상인 경우는 15.8%에서 17.1%로 증가되었다.

초범인 경우 1997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35.6%)을 기준으로 동기간 3년 즉 1994년도 동기간(44.0%), 1995년도 동기간(40.2%), 1996년도 동기간(38.5%)을 비교하면 전과가 없는 비율이 년도별로 순차적으로 감소되었다. 전과 1-2범인 경우 1997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31.1%)을 기준으로 동기간 3년 즉 1994년도 동기간(29.3%), 1995년도 동기간(30.5%), 1996년도 동기간(30.4%)을 비교하면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전과 3-4범인 경우 1997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16.2%)을 기준으로 동기간 3년 즉 1994년도 동기간(13.2%), 1995년도 동기간(14.6%), 1996년도 동기간(15.1%)을 비교하면 점점 증가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과 5범 이상인 경우 1997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17.1%)을 기준으로 동기간 3년 즉 1994년도 동기간(13.5%), 1995년도 동기간(14.7%), 1996년도 동기간(16.0%)을 비교하면 점점 증가되는 비율을 보이다가 IMF이후 9개월 동안에는 약간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량피의자의 경우 IMF체제 이후 전과기록이 있는 자의 범행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6. 배임피의자의 전과현황

[표 33] 배임 피의자 범행시 전과별 현황

구 분		년도별				
		97.12월~98. 8월 (9개월)	97. 3월~11월 (9개월)	94.12월~95. 8월 (9개월)	95.12월~96. 8월 (9개월)	96.12월~97. 8월 (9개월)
배	소 계	4,632 (100)	4,001 (100)	3,580 (100)	3,904 (100)	3,847 (100)
	전과무	1,957 (42.2)	1,776 (44.4)	1,777 (49.6)	1,903 (48.7)	1,742 (45.3)
	1~2범	1,454 (31.4)	1,171 (29.3)	969 (27.1)	1,096 (28.1)	1,158 (30.1)
임	3~4범	605 (13.1)	514 (12.8)	414 (11.6)	455 (11.6)	442 (11.5)
	5범이상	616 (13.3)	540 (13.5)	420 (11.7)	450 (11.5)	505 (13.1)

[표 33]은 IMF체제 전후 9개월 동안과 전 3개년도의 IMF체제와 같은 기간 동안의 배임피의자의 전과별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IMF체제 이후에 발생된 배임피의자의 전과별 현황은 IMF이전과 비교하여 전과기록이 없는 경우가 44.4%에서 42.2%로 감소되었으나, 전과 1-2범의 경우 29.3%에서 31.4%로 증가되었으며, 전과 3-4범의 경우 12.8%에서 13.1%로 증가되었고, 전과 5범 이상인 경우는 13.5%에서 13.3%로 감소되었다.

초범인 경우 1997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42.2%)을 기준으로 동기간 3년 즉 1994년도 동기간(49.6%), 1995년도 동기간(48.7%), 1996년도 동기간(45.3%)을 비교하면 전과가 없는 비율이 년도별로 순차적으로 감소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과 1-2범인 경우 1997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31.4%)을 기준으로 동기간 3년 즉 1994년도 동기간(27.1%), 1995년도 동기간(28.1%), 1996년도 동기간(30.1%)을 비교하면 점점 증가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과 3-4범인 경우 1997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13.1%)을 기준으로 동기간 3년 즉 1994년도 동기간(11.6%), 1995년도 동기간(11.6%), 1996년도 동기간(11.5%)을 비교하면 점점 증가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과 5범이상인 경우 1997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13.3%)을 기준으로 동기간 3년 즉 1994년도 동기간(11.7%), 1995년도 동기간(11.5%), 1996년도 동기간(13.1%)을 비교하면 점점 증가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의자 전과현황

[표 3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의자 범행시 전과별 현황

구 분		년도별	97.12월~98. 8월	97. 3월~11월	94.12월~95. 8월	95.12월~96. 8월	96.12월~97. 8월
		(9개월)	(9개월)	(9개월)	(9개월)	(9개월)	
부 정 수 표	소 계	47,801 (100)	34,331 (100)	40,728 (100)	39,521 (100)	32,814 (100)	
	전과무	16,815 (35.2)	12,438 (36.2)	17,688 (43.4)	15,966 (40.4)	12,145 (37.0)	
	1~2범	16,295 (34.1)	11,557 (33.7)	12,715 (31.2)	12,726 (32.2)	10,963 (33.4)	
	3~4범	7,797 (16.3)	5,492 (16.0)	5,449 (13.4)	5,769 (14.6)	5,240 (16.0)	
	5범이상	6,894 (14.4)	4,844 (14.1)	4,876 (12.0)	5,060 (12.8)	4,466 (13.6)	

[표 34]는 IMF체제 전후 9개월 동안과 전 3개년도의 IMF체제와 같은 기간 동안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의자의 전과별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IMF체제 이후에 발생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의자의 전과별 현황은 IMF이전과 비

교하여 전과기록이 없는 경우가 36.2%에서 35.2%로 감소되었으나, 전과 1-2범의 경우 33.7%에서 34.1%로, 전과 3-4범의 경우 16.0%에서 16.3%로 전과 5범 이상인 경우는 14.1%에서 14.4%로 각각 증가되었다.

초범인 경우 1997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35.2%)을 기준으로 동기간 3년 즉 1994년도 동기간(43.4%), 1995년도 동기간(40.4%), 1996년도 동기간(37.0%)을 비교하면 전과가 없는 비율이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감소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과 1-2범인 경우 1997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34.1%)을 기준으로 동기간 3년 즉 1994년도 동기간(31.2%), 1995년도 동기간(32.2%), 1996년도 동기간(33.4%)을 비교하면 점점 증가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과 3-4범인 경우 1997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16.3%)을 기준으로 동기간 3년 즉 1994년도 동기간(13.4%), 1995년도 동기간(14.6%), 1996년도 동기간(16.0%)을 비교하면 점점 증가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과 5범 이상인 경우 1997년 12월 이후 9개월 동안(14.4%)을 기준으로 동기간 3년 즉 1994년도 동기간(12.0%), 1995년도 동기간(12.8%), 1996년도 동기간(13.6%)을 비교하면 점점 증가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제 9 절 주요피의자 범행시 생활환경별 현황

[표35-1][표35-2]에서 보듯이 강도피의자의 생활환경별 현황은 하류가 IMF전 72.7%에서 이후 75.2%로 증가되었으며, 중류의 경우 27%에서 24.2%로 감소되었으며, 상류의 경우 0.3%에서 0.6%로 증가되었다.

절도피의자의 생활환경별 현황은 하류가 IMF전 72.8%에서 이후 73.6%로 증가되었으며, 중류의 경우 26.5%에서 25.9%로 감소되었으며, 상류의 경우 0.7%에서 0.5%로 감소되었다.

폭력피의자의 생활환경별 현황은 하류가 IMF전 67.0%에서 이후 67.9%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중류의 경우 31.7%에서 30.7%로 감소되었으며, 상류의 경우 1.3%에서 1.2%로 감소되었다.

사기피의자의 생활환경별 현황은 하류가 IMF전 74.9%에서 이후 76.5%로 증가되었으며 중류의 경우 23.4%에서 22.2%로 감소되었으며, 상류의 경우 1.7%에서 1.3%로 감소되었다.

횡령피의자의 생활환경별 현황은 하류가 IMF전 70.9%에서 이후 71.5%로 증가되었으며 중류의 경우 27.0%에서 26.6%로 감소되었으며, 상류의 경우 2.1%에서 1.8%로 감소되었다.

배임피의자의 생활환경별 현황은 하류가 IMF전 60.2%에서 이후 64.7%로 증가되었으며 중류의 경우 34.7%에서 32.0%로 감소되었으며, 상류의 경우 5.1%에서 3.3%로 감소되었다.

부정수표피의자의 생활환경별 현황은 하류가 IMF전 70.0%에서 이후 72.7%로 증가되었으며 중류의 경우 27.6%에서 25.5%로 감소되었으며, 상류의 경우 2.4%에서 1.8%로 감소되었다.

동기간 비교에서도 대체로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IMF사태로 인하여 하류층의 범죄발생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상류층의 경우 강도의 경우 약간 증가되었으나, 절도, 폭력, 사기, 횡령, 배임, 부정수표범죄가 모두 감소되었다.

[표 35-1] 주요피의자 범행시 생활환경별 현황

구 분		년도별		97. 3월~11월	94.12월~95. 8월	95.12월~96. 8월	96.12월~97. 8월
		97.12월~98. 8월	(9개월)	(9개월)	(9개월)	(9개월)	(9개월)
총 계	소 계	551,268 (100)	501,006 (100)	435,954 (100)	470,657 (100)	479,431 (100)	
	하 류	393,588 (71.4)	349,806 (69.8)	310,367 (71.2)	329,697 (70.0)	333,057 (69.5)	
	중 류	150,882 (27.4)	143,708 (28.7)	117,800 (27.0)	133,647 (28.4)	138,956 (29.0)	
	상 류	6,798 (1.2)	7,492 (1.5)	7,787 (1.8)	7,313 (1.6)	7,418 (1.5)	
강 도	소 계	6,167 (100)	4,878 (100)	4,193 (100)	3,755 (100)	4,768 (100)	
	하 류	4,639 (75.2)	3,547 (72.7)	3,148 (75.1)	2,880 (76.7)	3,459 (72.5)	
	중 류	1,493 (24.2)	1,315 (27.0)	1,026 (24.5)	859 (22.9)	1,290 (27.1)	
	상 류	35 (0.6)	16 (0.3)	19 (0.4)	16 (0.4)	19 (0.4)	
절 도	소 계	51,844 (100)	45,444 (100)	38,614 (100)	37,514 (100)	41,268 (100)	
	하 류	38,149 (73.6)	33,077 (72.8)	29,122 (75.4)	27,638 (73.7)	30,236 (73.3)	
	중 류	13,409 (25.9)	12,064 (26.5)	9,190 (23.8)	9,559 (25.5)	10,735 (26.0)	
	상 류	286 (0.5)	303 (0.7)	302 (0.8)	317 (0.8)	297 (0.7)	

[표 35-2] 주요피의자 범행시 생활환경별 현황

구 분		년도별	97.12월~98. 8월	97. 3월~11월	94.12월~95. 8월	95.12월~96. 8월	96.12월~97. 8월
		(9개월)	(9개월)	(9개월)	(9개월)	(9개월)	
폭	소 계	270,140 (100)	269,748 (100)	236,355 (100)	248,238 (100)	254,915 (100)	
	하 류	183,394 (67.9)	180,612 (67.0)	165,381 (70.0)	168,645 (67.9)	170,405 (66.8)	
	중 류	83,594 (30.9)	85,467 (31.7)	67,344 (28.5)	76,122 (30.7)	80,974 (31.8)	
	상 류	3,152 (1.2)	3,669 (1.3)	3,630 (1.5)	3,471 (1.4)	3,536 (1.4)	
사	소 계	151,228 (100)	125,626 (100)	96,629 (100)	120,874 (100)	125,275 (100)	
	하 류	115,734 (76.5)	94,088 (74.9)	71,627 (74.1)	89,288 (73.9)	92,804 (74.1)	
	중 류	33,557 (22.2)	29,421 (23.4)	22,957 (23.8)	29,533 (24.4)	30,256 (24.1)	
	상 류	1,937 (1.3)	2,117 (1.7)	2,045 (2.1)	2,053 (1.7)	2,215 (1.8)	
기	소 계	19,456 (100)	16,978 (100)	15,855 (100)	16,851 (100)	16,544 (100)	
	하 류	13,922 (71.5)	12,039 (70.9)	11,351 (71.6)	11,815 (70.1)	11,614 (70.2)	
	중 류	5,179 (26.6)	4,565 (27.0)	4,131 (26.1)	4,695 (27.9)	4,571 (27.6)	
	상 류	355 (1.8)	374 (2.1)	373 (2.3)	341 (2.0)	359 (2.2)	
령	소 계	4,632 (100)	4,001 (100)	3,580 (100)	3,904 (100)	3,847 (100)	
	하 류	2,999 (64.7)	2,407 (60.2)	2,162 (60.4)	2,402 (61.5)	2,341 (60.8)	
	중 류	1,479 (32.0)	1,390 (34.7)	1,217 (34.0)	1,331 (24.1)	1,318 (34.3)	
	상 류	154 (3.3)	204 (5.1)	201 (5.6)	171 (4.4)	188 (4.9)	
배	소 계	47,801 (100)	34,331 (100)	40,728 (100)	39,521 (100)	32,814 (100)	
	하 류	34,751 (72.7)	24,036 (70.0)	27,576 (67.7)	27,029 (68.4)	22,198 (67.6)	
	중 류	12,171 (25.5)	9,486 (27.6)	11,935 (29.3)	11,548 (29.2)	9,812 (30.0)	
	상 류	879 (1.8)	809 (2.4)	1,217 (3.0)	944 (2.4)	804 (2.4)	

제 10 절 주요피의자 교육정도별 현황

1. 강도피의자 교육정도별 현황

[표 36] 강도피의자 교육정도별 현황

교육정도별 년도별	총계	불 취학	국졸 이하	중 학 교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 포함)				대 학 원	기타
				소계	재중	중퇴	졸업	소계	재중	중퇴	졸업	소계	재중	중퇴	졸업		
'97.12월~'98. 8월 (9개월)	6,167 (100)	32 (0.5)	409 (6.6)	1,653 (26.8)	206 (3.3)	807 (13.1)	640 (10.4)	3,359 (54.5)	1,010 (16.4)	974 (15.8)	1,375 (22.3)	466 (7.5)	258 (4.2)	69 (1.1)	139 (2.2)	5 (0.1)	243 (4.0)
'97. 3월~11월 (9개월)	4,878 (100)	27 (0.6)	272 (5.6)	1,343 (27.5)	210 (4.3)	609 (12.5)	524 (10.7)	2,747 (56.3)	820 (16.8)	777 (15.9)	1,150 (23.6)	347 (7.1)	192 (3.9)	54 (1.1)	101 (2.1)	5 (0.1)	137 (2.8)
'94.12월~'95. 8월 (9개월)	4,193 (100)	28 (0.7)	315 (7.5)	1,251 (29.8)	239 (5.7)	560 (13.3)	452 (10.8)	2,316 (55.2)	858 (20.5)	609 (14.5)	849 (20.2)	226 (5.4)	95 (2.3)	50 (1.2)	81 (1.9)	2 (0.1)	55 (1.3)
'95.12월~'96.8월 (9개월)	3,755 (100)	12 (0.3)	283 (7.5)	1,021 (27.2)	130 (3.5)	461 (12.3)	430 (11.4)	2,121 (56.5)	636 (17.0)	628 (16.7)	857 (22.8)	250 (6.7)	136 (3.6)	44 (1.2)	70 (1.9)	5 (0.1)	63 (1.7)
'96.12월~'97.8월 (9개월)	4,768 (100)	28 (0.6)	244 (5.1)	1,330 (27.9)	194 (4.1)	603 (12.6)	533 (11.2)	2,711 (56.8)	837 (17.5)	781 (16.4)	1,093 (22.9)	320 (6.7)	177 (3.7)	57 (1.2)	86 (1.8)	5 (0.1)	130 (2.7)

[표 36]은 IMF전후 9개월 동안과 전 3개년도의 IMF체제와 같은 기간동안의 강도피의자의 교육정도별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IMF체제 이후의 강도피의자의 교육정도별 현황은 국졸이하가 5.6%에서 6.6%로 증가되었으며, 중학교 교육의 경우 전체적으로 27.5%에서 26.8%로 감소되었으며, 고등학교 교육의 경우 56.3%에서 54.5%로 감소되었으나 대학교 교육의 경우 7.1%에서 7.5%로 증가되었다.

동기간 비교에서는 국졸이하의 경우 1994년 9개월 동안은 7.5%, 1995년 9개월 동안은 7.5%, 1996년 9개월 동안은 5.1%, IMF 이후 1997년 9개월 동안은 6.6%이다.

중학교 교육의 경우 1994년 9개월 동안은 29.8%, 1995년 9개월 동안은 27.2%, 1996년 9개월 동안은 27.9%, IMF 이후 1997년 9개월 동안은 26.8%이다.

고등학교 교육의 경우 1994년 9개월 동안은 55.2%, 1995년 9개월 동안은 56.5%,

1996년 9개월 동안은 27.9%, IMF 이후 1997년 9개월 동안은 54.5%이다.

대학교 교육의 경우 1994년 9개월 동안은 5.4%, 1995년 9개월 동안은 6.7%, 1996년 9개월 동안은 6.7%, IMF 이후 1997년 9개월 동안은 7.5%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IMF체제 이후 국졸이하와 대학교 교육이상이 약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절도피의자 교육정도별 현황

[표 37] 절도피의자 교육정도별 현황

교육정도별 년도별	총계	불 취학	국졸 이하	중 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 포함)				대 학 원	기 타
				소계	재중	중퇴	졸업	소계	재중	중퇴	졸업	소계	재중	중퇴	졸업		
'97.12월~'98. 8월 (9개월)	51,844 (100)	633 (1.2)	4,403 (8.5)	17,555 (33.9)	6,773 (13.1)	5,944 (11.5)	4,838 (9.3)	24,046 (46.4)	9,522 (18.4)	5,294 (10.2)	9,230 (17.8)	3,570 (6.9)	1,237 (2.4)	559 (1.1)	1,774 (3.4)	88 (0.1)	1,549 (3.0)
'97. 3월~11월 (9개월)	45,444 (100)	534 (1.2)	3,683 (8.1)	16,328 (36.0)	7,497 (16.5)	4,945 (11.0)	3,886 (8.5)	21,101 (46.4)	9,065 (19.9)	4,424 (9.7)	7,612 (16.8)	2,794 (6.1)	1,013 (2.2)	387 (0.8)	1,394 (3.1)	73 (0.2)	931 (2.0)
'94.12월~'95. 8월 (9개월)	38,614 (100)	560 (1.4)	3,890 (10.1)	13,661 (35.4)	6,016 (15.6)	3,891 (10.1)	3,754 (9.7)	17,426 (45.1)	6,908 (17.9)	3,223 (8.3)	7,295 (18.9)	2,473 (6.4)	730 (1.9)	371 (1.0)	1,372 (3.5)	74 (0.2)	530 (1.4)
'95.12월~'96.8월 (9개월)	37,514 (100)	473 (1.3)	3,423 (9.1)	13,382 (35.7)	5,738 (15.3)	4,260 (11.4)	3,384 (9.0)	17,141 (45.7)	7,047 (18.8)	3,493 (9.3)	6,601 (17.6)	2,337 (6.2)	734 (1.9)	337 (0.9)	1,266 (3.4)	68 (0.2)	690 (1.8)
'96.12월~'97.8월 (9개월)	41,268 (100)	441 (1.1)	3,303 (8.0)	15,114 (36.6)	7,117 (17.2)	4,450 (10.8)	3,547 (8.6)	18,974 (46.0)	8,089 (19.6)	3,861 (9.4)	7,024 (17.0)	2,521 (6.1)	888 (2.2)	335 (0.8)	1,298 (3.1)	70 (0.2)	845 (2.0)

[표 37]은 IMF전후 9개월 동안과 전 3개년도의 IMF체제와 같은 기간동안의 절도피의자의 교육정도별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IMF체제 이후의 절도피의자의 교육정도별 현황은 국졸이하가 8.1%에서 8.5%로 증가되었으며, 중학교 교육의 경우 전체적으로 36.0%에서 33.9%로 감소되었으며, 고등학교 교육의 경우 46.4%에서 46.4%로 동일하였으나 대학교 교육의 경우 6.1%에서 6.9%로 증가되었다.

동기간 비교에서는 국졸이하의 경우 1994년 9개월 동안은 10.1%, 1995년 9개월 동안은 9.1%, 1996년 9개월 동안은 8.0%, IMF 이후 1997년 9개월 동안은 8.5%이다.

중학교 교육의 경우 1994년 9개월 동안은 35.4%, 1995년 9개월 동안은 35.7%, 1996년 9개월 동안은 36.6%, IMF 이후 1997년 9개월 동안은 33.9%이다.

고등학교 교육의 경우 1994년 9개월 동안은 45.1%, 1995년 9개월 동안은 45.7%, 1996년 9개월 동안은 46.0%, IMF 이후 1997년 9개월 동안은 46.4%이다.

대학교 교육의 경우 1994년 9개월 동안은 6.4%, 1995년 9개월 동안은 6.2%, 1996년 9개월 동안은 6.1%, IMF 이후 1997년 9개월 동안은 6.9%이다.

결과적으로 IMF체제 이후 중학교 교육정도의 절도피의자가 감소되었으며 대학교 교육이상의 절도피의자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3. 절도피의자 교육정도별 현황

[표 38] 폭력피의자 교육정도별 현황

교육정도별 년도별	총계	불 취학	국졸 이하	중 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 포함)				대 학 원	기 타
				소계	재중	중퇴	졸업	소계	재중	중퇴	졸업	소계	재중	중퇴	졸업		
'97.12월~'98. 8월 (9개월)	270,140 (100)	5,155 (2.0)	34,719 (12.8)	51,417 (19.0)	3,960 (1.5)	12,836 (4.7)	34,621 (12.8)	128,704 (47.6)	12,908 (4.8)	18,406 (6.8)	97,390 (36.0)	39,879 (14.8)	10,648 (3.9)	5,078 (1.9)	24,153 (9.0)	1,321 (0.5)	8,945 (3.3)
'97. 3월~11월 (9개월)	269,748 (100)	5,018 (1.9)	33,168 (12.3)	54,455 (20.2)	6,664 (2.5)	12,944 (4.8)	34,847 (12.9)	131,938 (48.9)	17,407 (6.4)	18,770 (7.0)	95,761 (35.5)	36,486 (13.5)	8,982 (3.3)	4,584 (1.7)	22,920 (8.5)	1,331 (0.5)	7,352 (2.7)
'94.12월~'95. 8월 (9개월)	236,355 (100)	4,854 (2.0)	32,428 (13.7)	47,170 (19.9)	3,599 (1.5)	10,383 (4.4)	33,188 (14.0)	114,959 (48.6)	11,172 (4.7)	15,704 (6.6)	88,083 (37.3)	31,434 (13.2)	6,474 (2.7)	4,070 (1.7)	20,890 (8.8)	1,120 (0.5)	4,390 (1.9)
'95.12월~'96.8월 (9개월)	248,238 (100)	4,750 (1.9)	32,441 (13.1)	51,286 (20.7)	5,627 (2.3)	11,456 (4.6)	34,203 (13.8)	120,179 (48.4)	12,445 (5.0)	17,330 (7.0)	90,404 (36.4)	33,173 (13.3)	7,233 (2.9)	4,329 (1.7)	21,611 (8.7)	1,180 (0.5)	5,229 (2.1)
'96.12월~'97.8월 (9개월)	254,915 (100)	4,597 (1.8)	31,448 (12.3)	51,627 (20.2)	6,262 (2.4)	12,071 (4.7)	33,294 (13.1)	124,857 (49.0)	15,896 (6.2)	17,373 (6.8)	91,588 (36.0)	34,454 (13.5)	7,998 (3.1)	4,364 (1.7)	22,092 (8.7)	1,315 (0.5)	6,617 (2.6)

[표 38]은 IMF전후 9개월 동안과 전 3개년도의 IMF체제와 같은 기간동안의 폭력피의자의 교육정도별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IMF체제 이후의 폭력피의자의 교육정도별 현황은 국졸이하가 12.3%에서 12.8%로 증가되었으며, 중학교 교육의 경우 전체적으로 20.2%에서 19.0%로 감소되었으며, 고등학교 교육의 경우 48.9%에서 47.6%로 감소하였으나 대학교 교육의 경우 13.5%에서

14.8%로 증가되었다.

동기간 비교에서는 국졸이하의 경우 1994년 9개월 동안은 13.7%, 1995년 9개월 동안은 13.1%, 1996년 9개월 동안은 12.3%, IMF 이후 1997년 9개월 동안은 12.8%이다.

중학교 교육의 경우 1994년 9개월 동안은 19.9%, 1995년 9개월 동안은 20.7%, 1996년 9개월 동안은 20.2%, IMF 이후 1997년 9개월 동안은 19.0%이다.

고등학교 교육의 경우 1994년 9개월 동안은 48.6%, 1995년 9개월 동안은 48.4%, 1996년 9개월 동안은 49.0%, IMF 이후 1997년 9개월 동안은 47.6%이다.

대학교 교육의 경우 1994년 9개월 동안은 13.2%, 1995년 9개월 동안은 13.3%, 1996년 9개월 동안은 13.5%, IMF 이후 1997년 9개월 동안은 14.8%이다.

결과적으로 IMF체제 이후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정도의 폭력피의자가 감소되었으며 대학교 교육의 폭력피의자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4. 사기피의자 교육정도별 현황

[표 39] 사기피의자 교육정도별 현황

교육정도별 년도별	총계	불 취학	국졸 이하	중 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 포함)				대 학 원	기타
				소계	재중	중퇴	졸업	소계	재중	중퇴	졸업	소계	재중	중퇴	졸업		
'97.12월~'98. 8월 (9개월)	151,228 (100)	1,916 (1.2)	18,200 (12.0)	24,687 (16.3)	111 (0.1)	4,627 (3.0)	19,949 (13.2)	67,526 (44.6)	242 (0.1)	6,635 (4.4)	60,649 (40.1)	25,282 (16.7)	977 (0.6)	4,567 (3.0)	19,738 (13.1)	1,331 (1.0)	12,286 (8.1)
'97. 3월~11월 (9개월)	125,626 (100)	1,666 (1.3)	15,667 (12.5)	21,083 (16.8)	136 (0.1)	3,878 (3.1)	17,069 (13.6)	57,503 (45.7)	158 (0.1)	5,407 (4.3)	51,938 (41.3)	20,624 (16.4)	543 (0.4)	3,601 (2.9)	16,480 (13.1)	1,095 (0.9)	7,988 (6.4)
'94.12월~'95. 8월 (9개월)	96,629 (100)	1,434 (1.5)	12,882 (13.3)	16,354 (16.9)	85 (0.1)	2,462 (2.5)	13,807 (14.3)	45,869 (47.4)	146 (0.1)	3,541 (3.7)	42,182 (43.6)	16,140 (16.7)	393 (0.4)	3,080 (3.2)	12,667 (13.1)	919 (1.0)	3,031 (3.1)
'95.12월~'96.8월 (9개월)	120,874 (100)	1,650 (1.4)	15,397 (12.7)	20,358 (16.8)	104 (0.1)	3,370 (2.8)	16,884 (13.9)	57,291 (47.4)	167 (0.1)	4,844 (4.0)	52,280 (43.3)	20,581 (17.0)	519 (0.4)	3,797 (3.1)	16,265 (13.5)	1,053 (0.9)	4,544 (3.8)
'96.12월~'97.8월 (9개월)	125,275 (100)	1,612 (1.3)	15,372 (12.3)	20,500 (16.4)	132 (0.1)	3,618 (2.9)	16,750 (13.4)	57,705 (46.0)	157 (0.1)	5,183 (4.1)	52,365 (41.8)	21,027 (16.8)	567 (0.4)	3,672 (3.0)	16,788 (13.4)	1,129 (0.9)	7,930 (6.3)

[표 39]는 IMF전후 9개월 동안과 전 3개년도의 IMF체제와 같은 기간동안의 사기피의자의 교육정도별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IMF체제 이후의 사기피의자의 교육정도별 현황은 국졸이하가 12.5%에서 12.0%로 감소되었으며, 중학교 교육의 경우 전체적으로 16.8%에서 16.3%로 감소되었으며, 고등학교 교육의 경우 45.7%에서 44.6%로 감소하였으나 대학교 교육의 경우 16.4%에서 16.7%로 증가되었다.

동기간 비교에서는 국졸이하의 경우 1994년 9개월 동안은 13.3%, 1995년 9개월 동안은 12.7%, 1996년 9개월 동안은 12.3%, IMF 이후 1997년 9개월 동안은 12.0%이다.

중학교 교육의 경우 1994년 9개월 동안은 16.9%, 1995년 9개월 동안은 16.8%, 1996년 9개월 동안은 16.4%, IMF 이후 1997년 9개월 동안은 16.3%이다.

고등학교 교육의 경우 1994년 9개월 동안은 47.4%, 1995년 9개월 동안은 47.4%, 1996년 9개월 동안은 46.0%, IMF 이후 1997년 9개월 동안은 44.6%이다.

대학교 교육의 경우 1994년 9개월 동안은 16.7%, 1995년 9개월 동안은 17.0%, 1996년 9개월 동안은 16.8%, IMF 이후 1997년 9개월 동안은 16.7%이다.

결과적으로 IMF체제 이후 국졸이하,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정도의 사기피의자가 감소되었으며 대학교 교육이상의 사기피의자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5. 횡령피의자 교육정도별 현황

[표 40] 횡령피의자 교육정도별 현황

교육정도별 년도별	총계	불 취학	국졸 이하	중 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 포함)				대 학 원	기타
				소계	재중	중퇴	졸업	소계	재중	중퇴	졸업	소계	재중	중퇴	졸업		
'97.12월~'98. 8월 (9개월)	19,456 (100)	214 (1.1)	1,963 (10.0)	3,086 (15.8)	117 (0.6)	553 (2.8)	2,416 (12.4)	8,943 (46.0)	161 (0.8)	760 (4.0)	8,022 (41.2)	3,862 (19.8)	165 (0.8)	560 (2.9)	3,128 (16.1)	189 (1.0)	1,199 (6.2)
'97. 3월~11월 (9개월)	16,978 (100)	178 (1.0)	1,851 (11.0)	2,799 (16.5)	129 (0.7)	538 (3.2)	2,132 (12.6)	8,126 (47.8)	278 (1.6)	722 (4.2)	7,126 (42.0)	3,104 (18.3)	137 (0.8)	477 (2.8)	2,490 (14.7)	173 (1.0)	747 (4.4)
'94.12월~'95. 8월 (9개월)	15,855 (100)	222 (1.4)	2,060 (13.0)	2,905 (18.3)	119 (0.7)	506 (3.2)	2,280 (14.4)	7,413 (46.7)	240 (1.5)	581 (3.6)	6,592 (41.6)	2,769 (17.4)	113 (0.7)	459 (2.9)	2,197 (13.8)	138 (1.0)	348 (2.2)
'95.12월~'96.8월 (9개월)	16,851 (100)	200 (1.2)	2,055 (12.2)	3,000 (17.8)	108 (0.6)	546 (3.2)	2,346 (14.0)	8,056 (47.8)	225 (1.3)	703 (4.2)	7,128 (42.3)	2,986 (17.7)	93 (0.5)	501 (3.0)	2,392 (14.2)	149 (0.9)	405 (2.4)
'96.12월~'97.8월 (9개월)	16,544 (100)	198 (1.2)	1,894 (11.4)	2,789 (16.8)	110 (0.7)	520 (3.1)	2,159 (13.0)	7,739 (46.8)	230 (1.4)	690 (4.2)	6,819 (41.2)	3,049 (18.4)	106 (0.6)	453 (2.7)	2,490 (15.0)	165 (1.0)	710 (4.3)

[표 40]은 IMF전후 9개월 동안과 전 3개년도의 IMF체제와 같은 기간동안의 횡령피

의자의 교육정도별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IMF체제 이후의 횡령피의자의 교육정도별 현황은 국졸이하가 11.0%에서 10.0%로 감소되었으며, 중학교 교육의 경우 전체적으로 16.5%에서 15.8%로 감소되었으며, 고등학교 교육의 경우 47.8%에서 46.0%로 감소하였으나 대학교 교육의 경우 18.3%에서 19.8%로 증가되었다.

동기간 비교에서는 국졸이하의 경우 1994년 9개월 동안은 13.0%, 1995년 9개월 동안은 12.2%, 1996년 9개월 동안은 11.4%, IMF 이후 1997년 9개월 동안은 10.0%이다.

중학교 교육의 경우 1994년 9개월 동안은 18.3%, 1995년 9개월 동안은 17.8%, 1996년 9개월 동안은 16.8%, IMF 이후 1997년 9개월 동안은 15.8%이다.

고등학교 교육의 경우 1994년 9개월 동안은 46.7%, 1995년 9개월 동안은 47.8%, 1996년 9개월 동안은 46.8%, IMF 이후 1997년 9개월 동안은 46.0%이다.

대학교 교육의 경우 1994년 9개월 동안은 17.4%, 1995년 9개월 동안은 17.7%, 1996년 9개월 동안은 18.4%, IMF 이후 1997년 9개월 동안은 19.8%이다.

결과적으로 IMF체제 이후 국졸이하,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정도의 횡령피의자가 감소되었으며 대학교 교육이상의 횡령피의자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6. 배임피의자 교육정도별 현황

[표 41] 배임피의자 교육정도별 현황

교육정도별 년도별	총계	불 취학	국졸 이하	중 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 포함)				대 학 원	기타
				소계	재중	중퇴	졸업	소계	재중	중퇴	졸업	소계	재중	중퇴	졸업		
'97.12월~'98. 8월 (9개월)	4,632 (100)	101 (2.2)	606 (13.1)	691 (14.9)	5 (0.1)	92 (2.0)	594 (12.8)	1,805 (38.96)	1 (0.02)	127 (2.74)	1,677 (36.2)	1,005 (21.6)	10 (0.2)	108 (2.3)	887 (19.1)	83 (1.8)	341 (7.4)
'97. 3월~11월 (9개월)	4,001 (100)	94 (2.3)	585 (14.6)	565 (14.1)	4 (0.1)	66 (1.6)	495 (12.4)	1,565 (39.1)	1 (0.02)	89 (2.22)	1,475 (36.86)	916 (22.8)	16 (0.4)	110 (2.7)	790 (19.7)	77 (2.0)	199 (5.0)
'94.12월~'95. 8월 (9개월)	3,580 (100)	97 (2.7)	597 (16.7)	504 (14.07)	1 (0.02)	65 (1.82)	438 (12.23)	1,479 (41.3)	5 (0.1)	85 (2.4)	1,389 (38.8)	752 (21.0)	10 (0.3)	100 (2.8)	642 (17.9)	65 (1.8)	86 (2.4)
'95.12월~'96.8월 (9개월)	3,904 (100)	117 (3.0)	673 (17.2)	616 (15.77)	2 (0.05)	100 (2.56)	514 (13.16)	1,557 (39.88)	1 (0.02)	107 (2.74)	1,449 (37.12)	753 (19.3)	20 (0.5)	120 (3.1)	613 (15.7)	76 (1.9)	112 (2.9)
'96.12월~'97.8월 (9개월)	3,847 (100)	98 (2.5)	567 (14.7)	554 (14.4)	5 (0.13)	71 (1.8)	478 (12.4)	1,519 (39.5)		93 (2.4)	1,426 (37.1)	856 (22.2)	16 (0.4)	92 (2.4)	748 (19.4)	81 (2.1)	172 (4.5)

[표 41]은 IMF전후 9개월 동안과 전 3개년도의 IMF체제와 같은 기간동안의 배임피의자의 교육정도별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IMF체제 이후의 배임피의자의 교육정도별 현황은 국졸이하가 14.6%에서 13.1%로 감소되었으며, 중학교 교육의 경우 전체적으로 14.1%에서 14.9%로 증가되었으며, 고등학교 교육의 경우 39.1%에서 38.96%로 감소하였으나 대학교 교육의 경우 22.8%에서 21.6%로 감소되었다.

동기간 비교에서는 국졸이하의 경우 1994년 9개월 동안은 16.7%, 1995년 9개월 동안은 17.2%, 1996년 9개월 동안은 14.7%, IMF 이후 1997년 9개월 동안은 13.1%이다.

중학교 교육의 경우 1994년 9개월 동안은 14.07%, 1995년 9개월 동안은 15.77%, 1996년 9개월 동안은 14.4%, IMF 이후 1997년 9개월 동안은 14.9%이다.

고등학교 교육의 경우 1994년 9개월 동안은 41.3%, 1995년 9개월 동안은 39.88%, 1996년 9개월 동안은 39.5%, IMF 이후 1997년 9개월 동안은 38.96%이다.

대학교 교육의 경우 1994년 9개월 동안은 21.0%, 1995년 9개월 동안은 19.3%, 1996년 9개월 동안은 22.2%, IMF 이후 1997년 9개월 동안은 21.6%이다.

결과적으로 IMF체제 이후 범죄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교육정도별 현황은 중학교 교육정도를 제외하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의자 교육정도별 현황

[표 4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의자 교육정도별 현황

교육정도별 년도별	총계	불 취학	국졸 이하	중 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 포함)				대 학 원	기타
				소계	재중	중퇴	졸업	소계	재중	중퇴	졸업	소계	재중	중퇴	졸업		
'97.12월~'98. 8월 (9개월)	47,801 (100)	209 (0.4)	3,906 (8.2)	5,947 (12.44)	25 (0.05)	795 (1.66)	5,127 (10.73)	19,596 (40.99)	24 (0.05)	1,052 (2.2)	18,520 (38.74)	9,042 (18.9)	136 (0.3)	1,237 (2.6)	7,669 (16.0)	598 (1.2)	8,503 (17.8)
'97. 3월~11월 (9개월)	34,331 (100)	154 (0.4)	2,638 (7.7)	4,110 (12.0)	36 (0.1)	541 (1.6)	3,533 (10.3)	14,404 (42.0)	28 (0.1)	691 (2.0)	13,685 (39.9)	6,215 (18.1)	85 (0.2)	861 (2.5)	5,269 (15.4)	398 (1.1)	6,412 (18.7)
'94.12월~'95. 8월 (9개월)	40,728 (100)	233 (0.6)	3,066 (7.5)	4,932 (12.11)	24 (0.06)	514 (1.26)	4,394 (10.79)	17,991 (44.1)	34 (0.1)	741 (1.8)	17,216 (42.2)	7,705 (18.9)	87 (0.2)	1,052 (2.6)	6,566 (16.1)	463 (1.1)	6,338 (15.6)
'95.12월~'96.8월 (9개월)	39,521 (100)	186 (0.5)	3,068 (7.7)	4,759 (12.0)	25 (0.06)	527 (1.3)	4,207 (10.64)	17,202 (43.5)	43 (0.1)	766 (1.9)	16,393 (41.5)	7,379 (18.7)	86 (0.2)	1,012 (2.5)	6,281 (16.0)	486 (1.2)	6,441 (16.3)
'96.12월~'97.8월 (9개월)	32,814 (100)	140 (0.4)	2,436 (7.4)	3,763 (11.5)	30 (0.1)	458 (1.4)	3,275 (10.0)	13,530 (41.2)	36 (0.1)	631 (1.9)	12,863 (39.2)	6,019 (18.3)	66 (0.2)	832 (2.5)	5,121 (15.6)	395 (1.2)	6,531 (20.0)

[표 42]는 IMF전후 9개월 동안과 전 3개년도의 IMF체제와 같은 기간동안의 의 교육정도별 현황을 비교한 것이다.

IMF체제 이후의 부정수표단속범위반 피의자의 교육정도별 현황은 국졸이하가 7.7%에서 8.2%로 증가되었으며, 중학교 교육의 경우 전체적으로 12.0%에서 12.44%로 증가되었으며, 고등학교 교육의 경우 42.0%에서 40.99%로 감소하였으나 대학교 교육의 경우 18.1%에서 18.9%로 증가되었다.

동기간 비교에서는 국졸이하의 경우 1994년 9개월 동안은 7.5%, 1995년 9개월 동안은 7.7%, 1996년 9개월 동안은 7.4%, IMF 이후 1997년 9개월 동안은 8.2%이다.

중학교 교육의 경우 1994년 9개월 동안은 12.11%, 1995년 9개월 동안은 12.0%, 1996년 9개월 동안은 11.5%, IMF 이후 1997년 9개월 동안은 12.44%이다.

고등학교 교육의 경우 1994년 9개월 동안은 44.1%, 1995년 9개월 동안은 43.5%, 1996년 9개월 동안은 41.2%, IMF 이후 1997년 9개월 동안은 40.99%이다.

대학교 교육의 경우 1994년 9개월 동안은 18.9%, 1995년 9개월 동안은 18.7%, 1996년 9개월 동안은 18.3%, IMF 이후 1997년 9개월 동안은 18.9%이다.

결과적으로 IMF체제 이후 범죄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교육정도별 현황은 국졸이하는 증가되었으며 중학교 교육정도는 약간 증가, 고등학교 교육정도는 감소되었으며 대학교 교육정도는 약간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 4 장 IMF로 인한 실업과 관련된 범죄유형

제 1 절 총 설

앞의 장에서는 IMF사태 이후 9개월 동안의 범죄동향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IMF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및 실업으로 인해 강도, 절도,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젊은 층의 범죄 보다는 경제위기 및 실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30대 이상의 연령층이 약간씩 증가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음도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거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경제위기와 실업의 증가로 인해 특별히 나타나게 되는 범죄현상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경제위기와 실업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구체적 범죄유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실업자의 증가와 함께 이들이 노숙자로 전락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것이므로 노숙자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제 2 절 IMF사태로 발생하는 범죄유형

1. 10대와 20대의 용돈강도

IMF구제금융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들의 신규채용기피로 고졸·대졸자들의 취업이 막히면서 15세에서 29세까지의 사회초년생들의 실업률이 크게 증가했다.

가계소득의 감소 및 가정의 붕괴로 청소년의 비행이나 범죄증가의 가능성이 있으며 청소년의 용돈부족 및 결핍으로 인한 각종 비행 및 범죄증가 가능성이 있으며 한탕주의식 사고와 사행심리가 만연되어 있다.

1998년 8월말 실업률은 7.4%이며 연령별 실업률 현황을 살펴보면 10대와 20대의 실업률이 가장 높다. 이들 청소년층을 방치할 경우 선진국에서 최대 골치거리인 장기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며, 학생계층의 10대와 20대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용돈을 조달받지 못하여 용돈과 유희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도를 범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2. 해고에 대한 보복성 범죄

기업구조조정에 의해 해고된 실직자가 전회사의 비리사실과 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근거로 회사대표에게 돈을 요구하는 협박하는 해고에 따른 보복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국세청과 검찰청 등에 기업의 비리를 제보하겠다는 협박을 하거나 기업의 비밀을 경쟁회사에 팔아 넘기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게 발생되고 있다.

해고된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퇴직자파일의 주무기는 자금 및 세무비리 폭력위협 등이다. 지난 7월에 S사의 장모사장은 50여명을 정리해고 했다가 이중 4명의 해고자로부터 2억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비리가 담겨있는 컴퓨터 디스켓을 수사기관에 보내겠다는 협박을 지금까지 받고 있으며 다른 해고자들도 퇴직금을 더 달라고 자주 협박전화를 걸어오고 있다고 한다.

퇴직자파일이란 회사의 핵심기술, 영업기밀이나 세무 및 환경관련 비리 등에 관한 자료를 빼내 회사를 상대로 위협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해고를 당하게 될 경우 이 파일을 무기로 경영진과 흥정을 벌여 버티거나, 회사를 떠나는 즉시 경쟁업체에 거액을 받고 기밀을 팔아 넘기는 것이다. 이 파일을 토대로 아예 회사를 차리는 경우도 있다. 해고가 늘어나면서 국세청에 기업의 세무비리제보가 폭주하는 것도 이 같은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또 다른 사례로 휴대폰 등을 생산하는 M전자에서는 최근 퇴직한 5명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내 다른 회사를 세우고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비상이 걸렸으며 이에 대하여 재계는 퇴직자 파일의 파장이 커지자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사연좌제, 정보접근제, 겸업금지계약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얼마전 삼성전자와 LG반도체의 전현직 연구원 16명이 64메가D램 제3세대 핵심기술을 빼내 대만업체에 유출한 것도 이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모창업투자회사대표는 대기업연구소 연구원들로부터 연구개발이 끝난 기술을 빼내는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집중적인 감원대상이 되고 있는 은행증권 자동차업체들의 영업사원이 회사를 떠나면서 자신이 관리해온 거래선 자료를 모두 갖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사례도 보편화하고 있다. 재계는 퇴직자파일의 파장이 커지자 핵심기술유출방지와 근무기강 쇄신을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계열사 곳곳에서 퇴직자와 연관된 사고가 터지자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 삼성, 현대전자, LG반도체 등 반도체업체들의 경우 핵심연구진 및 특허팀원과 관련 기술의 대외유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있다. LG는 핵심기술에 접근하는 인사를 극히 제한하고 서류나 디스켓복사는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1만명 이상을 명예퇴직 시킨 은행권에서는 퇴직자들로부터 재직시 취득한 정보를 누출시킬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고 있다고 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국제통화기금사태와 라이프스타일 변화란 제목의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IMF사태이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화되면서 ‘주는 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의식이 직장인 사회에 뿌리 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IMF 체제가 지속될 수록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고 한탕주의가 직장인들을 유혹하고 또한 산업스파이사건이 빈번할 것으로 전망했다. 평상시 조용히 근무하던 직장인이나 연구원들이 외부의 유혹에 넘어가 수시로 산업스파이가 되는 이른바 ‘레

용' 식 산업스파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⁷⁶⁾

3. 분풀이식 범죄

실직으로 인하여 가족간의 유대감의 상실과 심리적 부담감 그리고 평소의 성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화풀이 또는 분풀이 차원의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각종 범죄 특히 청소년층의 범죄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 강도, 절도행위 중 상당수가 초범이고 70년대식 생계형 줌도둑이 급증하고 차량평크내기, 전화폭력, 방화 등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 반사회적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4. IMF형 유괴범죄

IMF사태로 실직에 빠진 사람들 중에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유층자녀를 유괴하여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전과도 없으며 IMF 이전에는 평범한 일반시민이었으나 채무독촉 또는 빚보증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해이상태하에서 범행을 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 실직자의 퇴직금을 노린 사기범죄

실직자들의 퇴직금 등을 노린 기업형 사기낙찰계가 IMF이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사기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갯돈을 먼저 타낸 뒤 계를 깨는 수법으로 거액의 돈을 가로채어 형법상 사기죄 및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를 범하고 있다.

현금유통의 경색으로 인하여 자기자산 보존 및 회복심리의 증가와 일상적 신용거래에 대한 불신극대화 그리고 과도한 빚 독촉 등으로 인한 살인 및 자살의 증가 그리고 전통적인 계 등의 민간금융거래의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6. 실직자의 조직화·범죄집단화

경제위기가 가속화되면서 폭동이나 소요같은 사회불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폭동의 원인으로 꼽히는 요소는 역시 장기적인 고실업과 중산층의 몰락이다. 하루아침에 일 자리를 잃고 하층민으로 몰락한 화이트칼라, 부도를 맞고 길거리로 내몰린 자영업자들,

76) 동아일보, 1998.4.30자

삶의 질이 급락한 노동자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실업자들이 부산에서 실직자거리행진대회(1998년 4월 18일 부산)와 5월에 노동계와 연대하여 총파업분위기와 맞물려 실업자동맹을 결성하여 실직자 조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실직자동맹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별도기구를 설립시켜 실직자동맹을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

이들은 정부정책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실업률이 사회안정선을 위협하는 정도인 8-10%에 달하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제 3 절 노숙자범죄

1. 서론

IMF구제금융이후 실직 도시노숙자들이 부랑인으로 전락하는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서울역 일대 노숙자는 상경한 원정실직자까지 합쳐 그 수가 3천여명으로 늘어났으며 연말에는 1만명을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숙자 대부분은 30-40대의 남성이며 여성 및 가족단위의 노숙자도 증가되고 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차츰 실직자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일을 포기하고 노숙자로 전락한다. 노숙자로서의 생활은 과음과 불규칙한 식사, 심리적 무력감으로 인한 소외집단화 등으로 사회의 변화를 기다리는 잠재적 불만세력으로 변해가고 있다.

노숙자들은 약70%가 실직노숙자, 20%가 구걸생활을 하는 상습부랑인이며 10%정도는 토착화된 부랑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부랑인들이 불량성 부랑인과 어울려 집단화되면 매우 거칠어지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며 범죄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증가되며 부랑인선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실직노숙자들은 자포자기성 폭력행사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와 앵벌이 조직의 감시자가 되기도 하며 이들의 주민등록증을 범죄자에게 넘겨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2. 노숙자의 현황

(1) 전국의 노숙자 현황

노숙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으나 실직으로 인하여 허탈감이 나 무력감 등으로 자신이나 가족의 생계를 돌보지 못하는 자로서 가정을 떠나 거리를 방황하는 자를 말한다. 경찰청에서 파악한 실직노숙자들은 1998년 8월말 현재 약 3,000 명선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 노숙자의 대부분이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국철, 지하철역, 공원 등 노숙하기가 용이하고 정부기관, 각종 사회 단체와 종교단체 등에서 무료급식, 취로사업 알선 등 노숙자 보호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998년 8월말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노숙자 현황은 [표 43]과 같다.

[표 43] 전국의 노숙자현황 (1998.8.31 현재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구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대전
노숙자수	3,050	2,400	300	120	100	100	30
비율	100	78.9	9.8	3.9	3.3	3.3	1.0

(2) 서울시내 노숙자 출신지역별, 연령별, 직업별 현황

1) 출신지역별 분포

1998년 3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사랑의 전화 복지재단에서 서울시내 노숙자 중 1:1 면접에 응한 2,0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자료를 보면 [표 44]와 같다. 서울시내 노숙자 출신지역별 분포는 서울출신이 39.7%로 가장 많고 경기출신이 17.4%로 수도권 지역출신이 약60%를 점유하고 있다.

[표 44] (1998.3.30 - 1998. 6.18. 사랑의 복지재단, 출신지역별 통계자료)

구분	총계	서울	경기	경남	전남	충남	경북	강원	전북	충북	제주	무응답
인원	2,074	824	360	133	97	80	73	57	46	22	10	371
비율	100	39.7	17.4	6.4	4.7	3.9	3.5	2.7	2.2	1.1	0.5	17.9

2) 연령별 분포

[표 45]는 1998년 3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사랑의 전화 복지재단에서 서울시내 노숙자 중 1:1 면접에 응한 2,0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령별 통계자료이다.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27.8%, 30대가 22.9%로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가 많이 필요한 30-40대 가장들이 실직으로 인해 노숙생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5] (1998.3.30-1998. 6.18. 사랑의 복지재단, 연령별 통계자료)

구분	총계	40대	30대	50대	60대	20대	10대	무응답
인원	2,073	577	474	266	108	104	10	534
비율	100	27.8	22.9	12.8	5.2	5.0	0.5	25.8

3) 직업별 분포

1998년 3월 30일 부터 6월 18일까지 사랑의 전화 복지재단에서 서울시내 노숙자 중 1:1 면접에 응한 2,0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노숙자들이 실직전 가졌던 직업별분포는 일용직 9.8%, 노무직 7.9%, 생산직 6.8% 등으로 전직이 노동적인 사람들이 IMF이후 일거리가 많이 없어 지면서 실직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6] (1998.3.30-1998. 6.18. 사랑의 복지재단, 직업별 통계자료)

구분	총계	일용직	노무직	생산직	자영업	기능직	사무직	서비스직	공무원	요리사	무직	농수산업	전문직	기타무응답
인원	2,073	204	165	139	108	100	98	92	68	42	38	26	13	980
비율	100	9.8	7.9	6.8	5.2	4.8	4.7	4.5	3.3	2.1	1.8	1.3	0.6	47.2

3. 노숙자의 생활 실태

지난 5월 20일 부터 27일까지 노숙자와 부랑인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국의 1일 평균 노숙자는 112개소에 1,344명(노숙자 846명, 부랑인 49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경우는 35개소에 654명(노숙자 456명, 부랑인 198명)으로 파악되었다.⁷⁷⁾

노숙자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는 역대합실 및 광장(53%)이 가장 많고 공원, 지하철역, 터미널, 지하보도, 폐가 등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이러한 장소를 선호하는 것은 사회자선단체의 구호활동에 접하기가 용이하고, 경우에 따라 노동인력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며 단체속에 있음으로써 느끼는 동류의식 때문으로 생각된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노숙자 중 부랑인도 37%에 달하여 노숙자 중 상당수가 부랑인화될 가능성과 그 추세를 우려하고 있으며 최근 1개월간(4.21-5.20) 노숙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220건으로 경범죄(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빈집이나 자동차 잠입 등)가 177건(80%)으로 대부분이지만 형사범도 43건(20%)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많은 노숙자들이 '될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에 빠져 파탄에 이르거나 노숙생활이 장기화될 경우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게 된다.

노숙자들은 대체로 19시부터 노숙지역에 모여 잠을 잔 후 출근시간인 오전 7시를 전후하여 3-5명 단위로 해산하는 등 개별행동을 회피하고 집단화 속성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노숙자들이 식구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집으로 가기를 꺼려하고 취로사업 등 일자리가 있음에도 일당이 낮고 힘이 든다는 이유로 일을 하기 싫어하는 등 재기의 지가 부족하고 나태한 경우가 많다. 노숙자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비판하고 소주 등 독한 술을 상습적으로 마셔 건강을 해치고 폐싸움 등 소란을 일으켜 시민들에게 혐오감 및 불편을 야기시키며 노숙자들끼리 결탁하거나 단독으로 부녀자 혼자있는 집 또는 빈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강,절도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다수의 인력을 과시하여 구걸을 강요하거나 타인과의 분쟁이 있을 경우 집단으로 대항하는 등 폭력세력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⁷⁸⁾

노숙자의 증가는 무전취식이나 절도 등 생계형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준범의식의 희박화, 삶의 의지력상실 등 특히 반사회적인 불온한 세력이 이들을 충동할 경우에는 '가진자'에 대한 증오심이 폭발하여 사회불안 세력화하여 치안수요를 증대하게 할 소지가 있다.

장기적인 노숙생활은 인격의 파탄을 초래하여 알콜중독 및 최근 확산되고 있는 마약

77) 이기호, "IMF시대와 노숙자문제", 경찰행정, 1998, 7, 7면참조.

구분	계	역대합실	터미널	지하철역	지하도	공원	폐가	기타
전 개소	112	31	13	16	8	27	6	11
국 인원	1,344	715	41	66	106	276	15	130
서 개소	35	4		10	4	14		3
울 인원	654	420		23	86	106		19

78) 위의 논문, 8면.

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2차적인 범죄에 연계될 수 있으며 노숙장소가 슬럼화하여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성범죄나 윤락행위의 우범지대로 변할 수도 있으며 노숙자 구호활동을 빙자한 사기사건의 발생가능성도 있다.⁷⁹⁾

4. 노숙자범죄의 사례

(1) 노숙자강도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을 하는 자들로서 1998년 9월 9일 12시 50분경 서울광장구 구의3동 현대프라임 아파트 단지내에서 일당2만원씩을 받고 이발소 선전광고지를 배포하던 중 외출하였다가 귀가하는 20대 부녀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아파트문을 여는 순간 안으로 밀고 들어가 비닐테이프로 입을 막고 상반신을 발로 걷어차 상해를 입히고 가스총으로 위협, 귀금속 및 현금 등 559만원 상당을 강취하여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조사결과 이들은 농촌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다 지난 6월경 공사장에 취업하려고 상경했으나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채 서소문공원에서 노숙해 왔으며 이 공원에서 알게된 나머지 2명과 공모하여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2) 교도소에 가기 위한 범죄

영등포일대에서 노숙을 해오던 자로 1998년 9월 18일 21시경 영등포구 문래3가 소재 어느 빈사무실에 침입하여 어음, 가계수표 등 약 4,450만원 상당을 절취한 후 IMF로 인해 살기 힘들어 교도소로 가기 위해 고의로 범죄를 하였다며 영등포경찰서 문래파출소에 자수하였다. 피의자는 19살때인 지난 84년 특수절도혐의로 교도소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무려 7차례나 교도소를 드나들었으며 지난해에는 특히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살아가기 어렵다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고 환각제에 손을 댔다가 지난해 10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그 후 4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올 2월 출소하였지만 바깥세상의 환한 햇살이 아니라 IMF로 인한 극심한 취업난과 생활고였다. 이후 직업을 구하지 못해 영등포일대에서 노숙을 하면서 구걸로 하루세끼를 해결해온 김씨는 구걸도 힘들어지고 날씨가 쌀쌀해지자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경찰에 자수, 다시 교도소로 들어갈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3) 노숙자들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79) 위의 논문, 8면.

노숙자들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노숙자를 살해하고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였다가 적발된 사례나 노숙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구입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사례 등이 있다.

5. 노숙자범죄에 대한 대책

노숙자의 증가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범죄와의 연계나 시민의 불편초래 등 치안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숙지역의 방법활동강화로 범죄유발가능성을 차단하고 둘째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자관련 시책추진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며 셋째 노숙자의 현황을 상시 파악하여 적극대처하여야 하며 노숙자관련 업무수행시 인권침해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노숙지역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단화속성을 고려하여 노숙지역의 범죄신고가 접수되면 2인 이상이 출동하고 형사기동차 등 가용경력의 즉각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경미한 사안이라도 원칙적으로 파출소로 동행하여 조사하여 신중히 처리하여 현장에서 훈방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숙지역 방법활동 강화

노숙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순찰을 실시하고 노숙자 현황파악 및 범죄유발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되 가급적 2인 1조로 순찰하여야 한다. 또한 무료급식소나 공원 등 노숙자의 일시 집결장소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결시간을 파악하여 도보 및 112순찰차 등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순찰활동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또한 파출소의 지원경력은 경찰관과 합동순찰조를 편성하여 운용하고 이동방법파출소의 운용장소를 선정할 때에는 노숙자, 무료급식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노숙자에 근접하여 배치하면 노숙자를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지양하여야 하고 영향권내의 근거리에 배치한다.

(2) 대도시 노숙자 특별보호사업 추진 적극협조

1)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숙자보호시설 운영시 경력지원

노숙자 쉼터가 개설된 후 그에 따라 노숙자의 규모나 경력을 지원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선별 및 보호시설 입소과정에서의 질서유지에 협조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숙자 쉼터에 방법초소 설치시 장소선정 및 운영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법초소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그 경비 및 운영비에 대하여 사전에 명확히 협의하고 파출소 경력운영상 노숙자 현황 및 치안수요에 따라 탄력 배치됨을 사전에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방법초소 설치 후에는 취약시간대(노숙자 집결시간)에는 거점근무 장소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의 노숙자 상담과 관련하여 경찰관서에 신변보호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노숙자 현황 상시 파악 및 적극대처

외근활동시에는 노숙지역의 규모나 특이양상 등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새로운 노숙지역이 발생하면 관찰 행정관청에 통보하여 취업의 알선이나 귀향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집단화를 사전에 막고 상습부랑인을 발견하면 관찰 행정관청에 통보하여 보건복지부 훈령(부랑인 선도시설 운영규정)에 따른 조치를 촉구한다.

(4) 노숙자 관련 업무추진시 유의사항 준수

1) 자치단체 업무협조시 유의사항

노숙자, 부랑인의 보호시설 입소는 본인이 시설에의 보호를 원하고 시장군수가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보건복지부 훈령 제523호 부랑인선도시설운영규정 제3조 제2항).

물리력 사용은 자제하고 사회복지사 등 전문요원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협조한다.

기타 인권침해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실직 노숙자는 불우한 사정을 고려하여 동정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2) 노숙지역 범죄발생시 적정 대처

노숙지역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단화 속성을 고려하여 노숙지역의 범죄신고가 접수되면 2인 이상이 출동하고 형사기동대 등 즉각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노숙자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현장에서 자극적인 언행이나 물리력의 사용을 자제하고 설득하여 동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원칙적으로 파출소로 동행하여 조사 검토 후 신중히 처리하며 현장에서 훈방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한다.

제 5 장 실업관련 범죄방지대책

제 1 절 서론

실업에 대한 경제정책, 고용증진대책과 사회정책은 범죄예방대책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형 실업대책은 높은 실업해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실업문제의 해결책은 일자리 창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지연되면 고실업의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가능성제고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실질자의 생계보호 등 소비성 실업대책은 실업재원의 한계로 막대한 재정적자가 초래되어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가중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고용증진을 위한 정책의 문제이며 장기간이 걸려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경찰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간이 걸리는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이하에서는 실업률의 증가가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경찰 자체에서의 실업관련범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검토한 대로 IMF시대에서 실업이 증가할 것은 분명하지만 이로 인해 총범죄가 증가할 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이 없다. 그러나 실업의 증가사태로 인해 일정한 범죄가 증가하거나 범죄의 양상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원래 범죄대책에는 많은 재정지출이 요구된다. 그러나 IMF시대에는 세수의 감소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상태 역시 넉넉치 못한 형편이므로 경찰의 범죄대책에 필요한 추가적 예산확보 -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지마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IMF시대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치안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범죄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으로는 기존의 경찰들의 인원이나 조직 및 활동을 효과적으로 재편 혹은 재배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는 형사3부제의 운영, 112순찰차의 효과적 활용, 경찰서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순찰제도의 과학화 및 국민의 위화감 내지 절망감을 덜어줄 수 있는 수사로의 방향전환, 방법설비의 의무화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널리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경찰(community policing)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현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의 인적, 물적자원을 발굴해 내어 활용하도록 해야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경찰의 범죄예방활동과 범죄인선도활동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는 자율방범대의 조직화, 공공자원 방범대원의 확보 등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와 관련하여 비행청소년을 선도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범죄예방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멘터프로그램(mentor program)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 2 절 기존 경찰활동의 효율화

1. 형사3부제 근무실시

심야 강력범죄 다발지역인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24시간 범죄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별로 단계별 형사인력을 확보하여 형사 3부제 근무실시를 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2. 경찰서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방안

범죄억제대책의 하나로 유흥, 향락업소에 대한 영업제한 내지 업소개설의 억제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급격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White-Color범죄에 대비하여 공직자 및 기업윤리의식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대량실업상태로 인하여 계층간의 위화감 내지 박탈감이 사회전반에 퍼져있으므로 일부 부유층의 과소비와 투기 등을 억제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져야 할 것이며 동시에 고용수요창출과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또는 이를 주선하여야 한다.

경제적 위기가 본인 및 가족의 집단자살의 경향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다. 경제적 위기상황 즉 사업실패나 명예퇴직으로 인한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내면을 보면 이는 경제적 빈곤이 주된 원인이라기 보다는 도덕적 빈곤 즉 인간의 정당한 욕망의 한계를 모르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도덕적 빈곤의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을 하는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도덕성회복을 위한 운동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3. 112순찰자의 뿔집중운영체제로의 전환

범죄예방체계의 발전적 재구축을 위하여 서울, 부산 등 특별시, 광역시와 도시지역의 112순찰차는 경찰서에서 집중운용하고 여타 도시지역은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찰서 방법과에 112순찰계를 신설하여 112순찰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파출소 교차관할개념을 없애고 뿔단위로 치안수요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현장 조치능력을 강화하고 時差別 근무교대로 근무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4. 과학적 순찰활동 전개

경찰서에 지역범죄분석실을 설치하여 발생사건을 분석결과에 따라 전략적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5. 치안예보제 실시

민간의 참여를 통한 협력방법체재구축을 위해 지역별 치안예보제를 실시하여 이를 통하여 지역치안상황, 범죄정보 및 대응지침을 제공하여 자위방법력을 제고하고, 용역 경비업과 청원경찰을 통합하고 경비대상시설을 등급화하여 근무자 자격요건, 휴대장비, 근무방법 및 근무감독 등을 차별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 경비회사의 현장출동인력, 장비의 확보를 의무화하여 민간경비의 현장활동을 내실화하여야 한다.

일본의 민간경비인력은 36만여명인데 비하여 우리 나라의 경우 1995년기준으로 7만5천여명으로 민간부문의 참여에 의한 범죄예방활동은 저조한 실정이다.

6. 방법설비의 의무화

금융기관, 귀중품업소 등 현금다액업소 및 일정규모이상의 다중운집시설 등의 설비시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방법설비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7.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수사 강화

IMF형 민생침해 재산범죄(예를 들면 퇴직금사기나 취업사기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국내외 범죄조직 및 테러분자 등 불순분자가 총기류 등 危害 물품을 불법으로 반입하여 범죄에 이용함으로써 사회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항이나 항구 등에 있는 각 세관에서는 우범여행자 등에 대한 보안검색을 철저히 하고 테러 취약요소의 사전점검 등 안보감시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부실기업경영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

다. 기업퇴출과 함께 근로자들의 연대투쟁을 통한 집단범죄의 발생 우려가 있다. 특히 기업을 부실기업을 경영하면서 개인적 치부를 한 경영자들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비해, 선량한 근로자들만이 고통을 감내한다는 인식이 생겨나면 집단범죄의 발생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따라서 부실기업경영자나 그에 관여하여 이익을 얻은 정치인,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과 처벌을 통해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8. 신종범죄에 대한 홍보강화

IMF체제 하에서 실직자의 퇴직금을 노린 신종사기범죄나 절도, 강도범죄 등도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러한 신종범죄들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강화하여 이러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홍보방법으로는 현재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경찰청사람들’이나 ‘경찰 24시’ 같은 TV프로에 IMF형 범죄들에 대해 몇 주 동안 집중적으로 소개하거나, 반상회를 통해 신종범죄수법에 대해 알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경찰청의 인터넷을 통해 신종범죄수법⁸⁰⁾에 대해 조회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9. 지역사회경찰제도

(1) 기본사상

지역사회경찰제도는 새로운 경찰행정에 대한 새로운 지도원리로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나 약물범죄문제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전략이다 (community-based strategy). 즉 폭력범죄나 약물범죄를 빈번하게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대해 정부기관,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이 연계, 협력하여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협동적인 접근방법이다.

이 제도의 목표는 지역사회에서 범죄와 범죄적 요소들을 제거하고(weed out), 범죄인들의 사회복귀를 좌절시키는 요인들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지역에 광범위한 범죄예방 프로그램과 사회복지기관들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씨앗을 심는(seed) 것이다(따라

80) 노숙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통신망에 ID를 개설한 후 컴퓨터 등의 물건을 헐값에 매각한다는 내용을 공시하여 이를 본 구매자에게 대금을 온라인으로 보내도록 한 다음 이를 횡령하는 수법도 있다.

서 이 프로그램을 ‘Weed and Seed’ 프로그램이라고도 한다).

(2) 시행단계

첫째, 중앙과 지방의 법집행기관, 각종의 사회복지기관, 민간단체 및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조직이나 지도자들의 대표자로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해야 한다.

둘째, 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기관, 예를 들어 살인, 폭력, 약물범죄 등의 발생률이나 체포율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선정한다.

셋째, 범죄인의 특성, 범죄행동의 변화, 시민들의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한다.

넷째, 필요한 사항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한다.

(3) 경찰업무의 변화

지역사회경찰제도의 기본철학은 종래 주민들의 요구(calls for service)가 있을 때에 대응하던 방식에서, 경찰이 범죄예방을 위해 전향적인(proactive)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경찰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범죄유발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범위반자들을 체포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지역사회경찰제도하에서는 경찰관들은 순찰이나 신고사건처리 등 전통적인 법집행업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지역사회의 파출지소의 운영
- 지역주민과의 만남
- 지역사회에서 생겨나는 문제의 파악 및 해결
- 시민과 협력하여 범죄예방활동 시행
- 지역주민의 호별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 학교에서 학생과 대화
- 지역의 상인들과의 만남
- 사무실들에 대한 보안점검
- 질서문란자들에 대한 처리

제 3 절 민간인 및 자원봉사자의 활용방안

1. 자율방법대의 활성화

대도시와 인구15만명 이상의 중도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치안서비스가 이루어 져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실직자의 경우 농촌이나 소도시보다는 취업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많은 대도시나 중도시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지역단위의 민관협력 치안체제 확립을 위해 자율방법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즉 자율방법대의 구성과 적극적인 활동을 각 일선경찰서 또는 파출소를 중심으로 활성화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 경찰과 자원봉사대학생과 실직자를 자율방법대원으로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우범지대나 범죄예방을 위한 방법활동에 투입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 최근 각 대학에서 사회봉사교과목을 신설하여 사회봉사를 위한 소재를 물색하고 있으므로 학점과 연계된 사회봉사차원에서 방법활동을 수행하면 예산지원 없이도 방법인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대학생들만의 방법활동에는 아직 사회경험의 미숙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회경험이 풍부한 실직자와 함께 방법순찰활동을 행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2. 공공자원 방법대원운영의 내실화 및 확대

민생침해 범죄단속 및 예방을 위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공공자원방법대를 구성하며 일선경찰서별로 교육을 실시한 뒤 파출소에 배치하여 민관합동 방법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이들 공공자원방법대원들의 인력을 증가시키고 이의 활성화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3천8백여개의 자율방법대를 자율방법연합회로 확대개편하여 조직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공공자원 방법대원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채용형식은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방식을 택하며 예산범위내에서 일정기간 계약을 한 다음 각 경찰서별로 교육을 실시하여 배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자원 방법대원에게 책임감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정부에서 조성해 놓은 실업

자구제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확보된 기금을 이용해 실업자들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활용하게 되면, 이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치안수요에 대처하면서, 실업자들도 구제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3. 비행청소년선도를 위한 멘터프로그램

(1) 개념

지역사회경찰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경찰업무가 증가될 것이지만, 경찰관의 증원은 어려운 형편이다. 결국 증가되는 업무는 지역사회와의 연대 내지 협력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찰이 적극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행청소년을 선도하는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한데,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오고 있는 비행청소년선도를 위한 멘터프로그램이다. 멘터(mentor)란 “현명하고 믿을 만한 의논 상대, 지도자, 스승, 선생; (영향력 있는 연장의) 지지자[후원자]”라는 의미이다. 즉 지역사회주민들이 비행청소년들을 일 대 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를 경찰이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제도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2) 미국의 청소년선도 멘터제도

1) 취지

97년 4월 필라델피아에서 전현직 대통령 4명이 모여 청소년선도를 위한 특별 정상회담을 개최, 대기업총수, 대학총장, 저명 인사 등 수만명이 운집해서 청소년선도를 멘터(mentor)로 해결하자는 성명을 채택했다.

대회 직후 각계에서는 멘터 모집,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했는데, 정부 각 부처, 육해공군, 주요 대기업, 주요 사회단체, 대학 등이 공무원 멘터 수만명, 직장인 멘터 수만명, 대학생 봉사자 50% 증대, 그리고 멘터 기금으로 수백만, 수천만불씩을 내놓는 기업들과 재단들이 많았다. 대회 사회를 맡은 클린 파월 장군은 이같은 약속을 총관리하는 조직, “미국의 약속”(America's Promise)을 맡으면서 2000년까지 전국 2백만명 멘터 모집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도 각계의 동참과 성금이 속속 답지하고 있다.

2) 정부의 정책

미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기관들은 청소년 선도의 방향을 멘터 지원체

도로 확립해 놓았다. 74년에 제정한 “청소년선도법”을 92년에 개정하면서 멘터정책을 삽입해두었다. 이 정책에 따라 미의회는 94-96년 3년간 ‘청소년선도멘터’(JUMP; Juvenile Mentoring Program)에 1천9백만불 예산을 의결했고 97년 한 해에는 7백만불을 지원하고 나섰다.

정부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대학, Big Brothers/Big Sisters 등 민간단체 등이 일선 중고교와 파트너가 되어 ‘JUMP’ 사업을 신청해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으며 멘터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미법무부는 가장 많은 보조금을 주는 BB/BS 전국 지부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민간전문연구소에 의뢰해서 살펴본 결과, 대단히 높은 평가점수를 주면서 멘터 프로그램에 대해 더욱 많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뒤이어 전현직 대통령들의 특별 정상회담과 각계로부터의 높은 호응과 동참을 유도해 낼 수 있었다.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BB/BS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이후 18개월간의 결과를 객관적인 지표로 제시되었다.

- 1) 초기 약물사용 45.8% 감소
- 2) 초기 음주 27.4% 감소
- 3) 타인 구타행위 31.7% 감소
- 4) 학교 성적 3.0% 증가
- 5) 수업 결석 36.7% 감소
- 6) 학교 결석 52.2% 감소
- 7) 부모에게 거짓말 36.6% 감소

3) 대학생 멘터 활동

540여 대학들이 가맹한 전국대학총장사회봉사협의회(Campus Compact) 자료에는 회원 대학 평균 70%이상에서 대학생들이 청소년멘터로 활동하고 있다. 다른 어떤 활동보다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성공적인 사업인 것이다. 대학에 따라 학점을 인정하는 대학도 있지만 학점을 받지 않고 학생자치로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기업, 대학,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으며 하는 경우도 흔하다.

미국정부는 92년에 ‘국가/지역사회봉사법’을 제정해서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나 재학 중인 대학생이 학비 마련을 위해 1년간 멘터 등 공익봉사 활동을 마친 후 학비(약 5천불: 600만원)을 정부로부터 장학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4) 기업과 직장인 멘터 활동

미국의 주요 대기업에서는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멘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중·고교 대학에서 봉사활동을 몸에 익혔기 때문에 회사가 지원해주지 않더라도 자기 돈을 들여가며 정기 활동한다. 그 가운데는 대학시절부터 멘터로 활동한 직장인도 적지 않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직장인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 직장인 멘터활동은 지속적인 교육사업이 되고 있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 92%가 다양한 형태로 직장인 봉사활동을 지원하며, 제록스,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일부 기업들은 3-12개월간 유급 봉사활동 휴직/출장제도를 두며 적극적이다.

(3) 우리 나라에서의 시행방안

1) 대학생멘터의 확보

이와 같은 제도를 우리 나라에서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멘터가 될 수 있는 자원 봉사자를 모집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는 대학생자원봉사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검찰청에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의 일환이나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자원봉사자로서 대학생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행청소년선도는 형사사법의 초기단계에서 행해져야 더 효과적이므로, 경찰에서도 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운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선도는 검찰의 업무라기 보다는 경찰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경찰에서도 이러한 멘터프로그램을 운용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전국의 약 170개 대학에서 사회봉사학점제를 택하고 대학생들로 하여금 자원봉사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므로 전국 경찰에서 대학과 연계하여 이 제도를 운용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2) 한양대학교의 멘터프로그램

현재 한양대학교에서는 동부지청과 협력하여 선도조건부기소유예를 받은 청소년들에 대한 멘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A. 멘터들에 대한 기본교육

- a. 교육시간 ... 2일간 12시간
- b. 교육내용 ... 자원봉사의 기본철학, 인간관계훈련, 상담기법

B. 멘터프로그램 내용

a. 단체 프로그램

1. 인간관계훈련 및 레크리에이션

일 시 : 7월 4일(토) 15:00 ~ 18:00

장 소 : 사회과학관 401강의실

2. 등산

일 시 : 7월 11일(토) 14:00 ~ 19:00

장 소 : 북한산

기 타 : 도선사 입구에 13:50까지 집결

3. 수상 스포츠(수영, 윈드서핑)

일 시 : 7월 25일(토) 11:00 ~ 17:00

장 소 : 한강 고수부지

기 타 : 한양대학교 한마당 10:00까지 집결

4. 캠프

일 시 : 8월 5일(수) ~ 8월 7일(금)

장 소 : 장봉도 헤림재활원

기 타 : 추후 자세한 사항 통보

5. 평가회

가. 중간 평가

일 시 : 7월 22일(수) 14:00 ~ 17:00

장 소 : 사회과학관 제1세미나실

나. 종결 평가

일 시 : 8월 8일(토) 10:00 ~ 12:00

장 소 : 사회과학관 제1세미나실

b. 개별 또는 소그룹 프로그램

*. 기 간 : 7월 6일(월) ~ 8월 7일(금) 자유요일

*. 횟 수 : 주1회 이상

*. 기 타 : 자유요일 자유시간 멘터와 함께.....

1. 스포츠관람 (프로야구, 축구, 농구 등)

장 소 : 해당 경기장

2. 공연관람 (영화, 음악공연, 미술, 무용 등)

장 소 : 해당장소

3. 컴퓨터 활동

장 소 : 한양대 대학원 컴퓨터실

4. 진로적성검사(중, 고생만)

일 시 : 7월 22일(수) 14:00 ~ 17:00

장 소 : 사회과학대학 제1세미나실

준비사항 : 필기구, 대상자 전원 참석

5. 스포츠활동 (길거리 농구, 수영 등)

장 소 : 해당장소

준비사항 : 단 수영의 경우 - 성동구민체육센터 2일간 예약

6. 학습교실(7월 13일 ~8월 6일 4주간 운영 사회과학관 강의실)

가. 영어교실

일 시 : 월, 수 17:00 ~ 19:00

A - 중3 과정

B - 고1 과정

나. 수학교실

일 시 : 화, 목 17:00 ~ 19:00

A - 중3 과정

B - 고1 과정

제 6 장 요약 및 결론

IMF체제하에서 실업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1998년말까지는 실업자가 400만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업이 증가하면 범죄도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인의 생각이고 따라서 IMF체제 이후에는 매스컴에서도 어떤 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실업으로 인한 범죄라는 측면을 강조하기도 한다. 실업의 증가라는 현상은 범죄를 감소 혹은 증가시키든가 아니면 기존의 범죄양상을 어떤 범위에서든 변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범죄양상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하에 이 글에서는 실업의 증가가 범죄의 증가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들을 살펴보았다. 범죄동기화이론에서는 실업이 증가하면 이러한 상황이

일정한 사람들에게 범죄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에 대해 경기침체와 실업은 범죄기회를 축소, 제한시키게 되므로 오히려 범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일장일단이 있어서 어떤 범죄에는 타당하고 다른 범죄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실업이 범죄를 증가시키는가 혹은 감소시키는가에 대한 논쟁을 실증적 방법으로 증명하려는 선행연구결과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들을 통해서도 누구나 동의하는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실업이 일정 유형의 범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위와 같은 실업과 범죄에 관한 연구들에 기초하여 이 글에서는 IMF체제 이후 9개월 동안의 범죄통계를 분석하여, 실업으로 인해 우리 나라의 범죄동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경찰청의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IMF체제 이후 9개월 동안 우리 나라의 범죄가 이전에 비해 상당 수준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실업의 증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또한 통계적으로 좀더 엄밀한 분석을 요하고 아직은 단언할 수 없지만, 경제침체와 실업으로 인해 절도, 강도 등이 증가하고 있고 범죄양상도 유흥비나 용돈 마련을 위한 이욕형 범죄에서 생계비마련을 위한 생계형범죄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범죄들을 범하는 사람들 중에 경기침체와 실업의 영향을 덜 직접적으로 받는 젊은 층이나 청소년층의 비율 보다는, 경기침체와 실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중·장년층의 비율이 늘어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경기침체와 실업의 증가로 인한 범죄의 궁극적 해결책은 경기회복과 실업의 감소일 것이고 이것은 형사사법체계를 넘어서는 문제이다. 그러나 경기회복과 실업의 감소라는 과제는 오랜 세월이 걸려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이전까지는 어떤 형태이든 형사사법체계 안에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 중에서도 경찰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IMF체제로 인해 우리 사회에 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중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고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였다. 노숙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노숙자를 면하게 해주는 것이 궁극적 해결책이지만, 이들이 범죄를 범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숙자들의 동정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노숙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노숙자들에 대한 특별보

호사업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IMF체제라는 커다란 경제적 변화는 해고에 대한 보복범죄, 분품이식 범죄, 퇴직금을 노린 사기범죄 등 신종범죄를 야기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IMF체제로 인한 범죄양상의 변화는 치안수요를 증대시키고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IMF체제 하에서는 세수의 감소로 인해 증대된 치안수요에 맞추기 위한 재정의 증액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또한 평소 경찰의 범죄수사와 예방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는 기존의 경찰의 조직, 인력, 활동을 재정비하여 더욱 합리화,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형사3부제, 치안예보제의 실시, 순찰활동의 과학화, 신종범죄들에 대한 홍보강화, 방법설비의 의무화와 나아가 지역사회와 좀더 밀접하게 연결하는 지역사회경찰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자원봉사자나 민간인들을 조직화하고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으로서 자율방범대를 조직케 하거나 정부에서 활용한 실업자구제기금을 확보하여 공공자원 방범대원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대학생등과 같은 자원봉사자들을 범죄예방이나 수사의 보조자로 활용하는 방법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IMF체제라는 미증유의 국가위기를 맞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국민들 모두가 이전보다 덜 쓰고 더 일하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염두에 둔다면, IMF체제 하에서 경찰의 역할도 결국은 이전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경찰의 인원, 조직, 활동을 좀더 효과적으로 조직화, 체계화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Weatherburn, Don, "Economic Adversity and Crime", Trends and Issues in Crime and Criminal Justice, No. 40, August, 1992, 노성호(역), "경제적 고통과 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 연구, 제9권 2호(1998년 여름호)
- 이동원, "실업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 - 가해자와 피해자 관점의 통합을 중심으로 -", 피해자학연구, 제6호.
- 이기호, "IMF시대와 노숙자문제", 경찰행정, 1998. 7.

<외국문헌>

-단행본-

- Brenner, Harvey, Estimating the Social Costs of National Economic Polic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 Curry, Elliott, Confronting Crime, New York, Pantheon, 1985
- Danser, Kenneth R. and Laub, John H., Juvenile Criminal Behavior and Its Relation to Economic Conditions, Albany, N.Y.: Criminal Justice Research Center, 1981.
- Fleischer, Belton M., The Economics of Delinquency, Chicago: Quadrangle Books, 1966
- Gurr, Rogues, Rebels, and Reformers
- Hurwitz, Sthephan and Christiansen, Karl O., Criminology,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3
- Kornhauser, Ruth Rosner, Social Sources of Delinquency : An Appraisal of Analytic Model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 Matza, David, Delinquency and Drift, John Wiley, New York, 1964
- Mcdonald, Lynn, The Sociology of Law and Order, London: Faber and Faber
- Merton, Thomas K.,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Glenco: The Free Press, 1968

- Money, Work and Crime: Experimental Evidence, New York: Academic Press, 1980.
- Nettler, Gwynn, Explaining Crime, 3rd. ed., New York, McGraw- Hill, 1984
- Nye, F. Ivan,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t Behavior, New York, John Wiley, 1958
- Quinney, Richard, ed., Criminal Justice in America : A Critical Understanding, Boston: Little Brown, 1974
- Thomas, Dorothy Swaine, Social Aspects of the Business Cycl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25
- Vold, George B., Theoretical Crimin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 Vold, George B. and Bernard, Thomas J., Theoretical Criminology,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 Vold, George B., Bernard, Thomas J. and Snipes, Jeffrey B., Theoretical Criminology, 4th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Winslow,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and Crime Fluctuation as Shown by Massachusetts Statistics (Report on the causes of crime), Washington D.C., National Commission on Law Observance and Enforcement, 1931.
- 논문-
- Berk, Richard A., Lenihan, Kenneth J. and Rossi, Peter H., "Crime and Poverty: Some Experimental Evidence from Ex-Offender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45(Oct. 1980)
- Birkbeck, Christopher and LaFree, Gary, "The Situational Analysis of Crime and Devianc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9(1993)
- Booth, Alan, Johnson, David R. and Choldin, Harvey, "Correlates of City Crime Rates: Victimization Survey Versus Official Statistics", Social Problems, Vol.25(1977)
- Briar, Scott and Piliavin, Irving, "Delinquency, Situationl Inducements, and Commitment to Conformity," Social Problems, Summer 1965
- Calvin, Allen D., "Unemployment among Black Youths, Demographics and Crime", Crime and Delinquency, Vol. 27 No.2(April 1977).
- Cantor and Land "Exploring Possible Temporal Relationships of Unemployment and

- Crime: A Comment on Hale and Sabbagh”,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8(4), (1991)
- Cantor, David and Land, Kenneth C., “Unemployment and Crime Rates in the post-World War II United State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 (1985).
- Chiricos, Theodore G., “Rates of Crime and Unemployment: An Analysis of Aggregate Research Evidence”, *Social Problems* 34(2), 1987. 4.
- Chris and Sabbagh, Dima, “Unemployment and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8(4), (1991)
- Cohen, L. E. & Felson, M., “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 A Routine Activity Approach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4, 1979
- Ehrlich, Isaac, “Participation in Illegimate Activitie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May-June 1973
- Fleischer, Belton M., “The Effect of Unemployment on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1(Dec. 1963)
- Fleischer, Belton M., “The Effect of Income on Delinquenc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66,
- Freeman, Richard B., “Crime and Unemployment”, James Q. Wilson, ed., *Crime and Public Policy*, San Francisco: ICS Press, 1983
- Gibbs, Jack P., “Crime, Unemployment and Status Integration”,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6 No. 1(Jan. 1966)
- Glaser, Daniel and Rice, Kent, “Crime, Age, and Employ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4(Oct. 1959)
- Gordon, David, “Capitalism, Class and Crime in America”, *The Economics of Crime*, Ralph Andreado & John Siegfried, ed., Scenkman Publishing Company, 1980
- Guttentag, Marcia, “The Relationship of Unemployment to Crime and Delinquency”, *Journal of Social Issues*, Vol.24 No.1(Jan 1968)
- Hirschi, Travis, “Causes of Delinquency”, Be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 Jacobs, D., “Inequality and Economic Crime”, *Sociology and Sociological Research*, Vol.66(Oct. 1981)

- Land, Kenneth C., Cantor, David and Russell, Stephen T., "Unemployment and Crime Rate Fluctuations in the Post-World War II United States", in John Hagan and Ruth D. Peterson, eds., *Crime and Inequal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 Land, Kenneth C., McCall, Patricia L. and Cohen, Lawrence E., "Structural Covariates of Homicide Rates: Are There Any Invariances Across Time and Spa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5(1990)
- Long, Sharon K. and Witte, Ann D., "Current Economic Trends: Implication for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Kevin Wright, ed.,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a Declining Economy*, Cambridge: Oelgeschlager, Gunn and Hain, 1981
- McCall, Patricia L., Land, Kenneth C. and Cohen, Lawrence E., "Violent Criminal Behavior: Is There a General and Continuing Influence of the South?", *Social Science Research*, Vol.21 No.3(1992)
- Nagel, William G., "A Statement on Behalf of a Moratorium on Prison Construction", *Crime and Delinquency*, Vol. 23 No.2(April 1977)
- Nye and Short, Jr., James F., "Scaling Delinquent Behavi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2:26-31 (June 1957)
- Radzinowicz, Leon, "Economic Pressures", in L.Radzinowicz & M.E. Wolfgang(ed.), *Crime and Justice*,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71
- Reiss, Albert J., "Delinquency as the Failure of Personal and Social Control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6:196-207, April 1951.
- Sampson, Robert J. and Lauritsen, Janet L., "Violent Victimization and Offending," in Albert J. Reiss, Jr., and Jeffrey A. Roth, eds.,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Violence—Social Influences*, vol. 3,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 1994
- Scott, Briar & Piliavin, Irving, "Delinquency, Situational Inducement & Commitment to Conformity", *Social Problem*, Vol. 13, 1965
- Singell, Larry D., "An Examination of The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Juvenile Delinquency", *The American Journal of*

- Economics and Sociology, Vol.26, No.4 (1965)
- Spector, Paul E., "Population Density and Unemployment", *Criminology*, Vol.12, No.4(1975)
- Thornberry, Terence P. & Christenson, R. L., "Unemployment & Criminal Involvement : An Investigation of Reciprocal Causal Structure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49, 1984
- Toby, Jackson, "Social Disorganization and Stake in Conformity : Complementary Factors in the Predatory Behavior of Hoodlums," *Journal of Criminal Law, Criminology and Police Science* 48, May-June 1957
- Votey, Jr., Harold L. and Phillips, Llad, "The Control of Criminal Activity: An Economic Analysis", in Daniel Glaser, ed., *Handbook of Criminology*, Chicago: Rand McNally, 1974